

저널리즘 관점에서 본 시민 저널리즘

최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
- 미 뉴욕주립대 언론학 박사
- 뉴욕주립대 초빙교수 및 한국외대 언론정보연구 소장
- 현 사이버외국어대 학장
- 저서 및 논문 :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시민 저널리즘의 일상적 실천에 관한 연구』 외 다수

I. 들어가면서

‘시민 저널리즘’은 저널리즘 프로세스에서 소외된 일반 독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복원하고자 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최대 후원기관인 ‘퓨 센터’(Pew Center)의 역할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저널리즘의 지평을 열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민 저널리즘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은 이제 굳이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많은 언론들, 특히 시민 저널리즘을 반대하는 언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편집인 협회(APNE)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편집인들은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능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자들을 민주주의 형성 과정 속에 불러들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

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Campaign Study Group, 2001).

한편 90년대 들어서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도입으로 인해 저널리즘 환경이 급변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최고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실천 가능성은 언론계 및 학계의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자연스럽게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과도 맞물리면서 미래 저널리즘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민 저널리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뉴스를 창출해가는 것은 언론사가 이른바 게이트키퍼의 과정을 통해 아젠다(agenda)를 형성해 가는 기존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접근이며 저널리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 저널리즘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양한 실천요소들을 점검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실천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의 모델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저널리즘의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와 실천 방법은
시민을 참여와 토론의 장에 초대해 저널리즘
프로세스의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본질적 가치 등 시민 저널리즘과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한다.

II. 시민 저널리즘이란?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에 실망한 일부 학자와 언론인들에 의해 처음 주도되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공공·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면서 결국 최악의 선거 보도로 이어진 것에 대한 현직 언론인과 학자들의 자정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시민 저널리즘은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 정의가 부족한 데다 시민 저널리즘 자체가 언론사의 경영적 측면과 언론 운동적 측면 그리고 공중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 등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개념과 성격을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시민 저널리즘을 실행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시민 저널리즘의 개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Merritt, 1997).

시민 저널리즘은 연구자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 ‘공공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시민 참여 저널리즘’, ‘공공서비스 저널리즘’, ‘공동체 저널리즘’, ‘시티즌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공공 저널리즘 운동의 창시자로 불리는 Rosen과 Merritt는 공공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으며, Fouhy는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특히 Rosen은

시민 저널리즘보다 공공 저널리즘을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접근한다. 한편 Chaffe와 McDevitt은 공공 저널리즘은 뉴스 제작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에 시민 저널리즘은 그러한 뉴스 제작으로 인해 얻어지는 변화된 시민들의 공공생활을 염두에 둔 광의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civic journalism은 시민 저널리즘, public journalism은 공공 저널리즘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계에서는 시민 저널리즘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시티즌, 즉 시민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간 ‘시티즌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이란 개념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요사이 새로운 지식사전의 하나로 떠오르는 Wikipedia¹⁾에 따르면 citizen journalism을 “뉴스와 정보의 수집(collecting), 기사화(reporting), 분석(analyzing) 및 배포(disseminating)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들(citizens)의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참여 저널리즘’(participatory journalism)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기존 시민 저널리즘이 언론사에 의해 주도되는 운동이라면 시티즌 저널리즘은 그야말로 시민이 주도하는 실천이라는 데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상의 혼재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널리즘, 공공 저널리즘 혹은 시티즌 저널리즘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즉 공중을 토론의 장(매체)으로 불러들여 일반 시민들의 공공 참여와 토론의 폭을 넓히고 그들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민주

1) 웹을 기반으로 하는 무료 백과사전.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며 백과사전의 내용이 사용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Wiki site를 기반으로 하며 wiki의 내용이 사용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수정되고 보완되듯이 wikipedia 역시 이러한 부분을 최고의 특징으로 한다. “an global and multilingual Web-based cooperative free-content encyclopedia. It exists as a wiki, a type of website that allows visitors to edit its content” (google.com)

주의의 실천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저널리즘 프로세스에서 소외되었던 일반 시민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을 뉴스원으로 이용한다든가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의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갈등 기사를 회피하고, 또 공공포럼이나 다양한 미팅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은 이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Ⅲ. 시민 저널리즘 실천의 네 요소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와 실천방법은 환경과 시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저널리즘의 프로세스에서 제외된 일반 시민을 참여(participate)와 토론(debate)의 장에 초대함으로써 저널리즘 프로세스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민 저널리즘 실천운동과 관련된 하부 실천방법 혹은 요소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Choi(2004)는 기존 시민 저널리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여 시민 저널리즘의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로 접근한다.

첫째, 민주화(democratizing).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핵심요소이다. 시민 저널리즘의 전제조건은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언론이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 저널리즘의 환경 하에서는 일반 시민을 저널리즘 실천 과정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 혹은 관련 엘리트만이 아닌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뉴스원화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관급기사의 남용을 피하고 또한 지역 뉴스는 해당 지역 신문사의 내부 필진에 의해 쓰여 지는 것이 지역 관련 기사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둘째, 공통의 전제(common grounds). 공통 전제의 주요 요소로서 핵심가치(core value)의 내재화를 들 수 있다. 핵심가치란 이상, 도덕, 가치체계 등 흔히 기사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기사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내재적인 요소를 의미한다(Merritt, 1995).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에 따른 국내 영향에 관한 기사의 흐름은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이상이나 가치체계 등에 따라 상이한 시각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등의 신념이 기사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사가 쓰여 지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 농민들이 입을 타격 등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통해 기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 기사의 내용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공공의 언어’(public language)로 탈바꿈하게 된다(Selber, 2001). 독자들에게 기사 속에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알려줌으로써 기사는 이슈와 관련된 가치들의 명확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기사는 특정 문제점의 근저에 깔려있는 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좀 더 이슈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슈관련 정보(thematic information)는 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맥락의 틀(contextual framework)을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것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내용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신문 기사가 일반 개인들의 문제와 그것들을 야기하는 사회적 원인을 연결시켜주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공공담론의 주변화(trivialization) 정도로 밖에 그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Iyengar, 1991).

셋째, 해결책(solutions). 시민 저널리스트들은 기사

시민 저널리즘 자체가 매우 다양한
성격 지녀 특정 시민 저널리즘 모델로
정형화하기는 쉽지 않아

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자들에게 대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는 곧 독자들에게 문제점이 야기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공적인 사례를 곁들임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 확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넷째,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communication systems). 신문은 독자들과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자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공간 안에서 일반 독자들이 민주주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탈바꿈하도록 가능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제를 제공해야 한다.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제의 예로는 시민의 주요 아젠다를 알아보는 여론조사, 시민들이 궁금해 하며 토론하고자 하는 이슈들을 알아낼 수 있는 포커스 그룹,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공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회 모임이나 공개 포럼 등을 들 수 있다.

IV. 시민 저널리즘의 국내·외 실천모델

시민 저널리즘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Aday(1999)와 Kurpius(2000)의 모델을 각각 살펴보고, 이와 함께 새로운 시민 저널리즘의 개념으로 최근 떠오르는 시티즌 저널리즘(Outing, 2005)의 11 단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Aday에 따르면 시민 저널리즘은 실천 정도에 따라

동반자 모델(Prominent Partnership Model), 권력이양 모델(Enhanced Empowerment Model), 정보제공자 모델(Integrated Information Provider Model) 등 3개 모델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동반자 모델은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과는 달리 기사에 1인칭 혹은 2인칭 화법을 사용해 언론을 일반 시민과 동일한 위치에 두면서 지면의 많은 양을 할애해 거의 전적으로 시민 중심적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야심적인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다. 두 번째 유형인 권력이양 모델은 정부 관료 보다는 시민에 초점을 맞추는 시민 중심적 보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론을 시민의 동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사에 3인칭 화법을 사용해 언론과 시민 간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자 모델과 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 정보제공자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여전히 정부 관료 위주의 보도를 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답습하고 있는 최하위 단계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다.

한편 Kurpius(2000)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한 탐색적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 운동을 통합(integrated) 모델, 프로젝트(special projects) 모델, 퍼블리시티(publicity) 모델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통합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을 일상적인 보도 과정에 완전 통합시킴으로써 정기적인 편집회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모델은 수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국은 극히 드물다. 두 번째인 프로젝트 모델은 프로젝트별

로 시민 저널리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통합 모델과 차별화된다. 프로젝트 모델은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 혹은 1년 가까이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도 있어 방송국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 세 번째 모델인 퍼블리시티 모델은 마케팅 혹은 홍보의 방편으로 수용자 혹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민 저널리즘을 이용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다. 그 사례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주로 홍보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퍼블리시티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시민 저널리즘 비판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Kurpius(2000)의 지적처럼 시민 저널리즘 자체가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 간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특정 모델로 정형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터넷 신문,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를 Aday(1999)의 이론에 따라 분류한다면 동반자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언론과 시민 간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권력이양 모델이나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답습하고 있는 최하위 단계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인 정보제공자 모델과는 달리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 시민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언론을 일반 시민과 동일한 위치에 두면서 지면의 많은 양을 할애해 시민 중심적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반자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Kurpius(2000)의 분류 기준에서도 역시 오마이뉴스는 일상적인 보도 과정에 시민 저널리즘을 완전 통합시킨 통합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Outing(2005)은 이른바 시티즌 저널리즘이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을 11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상에서의 실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일반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Opening up to public comment)

일반 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비평, 칭찬 등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기자와 시민간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터넷 댓글이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댓글에서 생기는 부작용(욕설이나 비방 등) 때문에 미국 신문의 경우 중재자가 없는 경우에는 댓글달기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댓글달기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공되는 ZDnet.com 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 시민 기여 제도 (The citizen add-on reporter)

기사의 일정부분을 시민의 기여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단순한 기사에 대한 코멘트나 인터뷰가 아닌 기사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일반 시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구한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해당 기사 옆에 기사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기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정보를 첨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단순한 하나의 사건기사가 하나의 심층기사로 변모될 가능성을 확보한다. 모든 기사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기사 관련 이슈의 심층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오픈 소스 리포팅 (open-source reporting)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상에서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과 관련,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을 11단계로 나눌 수 있어

이른바 참여 저널리즘(participatory journalism) 혹은 오픈 소스 저널리즘(open-source journalism)의 일종으로 기사의 작성에 있어 해당 주제에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는 시민이 참여하여 기사의 깊이와 폭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진 공인과의 인터뷰가 있을 때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독자에게 공지하여 예상 질문을 미리 받고 인터뷰를 실시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혹은 인터넷에 기사의 초고를 올린 후 독자의 피드백을 통해 기사의 질을 높이고 이것을 다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버전으로 재생산한다.

수준을 넘어서 뉴스룸의 내부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야말로 뉴스룸 프로세스의 투명성(news organization transparency)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편집자가 기사 작성의 전 과정을 자신 혹은 신문사의 블로그 사이트에 올려 시민으로 하여금 기사 작성의 배경을 판단하게 한다. 블로그 환경 속에서 저널리즘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통해 기존 저널리즘의 옴부즈맨 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pokesmanReview.com의 “News is a Conversation” 블로그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4. 시민 블로그
(The citizen bloghouse)

블로그를 저널리즘의 기제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블로그를 통해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하는 형태에서부터 기자의 블로그에 시민들을 초청함으로써 블로그 내에서의 기사의 질을 높이는 형식이다. 그러나 모든 블로그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시민 혹은 독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블로그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개인적 신변잡기 위주로 내용이 채워지기 때문에 저널리즘 측면에서의 블로그 활용에 있어 제한적이다.

5. 뉴스룸 프로세스의 투명성
(Newsroom citizen ‘transparency’ blog)

단순히 블로그에 들러 기사를 읽고 피드백을 주는

6. 독립 시티즌 저널리즘 I
(The stand-alone citizen-journalism site: Edited version)

기존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확장된 경우가 아닌 별도의 뉴스 기관이 새롭게 탄생한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시민 혹은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탄생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지역뉴스(local news)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지역뉴스 중심의 기사는 시민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의 대다수 독립 인터넷신문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7. 독립 시티즌 저널리즘 II
(The stand-alone citizen-journalism site: Unedited version)

전술한 유형의 경우 뉴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비해 이 경우에는

그런 과정조차 없는 경우이다. 모든 사람의 말할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일반 독자나 시민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기제(예를 들면, Report Misconduct 버튼)를 확보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집자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8. 인쇄판 추가

(Add a print edition)

전술한 유형 6과 7에서 만들어진 기사를 인쇄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혹은 좀 더 자주 일간지나 주간지의 형태로 함께 보급하는 것이다. 유형 6과 7에서 포함된 기사 중에서 엄선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무가지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온라인버전과 함께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콜로라도 <The Daily Camera>의 온라인 버전 “MyTown” 혹은 텍사스 <The Dallas Morning News>의 온라인 버전 “Neighbor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9.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합

(The hybrid: Pro + citizen journalism)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순수 시민 저널리즘이 합쳐진 상태이다. 오마이뉴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시민기자와 기존 언론의 전문기자가 함께 기사의 내용을 채워간다. 70퍼센트 정도의 기사가 시민기자에 의해 작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게의 추는 분명히 시민 쪽에 넘어가 있다. 물론 시민기자에 의해 작성되는 모든 기사가 실제 기사화되는 것은 아니며 채택된 기사의 경우 약간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10. 한 지붕 아래서의 협업

(Integrating citizen and pro journalism under one roof)

이 유형은 아직까지 실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공동으로 그야말로 한 지붕에 아래서 하나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유형 9의 경우 전문기자와 시민이 뉴스를 만드나 각각의 기사를 작성하는 형태이고, 유형 10은 하나의 주제를 같이 고민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정치기사이건 영화기사이건 전문기자와 일반 시민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사를 쓰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작성은 미래 저널리즘의 모습이 “강연(lecture)이 아니라 대화(conversation)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Gillmore, 2004)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1. 위키 저널리즘

(Wiki journalism: Where the readers are editors)

이 유형은 시티즌 저널리즘의 마지막 단계이며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편집자가 되는 환경이다. 대표적인 예로 WikiNews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이용자들이 만들어가는 지식검색 사전인 Wikipedia에서 출발한 WikiNews는 이용자가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수정하고 덧붙이면서 지식 세계를 넓혀가는 Wikipedia의 환경처럼 하나의 뉴스에 대해 독자가 수정과 첨가를 할 수 있는 형태이다. 물론 현재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환경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진실을 추구한다는 이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환경이다.

V. 시민 저널리즘의 쟁점과 과제

시민 저널리즘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해결과제 안고 있어

1. 태생적 한계

전술한 것처럼 시민 저널리즘은 80년 대 말 미국 대선보도에 염증을 느낀 언론인과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와 동시에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독자수의 격감에 따른 수익의 감소라는 위기감에 몰린 신문사 경영진들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고 신문 산업의 방향을 전환시켜 보려는 의지와 맞물리면서 언론 기업 혹은 언론 관련 재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당시 위축되어 가는 신문 산업의 돌파구로서 시민 저널리즘은 Batten이나 Gardner 등 거대 미디어 그룹 사주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Knight-Ridder의 회장 Batten은 Knight-Ridder 재단을 통해 Rosen의 '공공생활과 언론에 관한 프로젝트(PPLP)'를 구축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면서 시민 저널리즘의 적극적인 후원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Batten의 지원 하에 1992년에 설립된 PPLP는 시민 저널리즘과 관련된 인사들이 모여 시민 저널리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토의를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1993년에는 시민 저널리즘을 위한 퓨 센터(PCCJ: Pew Center for Civic Journalism)가 PPLP에 동참하면서 퓨 센터를 통해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의 돈이 투입되는 등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됐다(Robertson, 2000).

이와 같이 시민 저널리즘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퓨 센터라고 할 수 있다. 언론과는 관련이 없는 석유 회사 상속인으로부터 나온 재원으로 설립된 퓨 센터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는 사실상 시민 저널리즘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93년 퓨 센터

가 설립된 후 필라델피아의 Citizen Voices, 시애틀의 Front Porch Forum 등 100여 건이 훨씬 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신문에서 시작한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방송으로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이윽고 신문과 방송이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시민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치가 초기의 소수 언론인과 학자만이 아닌 많은 언론인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된 것도 이러한 프로젝트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 저널리즘 비판론자들은 이와 같은 프로젝트 재원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며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은 다름 아닌 재정적 수익을 얻기 위한 알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Downie는 시민 저널리즘을 판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민 저널리즘의 이러한 측면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Richards, 2000). Dennis 또한 프로젝트의 스폰서 배경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건전한 의도에 의해 실천되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이론과 실천상의 괴리

시민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실험으로 수많은 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한 변화의 인과 관계를 측정하기도 어렵다(Chaffee and McDevitt, 1999). 물론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할 수 없듯이 시민 저널리즘

의 실천 가능성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과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시민들을 어떻게 저널리즘의 프로세스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신문에서 시작하여 방송분야로까지 퍼진 시민 저널리즘 운동의 최대 난제는 바로 제한된 지면과 방송시간 안에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시민 저널리즘의 이론적 논의가 실제 언론 환경에서 수용되기 쉽지가 않다는 점은 시민 저널리즘의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시민 저널리즘 운동의 요소로서 논의되었던 핵심가치의 내재화나 해결책 혹은 성공스토리의 제시 등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진다. 또한 속보성을 근간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뉴스 제작에 있어 참여와 토론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제가 수시로 이용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시민 저널리즘 관련 프로젝트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운동을 통해 실제로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켰거나 독자의 수를 늘렸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시민 저널리즘 신문 중에 하나인 위싱턴 〈Wichita Eagle〉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의 유효성에 관해 조사를 한 McMillan, et. al.(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Wichita Eagle〉이 1990년 시민 저널리즘을 도입한 이후 뉴스 보도에 있어 일반 시민의 저널리즘 프로세스에의 참여도가 도입 이전 보다 더 낮았으므로 나타나 시민 저널리즘 운동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Thames(1998)도 시민 저널리즘 신문인 노스캐롤라이나 〈Charlotte Observer〉가 실시한 1996년

의 'Your Voice, Your Vote'라는 캠페인을 분석한 결과 시민 저널리즘의 실효성을 희석시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론자 가운데 한 사람인 Gartner는 시민 저널리즘을 '속임수(gimmick)'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절하하면서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피상적인 결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민 저널리즘이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공중에게 언론의 독립성을 넘겨줬다고 비판한다(Grimes, 1997).

단발성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이 상시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커다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Blazier & Lemert(2000), Choi(2004)] 결과에 따르면 시민 저널리즘의 일상적인 실천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제한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이 일상적인 실천과 활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종이신문의 환경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면이나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터넷의 환경에서도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결과들이 나왔다(Choi, 2004). 물론 인터넷 환경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언론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 저널리즘의 기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에 주목하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신문이 갖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시민 저널리즘의 세계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3. 뉴스 가치와 저널리즘의 본질에 관한 문제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으로 인한 저널리즘의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

참여와 토론 통해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시민 저널리즘의
이상은 미래 저널리즘 환경에서도 유효

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말 시민 저널리즘 운동을 시작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온라인 저널리즘의 확산, 2000년대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 특히 뉴스가치에 대해 논의가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뉴스가치는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뉴스가치를 단일한 개념으로 쉽게 정의내리기가 어려운 것은 뉴스라는 것 자체가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slippery concept)이기 때문이기도 하다(Hall, 1981). 매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뉴스가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4개 요소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 일탈(deviance), 저명성(prominence), 선정성(sensationalism), 갈등(conflict)(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2).

이러한 4가지 뉴스가치의 유형들은 그것이 규범적인 것이 되었건 병리학적인 것이 되었건 간에 보통, 평균,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그 무엇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평범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 무엇, 즉 일탈이 바로 뉴스가치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일탈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부정이나 긍정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평상성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일탈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뉴스는 바로 이러한 일탈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된다. 일탈 뉴스(deviant news)는 1800년대 페니 프레스 이래 인간의 관심을 끌어온 가장 큰 뉴스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Wilkins & Patterson, 1987). 이러한 일탈의 개념은 뉴스가치의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일탈의 개념을 바탕으로 뉴스가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2).

그러나 이러한 일탈의 개념은 시민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시민 저널리즘의 영역에서의 뉴스 가치는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존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민 저널리즘의 목표는 일반 시민을 저널리즘 실천 과정에 적극 동참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실천의 제일 요소라 할 수 있는 참여와 토론(participation and debate)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론이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언론의 갈등 지향적 뉴스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갈등은 사회 안에서 언제든지 발생하지만 그러한 갈등에 대한 언론의 접근은 문제의 배경을 살피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문제점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이라는 일종의 일탈적 가치는 시민 저널리즘의 환경에서는 빛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된다.

한편 객관성을 저버리는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 양식 또한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Merritt는 시민 저널리즘에서는 언론이 현실 또는 현실 문제로부터 유리되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며 언론의 건강성과 공공생활의 건강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는 것을 강조한다(Merritt & Rosen, 1998). 그는 기자가 자신이 보도한 뉴스 보도의 결과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견해를 버려야 하며 공공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중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주의적 접근 방식과 사회 문제 혹

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언론의 객관적 감시 기능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Shepard, 1994). 결국 기존 저널리즘의 전통적 가치인 객관성에서 탈피해 지나치게 공공의 문제에 개입해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 보도를 하다 보면 언론 본연의 공적 감시전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당면하게 된다. 뉴욕타임즈가 시민 저널리즘을 정통 저널리즘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민 저널리즘의 환경에서는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객관성을 비롯한 다양한 뉴스 가치들이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다양한 미디어들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21세기 언론 환경에서 뉴스가치로서의 객관성의 비중은 과거 매스미디어의 환경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의 환경에서는 지면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매우 다양한 시각이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러한 개인적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독자들의 시각과 일치하는 관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른바 나만을 위한 신문(Daily Me)과 같이 개인형 맞춤 미디어의 시대에서는 진실과 객관성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가치들에 의해 뉴스가 형성될 것이다.

VI. 나가면서

시민 저널리즘 운동은 실천상의 문제에서부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러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시민 저널리즘의 이상은 미래

의 저널리즘 환경에서도 유효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보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이며, 저널리즘의 핵심은 강연과 교육이 아닌 참여와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규제, 효율성 그리고 대중이 논의의 대상이었다면, 새로운 미디어의 환경에서는 신뢰, 다양성과 보편성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시민 저널리즘은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탄생하였지만 그 이상과 목표는 21세기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에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day, H. (1999). Public Journalism and the power of the press: exploring the frame setting effects of the new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lazier, T. & Lemert, J. (2000). Public journalism and changes in content of the Seattle Tim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1(3), 69~80.
- Chaffee, S. & M. McDevitt (1999). On evaluating public journalism, in Glasser, T. (ed.)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pp. 96-17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hoi, Y. (2004). Study examines daily public journalism at six newspaper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5(2):12-27.
- Campaign Study Group (2001). *Journalism Interactive: New Attitudes, Tools and Techniques Change Journalisms Landscape*, Springfield, Virginia.
- Grimes, C.(1997). Whither the Civic Journalism Bandwagon?, in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2, Issue 3.
- Hall, J. (2001). *Online Journalism: A Critical Primer*. London: Pluto Press.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University of

- Chicago Press.
- Kurpius, D.(2000). "Public Journalism and Commercial Local Television News: In Search of a Model",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 no.2.
- McMillan, S., M. Guppy, W. Kunz and R. Reis (1998).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o editorial content?, in Lambeth, E., P. Meyer and E. Thorson (eds.) *Assessing Public Journalism*, pp.178-90.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Merritt, D. (1997). "Public Journalism, Independence and Civic Capital, Three Ideas in Complete Harmony." in *Mixed News: The Public/Civic/Communitarian Journalism Debate*, Jay Black,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erritt, D. & Rosen, J.(1998). *Imagining Public Journalism: An Editor and Scholar Reflect on the Birth of an Idea*, in *Assessing Public Journalism*, Eds. Edmund B Lambeth, Philip E Meyer and Esther Tho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Columbia and London.
- Outing, S. (2005). *The 11 Layers of Citizen Journalism*. Poynteronline. www.poynter.org/content.
- Richards, I.(2000). *Public Journalism and Ethics*, in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incorporating Culture and Policy*, No 95.
- Robertson, L.(2000). *Whither Journalism Reform?*, in *American Journalism Review*, March 2000, Vol 22, Issue 2.
- Rosen, J., D. Merritt and L. Austin (1997). *Public Journalism Theory and Practice: Lessons from Experience*. Dayton: Kettering Foundations.
- Selber, M. (2001). *Cycles of change: Locating and evaluating the latest journalism reform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Shepard, A. (1994). *The gospel of public journalism*, *American Journalism Review* 16(7): 30-33.
- Shoemaker, P., Danielian, L. & Breddlinger, N. (1992).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volvement: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68, 781-795.
- Thames, R.(1998). *Public Journalism and the 1992 Elections*, in *Assessing Public Journalism*, Eds. Edmund B Lambeth, Philip E Meyer and Esther Tho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Columbia and London, 1998, pp 111-122.

시민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중심으로¹⁾ -

반 현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교육과 조
-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미 텍사스 대학 오스틴 언론학 박사
- KBS 열린채널 운영위원, 인천일보 시민편집 위원장, 경인방송 iTV 개릴라리포트 운영 위원장 등 역임
- 저서 및 논문: 『온라인 저널리즘 상황에서 의 쌍방향성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오픈라인과 온라인 저널리즘의 현황진단과 전망』, 『가상 공간에서의 공공 저널리즘: 다른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외 다수

1. 들어가는 말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대표적 언론에는 <오마이뉴스>가 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창간 정신으로 기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뉴스나 우리 주변의 소식들을 전달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언론(言路)을 개방한 대안적 인터넷 신문이다. <오마이뉴스>는 일반 시민 기자들이 쓴 기사가 공식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 게재되는 시스템을 마련한 성공적 사례로, 이미 다른 나라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²⁾ 그 이유는 바로 시민 저널리즘 혹은 시민 참여 저널리즘³⁾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⁴⁾ 이런 관심

의 핵심은 바로 시민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이야기나 사회 현상을 다시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기존 매체에서보다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이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기존 매체의 일방적(one-way)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적(interactive 혹은 two-way)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반현, 2000).⁵⁾

그동안 국내에서도 시민 참여 저널리즘 차원의 시

1) 본 글에서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의 한 영역인 '시민 참여 저널리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언론사 중심의 시민 저널리즘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취재 및 기사를 생산하고 기존 미디어의 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이 쓴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오마이뉴스>의 성공 사례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신문총회(WAN)와 온라인발행인협회 런던포럼 등에서 소개돼 세계 언론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3) 시민 저널리즘과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하겠다.

4) <오마이뉴스>는 2004년 <시사저널>이 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국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6위에 올랐으며 2002년부터 3년 연속 6위를 차지했다.

5) 반현(2000). 가상 공간에서의 공공 저널리즘: 다른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5호, 2000-1, p. 59-74.

저널리즘의 위기가 가속화되던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언론인들에 의해
시민 저널리즘 등장

도가 기존 언론과 온라인 언론에서 몇 차례 존재해 왔으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 왔다. 반면 일반 시민기자들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그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촛불시위 자작극'의 경우가 시민기자에 의한 윤리적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⁶⁾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초기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법적, 윤리적 논란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방안들이 있을 것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등장과 역할 :
시민 저널리즘 관점에서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관한 논의 이전에 우선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으며, 구분을 하더라도 두 개념이 결국 비슷한 문제의식과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 저널리즘은 저널리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언론인들에 의해 등장했다. 신문 독자의 이탈은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 뉴스

의 시청자 이탈도 늘어나는 추세다. 저널리즘의 위기는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도구이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공공 영역의 축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을 하버마스식으로 정의하자면, 한 시스템이 한 시대를 지탱해 오던 정체성(identity)을 상실하고 다음 시대에 활용할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바로 아노미 즉 혼란의 상황인 것이다.⁷⁾

이런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널리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부터 “시민들과 정부의 심리적 괴리감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시민들의 전반적인 불신임 그리고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소외감”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이 출발했다(Glasser and Craft, 1997: 5). 듀이(Dewey, 1927)의 정의⁸⁾를 빌려 시민 저널리즘의 목적을 정의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시민 저널리즘은 단순히 뉴스의 전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통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해결 방법도 서로의 대화와 적극적 참여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이야말로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 저널리즘은 미국 언론사들이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임을 좁혀 보려는 노력으

6) 추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겠다.

7) 지금 우리의 언론을 봐도, 심각한 보수 진보 논쟁, 기형적인 산업 구조, 독자들로부터의 신뢰 하락 등 안팎으로 복합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8) 듀이(Dewey, 1927)는 ‘공중(public)’을 “공통된 문제점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들의 해결책까지도 서로 찾아가는 개인들의 정치적 성격의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로 시작되었다. 펠로우스(Fallows, 1996)는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의 주원인으로 미국 언론들의 지나친 자만심(arrogant), 부정적 시각(cynical), 스캔들 위주의 선정주의(scandal-oriented sensationalism) 등을 지적했다. 시민 저널리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미 뉴욕 대학의 제이 로젠(Jay Rosen) 교수는 “저널리스트들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중요시 여긴 몇몇 핵심 사항들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 시민 생활이나 민주주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면 그 역시 과감히 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Tharp, 1996: 74). 또한, 알츨(Altschull, 1996)은 시민 저널리즘의 탄생은 과거 권위의 상징이었던 저널리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의 결실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했다. 즉, 하버마스가 말했던 “공공의 장(public sphere)”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Rheingold, 1993: 5).

시민 저널리즘이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공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마이어(Meyer, 1997)는 시민 저널리즘은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물론 마이어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채리티(Charity, 1995) 역시 시민 저널리즘의 주요 탄생 배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으려 했다.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 및 실천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첫째로 취재원의 다양성이다. 시민 저널리즘의 전제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가 혹은 엘리트만이 아닌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일상적인 뉴스 보도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슈 관련 심층 정보(thematic information)의 제공이다. 시민 저널리즘을 위한 실천 방법 중에 하나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특정 이슈 혹은 문제에 깔려있는 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정보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해 대안 확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시민 참여 정보(mobilizing information)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은 정보 전달 중심에서 독자들과의 대화 중심 저널리즘으로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것은 좀 더 많은 독자들과 광고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상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Shepard, 1994: 30). NBC News의 사장인 마이클 가트너 역시 시민 저널리즘을 비판하면서 심지어는 시민 저널리즘을 적대시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시민 저널리즘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자부심이었던 객관성(objectivity)을 상쇄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널리스트들은 객관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때때로는 시민들을 깨우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경우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뉴욕커(New Yorker) 잡지의 데이비드 렘닉(Remnick, 1996: 41-42)은 “왜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리한 정보력과 비판력을 단순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버리려 하는가? 저널리스트들이 마치 시민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널리즘은
지속적으로 시도됐으며
여러 성공사례 창출해

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웨이터처럼 행동한다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처럼 전통적 저널리스트들은 객관적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은 뉴스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한편 자칫 저널리스트들을 그들이 보도하는 사건이나 이슈의 활동가들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Glasser and Craft,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널리즘은 언론의 전반적 위기의식과 위기상황을 타개할 다른 대안의 부재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지역 언론 중심의 미국 신문시장 구조 속에서 성공적인 사례들도 나타났다.

1)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 사례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의 일간지 1500여 개 가운데 약 1/5 가량이 시민 저널리즘에 기반을 둔 기사를 실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⁹⁾ 미국에서의 시민 저널리즘의 확산에 있어 퓨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한 석유기업 상속인의 거액 기부로 1993년 설립된 퓨 센터는 지난 10년간 1300만 달러를 들여 120여 개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그 예로 〈Wisconsin State Journal〉의 선거 캠페인 “우리가 유권자다”(1994년), 〈Sabana Morning News〉의 “노인문제”(2000년), 〈New Hampshire Public Radio〉의 독자들의 세금계산을 도와주는 “세금에의 도전”(2000년) 등과 같은 성공적인 기획기사들이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2003년 5월 퓨 센터가 문을 닫자 미국 언론들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기존 저널리즘의 취재방식과 시민 저널리즘의 취재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퓨 센터의 전 소장이었던 잔 새퍼는 그 이유를 “전통적인 기사 작성은 취재방향을 미리 선정한 뒤 시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적당한 내용만을 뽑아 기사에 반영한다. 그러나 시민 저널리즘에서는 먼저 시민들과의 다양한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사 방향을 잡는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나 FGI(소집단 심층면접) 등의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저널리즘의 취재방식은 시민들을 기사 작성에 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기존 취재 방식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단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널리즘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New York Times〉가 2003년 8월 음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독자들의 의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노력이다. 〈Washington Post〉 역시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미 대선 후보였던 존 케리의 러닝메이트로 누가 적합한가를 물었다. 그 방식은 후보자 이름을 단순히 제시한 것이 아니라 러닝메이트의 조건으로 “행정부 경험”, “외교정책 경험” 등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5개를 고르라고 한 뒤 거기에 맞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찾게 했다. 〈Washington Post〉의 사례는 시민들이 어떤 경로로 특정 정치인을 선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시민 저널리즘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2003년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의 언론대

9) 한겨레. 2004년 5월 19일자.

학원에서 실시한 “전국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미국 언론인들의 72%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시민 저널리즘의 주장에 찬성했다. 이는 시민 저널리즘이 이미 미국 언론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증거이며, ‘시민 저널리즘이 위기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시민 저널리즘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미국에서는 시민 저널리즘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매체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 운동의 방향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2) 인터넷의 등장과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

인터넷이 이미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산업사회 이후 현실 사회에서 만들기 어려웠던 ‘공동체를 형성’ (community building) 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PC 통신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비슷한 사고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호회를 조직하고 그 속에서 표출되는 여론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바로 이런 공동체 형성의 특징은 온라인 저널리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시민 저널리즘으로의 가능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MIT 미디어 랩 소장이었던 니그로폰테 역시 컴퓨터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 전달을 넘어 공동체 건설이라는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보의 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는 도서관을 대체하는 기능을 뛰어넘어 새롭고 전 세계적인 가상공간에 또 하나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다(Negroponete, 1995).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라인 저널리즘이 시민 저널리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우선 온라인

신문은 레인골드가 말했던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ies)”, 즉 여러 사람들이 가상공간에 모여 자신들 주위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토의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온라인 뉴스는 기존 뉴스 매체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예를 들면, 뉴스별 토론방, 채팅방, 편집자나 기자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독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이고 쉽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필요하다면 실제로 만나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도출해내고, 여론을 형성하여 지역 매체나 입법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전국 편집자 협회(National Conference of Editorial Writers, NCEW, 1996)는 공식적으로 “온라인 신문의 커다란 장점은 바로 독자들의 요구에 빠르고 쉽게 반응할 수 있고, 그들이 쌍방향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미디어가 시민 저널리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바로 객관성(objectivity)이다. 시민 저널리즘에서 제안하는 것들 중 하나는, 기자들은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의 편집 방향이 정착된다면 인터넷에서의 기사들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서의 기사들 보다 객관성에서 약간은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Los Angeles Times>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쇼(Shaw, 1997)는 인터넷의 기사들은 전반적으로 좀 더 “주관적 태도(Attitude)”를 가진다고 그의 칼럼에서 말했다. 단, 현재의 초기 온라인 저널리즘 상황 하에서는 기사의 성격이나 기자들의 태도가 전통적 저널리즘에서처럼 객관성에 치중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릿(Meritt, 1995)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기술적인 특징들만이 시민 저널리즘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사이버 공간을 소수 엘리트들의

인터넷의 등장으로 매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 방향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

소유물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하려는 저널리스트들의 의지와 의식 구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기존 뉴스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것으로는 이런 시민들과의 연계를 가질 수 없고 새로운 내용이나 좀 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뉴스를 제공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론인 '시민 저널리즘'을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내 학자들이나 언론인들도 많은 고민을 해왔다. 비록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며 그 용어도 미국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노력들은 계속 있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매체는 인터넷으로 <오마이뉴스>가 그 모델을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경우 미국식 시민 저널리즘 모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여기에 '시민 참여 저널리즘' 개념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3) 시민 참여 저널리즘 개념과 시민기자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시민 저널리즘'과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어떻게 구별해야할까? 혹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김병철·최영(2005)의 분류에 따르면 넓은 개념으로 시민 저널리즘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¹⁰⁾ 우선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의 경우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는 점에서 전통적 저널리즘과 다르지만 여전히 언론사와 기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사를 선별하고 편집한다는 점에서 가장 소극적 형태의 시민 저널리즘이다. 기존 미국 지역 언론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들이 주로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유형은 "시민·기자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으로 시민기자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기사를 쓰고 저널리즘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사의 편집권은 언론사 전문 편집 기자들이 가지고 있어 완전한 의미의 시민 참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마이뉴스>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은 전문 기자가 없는 순수하게 시민들에 의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전문 기자들의 어떤 간섭도 배제된 시민들만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이 가능한 형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것처럼, 두 개념을 굳이 구별을 하자면 시민 저널리즘이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을 저널리즘 과정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취재 및 기사를 생산하고 기존 미디어의 공식적 채널을 통해 자신이 쓴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시민 저널리즘으로 보면, 앞의 세 가지 모델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두 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종의 "퍼블릭 액세스 저널리즘(public access in journalism)"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 김병철·최영(2005).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학보』 통권 26호 1-23쪽.

퍼블릭 액세스는 주로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들을 지상파나 케이블, 혹은 위성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KBS)의 <열린채널>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일반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도 상업적 목적이나 타인의 인격권 침해 등 법적,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상물을 걸러내는 나름대로의 장치인 선정 기준과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액세스 저널리즘'은 단순히 시민 혹은 수용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뉴스 생산자 혹은 뉴스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보는 개념인 것이다. 여기서 바로 시민 기자제도 개념이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시민 기자제도는 시민 중심의 이슈 발굴을 위한 일종의 시민 생활권 비트 시스템으로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만드는 시민 저널리즘 취재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이중수, 2002).¹¹⁾ 이는 미국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언론사 위주의 프로젝트 방식과는 다른,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편의상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란 용어로 한정하여 쓰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주인공인 '시민기자'는 누구인가?¹²⁾ <오마이뉴스>의 예를 들면 시민 기자는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뉴스의 70-80% 이상을 생산해내는 언론사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존 주류 언론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뉴스 전달에 불만족한 시민들은 그들만의 시각으로 사회적 사안이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기사화하고 욕구를 분출하고 있다. 이런 시민 기자들의 응집력과 차별화된 기사는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급성장했다.

그러나 시민기자 자신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와 같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거나 혹은 반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촛불시위 자작극' 사건을 계기로 시민기자의 존재가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자의로 혹은 타의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시민기자의 실체가 명확히 공유되지 못하는 데도 한 원인이 있다.

현실적으로 시민기자의 양적 팽창은 그들이 생산하는 기사량의 폭증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약 2만 4천여 명의 시민 기자가 등록되어 있는 <오마이뉴스>의 경우 하루 170-180여 개의 기사가, 기존 언론 가운데는 한겨레의 <하리리포터> 등록 시민기자가 하루 50-60여 개의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고 한다.¹³⁾ 앞에서 예를 든 '앙마'라는 시민기자의 '촛불시위 자작극' 논란은 결국 양적으로 성장한 시민기자단과 그들이 생산하는 기사가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민기자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만은 없다고 보인다. 인터넷 언론들이 좀 더 체계적인 편집기준과 검증단계를 준비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율규제 외에도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시민기자들은 정식으로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전문기자와 구별되며 이런

11) 이중수(2002). 선거이슈와 이슈보도: 시민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관훈저널』 통권 제84호.

12) 「시민기자가 누구냐구?」 <오마이뉴스> 2003년 2월 7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 &office_id=047&article_id=0000023790>

13) 「시민기자와 편집자는 동지입니다.」 <오마이뉴스> 2003년 1월 24일.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104273>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취재 및 기사를 생산하고 이를 매체 통해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식

측면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기자가 쓴 기사가 타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했을 경우 그 기사를 실은 언론사는 책임을 져야할지 혹은 면책받을 수 있을지, 만약 저야 한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신문법 및 그 시행령’과 ‘언론중재법’ 상에 ‘인터넷 신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정기준¹⁴⁾을 충족하는 언론사와 직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시민기자에 관한 조항은 아니다. 비록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 패러다임이 이제 정착하는 단계고 관련 법적, 윤리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추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기존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타 제도적 장치 및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 및 원인

시민 참여 저널리즘과 관련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시민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는 누가, 어떤 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 상근 기자의 경우 언론사 직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사 차원의 다양한 징계수단이 존재한다.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책임도 비교적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 반면 시민기자의 경우 해당 언론사의 정식 직원처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아직 관련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겠다. 다음은 지난 2005년에 언론중재위원회로 들어왔던 사례다.¹⁵⁾

과거 어느 정당의 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당시 북부지방경찰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K라는 사람은, 자신이 “일진회 아이들을 사형이라도 시키고 싶다”,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다”, “부동산 경매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 보도한 한 시민기자와 해당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시민의 신문>, <브레이크 뉴스>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과연 해당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시민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만약 저야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피해자인 K씨가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 발행 요건으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15) 필자의 요청으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관련 사례들을 참고로 살펴보았다.

을 청구했고 결국 심리 과정에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해 해당 인터넷 언론들이 기사를 썼던 시민기자의 자격을 정지하고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시민기자가 쓴 기사라도 해당 인터넷 언론사가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기사에 우선해서 특정 기사를 자신의 사이트에 실었다면 시민 기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분명한 책임 소재 기준이 세워져야 함도 물론이다(김서중, 2006).¹⁶⁾¹⁷⁾

또 다른 법적 분쟁 사례는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 관련 문제다. 2005년 9월 21일 '극단 그리고'에 저작권 위반을 통보하는 한 통의 이메일이 전달됐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전(前)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자신의 기사를 극단 측이 홈페이지에 무단 전재했으므로 80만 원을 자신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극단은 무단 전재된 기사를 발견했을 경우 영리활동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먼저 연락을 한 후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언론사인 <오마이뉴스>는 당시 그 기사는 제명된 상태라 회사가 간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당사자인 극단과 기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 사례 역시 시민기자의 모호한 신분으로 인한 법적 책임 소재 문제와 시민기자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만약 위의 시민기자가 <오마이뉴스>의 정식기자였더라면 어떠했을까? 위와 같이 기자 개인이 직접 극단에 연락하기 보다는 언론사

차원에서 극단 측에 무단 전재된 기사를 삭제하라는 사전 통고가 먼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기자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은 결국 기자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애매한 상황 때문이며 따라서 그로 인한 법적 책임성도 모호한 것이다.

법적 문제 외에도 시민기자의 윤리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촛불시위 자작극' 사건은, 2002년 미군 궤도 차량에 치어 숨진 여중생을 위해 촛불 시위를 처음 제안한 '앙마'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기자의 사례다. 2002년 11월 27일 '앙마'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모 씨는 <인터넷 한겨레> 게시판 등에 촛불시위를 제안한 뒤, 별 다른 반응이 없자 이틀 뒤인 29일 <오마이뉴스>에 '뉴스게릴라(시민기자)' 자격으로 마치 제3자가 제안한 것처럼 촛불시위 제안 기사를 써서 올렸다. 하지만 곧 '촛불시위 자작극' 논란이 벌어졌고 한나라당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기사가 실릴 당시만 해도 '앙마'가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무지하고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시민기자 '앙마'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해명하며 <오마이뉴스> 측에 사과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시민기자가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잘못 이용한 경우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기자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기자와 관련된 또 다른 윤리 논란 사례는 특정업체의 홍보직원이 시민기자로 등록한 후 자사의 보도자료를 기사로 올린 경우다. <문화일보>는 이를 두고 기사를 가장한 홍보며 이를 <오마이뉴스>가 방

16) 김서중(2006). 「인터넷 신문의 피해구제 보도 방법」. 언론중재위원회 워크숍 발제논문.

17) 참고로 위의 사례의 경우 즉, 시민기자가 쓴 기사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는 해당 언론사가 검증과정을 거쳐 해당 기사를 선택하고 게재했기 때문에 언론사도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즉, 좀 더 구체적인 제언을 하자면 기존 관례를 참고로 반론보도 혹은 정정보도의 경우 언론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며, 시민기자의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언론사의 '기자' 직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영구 제명시키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 만약 민사적 손해배상이 관련되어있는 경우라면 새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반영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과 중재가 가능하다고 본다.

시민기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및 보호 장치
 전무, 시민기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치했다고 기사화해 논란이 됐다. 2003년 4월 2일자 <오마이뉴스> 경제부분에 ‘자녀 희망직업, 최첨단 직종이 의사, 법관 제쳐’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기자가 한 채용정보업체 홍보직원이라는 것을 두고 <문화일보>는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당사자 시민기자는 반론기사를 내보냈고 <오마이뉴스>도 해당 언론사로써 자사의 공식 입장도 함께 밝혔다. 즉, 해당 시민기자와 <오마이뉴스> 측은 시민기자제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개방형 기자시스템’으로 비록 “홍보직원이 기사를 쓰더라도 기사 내용이 회사의 홍보라기보다는 공익이나 정보성에 합치된다고 판단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론했다.

기존 언론사에도 수많은 홍보성 보도자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뉴스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일부 기사화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시민기자제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 언론보다 개방적인 편집시스템을 가진 인터넷 언론의 경우 기존 언론사보다 ‘상업적 이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제도적 보완 :
 시민기자제를 중심으로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 동안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은 역설적으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영향력과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몇몇 사람들의 극단적 평가에 의해 ‘위기’

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시민 기자가 쓴 기사가 타인의 인권침해나 일방적 주장, 즉 명예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기존 전문 기자들보다 그 확률은 더 높다. 하지만 분명 상근기자가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 경우와는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존 주류 언론의 봉어빵식 뉴스의제와 논조에서 탈피해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시민의 시각에서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사 자체가 개인화되고 개인적 글쓰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개인화 자체만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시민기자들의 바로 이러한 시각과 글쓰기가 하나의 대안 언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시민기자의 기사가 주관적 견해로만 치우칠 우려가 항상 존재하며 이는 분명 상근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언론사 차원의 조직적 사실 확인(fact-checking) 절차나 법률적 조언과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즉,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과거 소송 당했던 경우를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런 언론 관련 소송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속 고문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자신이 쓴 기사가 법적 문제가 될지에 대해 미리 조언을 얻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게이트키퍼를 한다.

실사 법적인 소송이 뒤따른다 해도 그동안 언론사들은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언론사가 그 손해 비용을 감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사무감독자 책임’으로 전환해 기자 개인에게도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물론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기자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 책임’ 원칙의 경우 개인적 부담이 없어 같은 실수

를 반복할 수 있지만 기자가 언론의 자유라는 틀 속에서 자유롭게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기자 개인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위축효과'가 발생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없다. 반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기사나 무책임한 기사 대신 신중하게 기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경우 시민기자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사례들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제도적 방안들이 필요한가?

우선 법적인 경우 작년부턴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을 통해 피해자는 신문, 방송, 잡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⁸⁾ 그러나 이런 경우도 해당 인터넷신문에 근무하는 상근 기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시민기자에 대한 조항은 아니다. 여기서 바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앞서 제시된 시민기자의 허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의 경우 피해자와 해당 언론사 간의 협의로 정정보도를 내고 해당 시민기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비슷한 사례나 혹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추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시민기자가 쓴 기사의 법적 보호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추후 유사한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언론사나 시민기자에게 모두 적절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를 제도적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즉, 피해자는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간단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피해 당사자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언론중재는 조정이 성립한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언론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시간에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그러나 언론중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사나 피해자 모두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장기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양측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게 된다.

기존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중재위원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중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론보도 혹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중재가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추후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문을 작성할 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명문을 포함시켜 두어 추가적인 분쟁을 최소화해야 했다. 하지만 새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할 수 있게 되어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된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서 언론중재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언론 관련 행위들이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이른바 COI(Content Object

18)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은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규정을 중용해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인터넷 신문만을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의 각주 10)을 참조)

언론중재법 개정 및 언론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기자의 오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 필요

Identifier) 서비스가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는 불법다운로드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개별 콘텐츠에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COI 총괄관리 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경우 한국언론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COI가 적용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료의 징수와 정산, 분배를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신뢰성 있는 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I는 언론재단과 40개 언론사 그리고 네이버가 추진 중인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Aqua Archive Project)과 맞물려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적 장치들은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큰 문제 중 하나인 기사의 신뢰성과 기사의 저작권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기자의 교육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기존 기자들의 경우 처음 입사하면 수습기간 동안 여러 부서를 돌며 선배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을 받는다. 이런 직접 체험 교육 외에도 전문 기자에 대한 재교육은 언론재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시민기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권리나 책임에 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시민기자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취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시민기자들도 스스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질 높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말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해 기존 언론인들에 의해 좀 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저널리즘 과정에 참여시켜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시민 저널리즘’의 적극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개념 간에는 그 의미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시민 참여 정도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시민 저널리즘을 폭넓게 정의하는 학자들은 시민 참여 저널리즘도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고 말한다.¹⁹⁾ 이처럼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국내·외 학자나 언론인들에 의한 많은 논의는 그만큼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적, 윤리적 문제로 인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위기라는 말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 시대상 위기보다는 변화의 시점에 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기존 언론사의 법적, 윤리적 검증 시스템도 완벽한 것은 아니며 종종 대형 오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의 통제 장치를 두고 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비해 시민기자제도의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사 쓰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걸러낼 만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전적으로 시민기자의 양심과 윤리성을 믿고 기사를 게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19) Aday, H.(1999). Public journalism and the power of the press: exploring the frame setting effect of the new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김병철·최영(2005), 앞의 논문.

장점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시민기자의 기사로 인해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된 자율적 규제 장치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융통성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또 생각해야 할 문제는 비록 시민기자들이 아무리 자율적으로 기사를 쓰는 일반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처럼 성공적인 한국적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비록 시민기자들이 열악한 인터넷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내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당 언론사들의 경우 신문법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나 언론인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기자들의 교육도 함께 고려하고, 외부 지원의 경우는 신문발전기금 중 일부를 시민기자들을 위한 원고료나 기자 교육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KBS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열린채널>의 경우 20분 영상물 한 편당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 하는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동시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시민기자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최근 <오마이뉴스>의 편집국 개편 사례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난 4월 오마이뉴스는 '제2창간'에 버금가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²⁰⁾ 개편안은 상근기자와 시민기자로 이원화된 체제를 '뉴스 게릴라본부'라는 이름아래 일원화시킴으로써 상근기자의 역할을 기존 독자적 취재와 기사 작성에서 시민기자들의 서포터스 역할로 전환시킨 것으로 한층 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라는 창간정신

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실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언론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시도하는 다른 언론사들 역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위기라기보다는 변화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검증시스템 등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관련 협회, 예를 들면 '인터넷뉴스미디어협회'와 같은 기구에서 기존의 윤리강령 등을 재정비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 심의와 규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다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현대 사회의 공적 영역 확대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기존 저널리즘의 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철·최영(2005).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학보』 통권 26호 1-23쪽.
- 김서중(2006). 「인터넷 신문의 피해구제 보도 방법」. 언론중재위원회 워크숍 발제논문.
- 반현(2000). 가상공간에서의 공공 저널리즘: 다른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5호, 2000-1, 59-74쪽.
- 이종수(2002). 선거이슈와 이슈보도: 시민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관훈저널』 통권 84호.
- 시민기자가 누구냐? <오마이뉴스> 2003년 2월 7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23790>
- 시민기자와 편집자는 동지입니다. <오마이뉴스> 2003년 1

20) 미디어오늘. 2006년 4월 20일자.

- 월 24일<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104273>
- Aday, H.(1999). Public journalism and the power of the press: exploring the frame setting effect of the new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ltschull, H. J.(1996). "A crisis of conscience: Is community journalism the Answer?"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1, pp. 166-172.
- Cappella, J. N., & Jamieson, K. H. (1997).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ity, A. (1995). *Doing public journalism*. New York: Guilford.
- Dewey, J. (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New York: Holt Rinehart.
- Fallows, James M. (1996). *Breaking the news : How the media undermine American democracy*. New York : Pantheon Books.
- Glasser, T. L. & M. Craft (1997, July). "Public journalism and the search for democratic ideals, "A paper presented to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nnual convention, Chicago, Illinois.
- Merritt, D. (1995).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life: Why telling the news is not enoug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yer, Philip. (1997). "Doing well by doing good." Available:<http://groucho.admin.unc.edu/endeavors/aut97/dial2.html>.
- National Conference of Editorial Writers. (1996, Oct. 18). "Public journalism." In NCEW Online [On-line]. Available: <http://www.ncew.org/civic.html>.
- Negroponete, N. (1995). *Being digital*. New York:
- Norris, P. (2004). *The evolution of election campaigns: Eroding political engagement?* Paper for the conference on Political Communications in the 21th Century, St Margaret's College,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January 2004.
- Patterson, T. E. (1993). *Out of order*. New York: Knopf.
- Remnick, D. (1996, Jan. 29). "Scoop," *The New Yorker*, pp. 38-42.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ss.: Addison-Wesley.
- Rosen, J. (1995, May-June). *Public journalism: A case for public scholarship*, *Change* 27, no. 3, pp. 34-39.
- Shaw, D. (1997, June 19). *The long and short of it: Internet allows great detail, but will people read lengthy stories online?* *Los Angeles Times*, A21.
- Shepard, J. (1994, May). *The gospel of public journalism*. *American Journalism Review*. pp. 28-34.
- Swanson, D. L. & Mancini, P. (1996). *Politics, Media and Modern Democracy: an International Study of Innovations in Electoral Campaigning and Their Consequences*. Westport, Conn.: Praeger.
- Tarp, M. (1996, March 18). "The media's new fix", *U.S. News & World Report*, pp. 72-73.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한 제언(I)

최진순

한국경제 미디어연구소 기자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전(前)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
뉴스보과위원/기획보과위원
- 전(前) 서울신문 편집국 기자
- 현(現)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운영위원 및
온라인미디어뉴스 대표
- 현(現)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국내에 본격적인 시민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이 나타난 것은 10여 년 전이다. 그 무렵 PC통신 이용자들에 의해 '보테저널'(1996)과 같은 '1인 매체'와 '패러디 창작물'이 쏟아졌다. 전자 게시판에서 이용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주도한 이러한 창작물들은 새로운 여론 형성의 견인차로 평가받았다.

보편적인 '논객' 문화를 형성한 PC통신은 인터넷 패러디 신문 '딴지일보'(1998)에 의해 새로운 전환을 맞는다. 딴지일보는 철저히 기성 언론 매체의 위선과 부조리를 폭로하는 장치로 우화적인 기법을 동원했다. 여기에 논객들이 참여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우후죽순으로 인터넷 패러디 신문이 탄생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대안적 성격의 웹진 창간으로 이어졌다. 보다 진지한 정보를 생산하는 '대자보'(1999), '더럽지'(1999) 그리고 상근 기자가 만든 '온라인신문'(1999), '뉴스보이'(1999) 등이 연이어 창간됐다. 이용자들은 이 무대에서 억눌린 표현 욕구를 풀어내면서 기성 언론과의 차별성을 보였다.

한국 시민 저널리즘은 시민 스스로가 완성

즉, 이용자들이 기성 언론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표현의 공간을 찾게 되면서 '저널리즘' 기법을 차용한 것이다. 기성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고 순수가 이용자의 시각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표현하는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 '매체'를 지향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조직화하게 됐다.

이렇게 시민 저널리즘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진 것은 IT 기술의 진보가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의 무대를 펼쳐 주었고, 다양한 기기들은 수동적인 이용자(독자 - 시청자)들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켰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피에르 레비는 이를 온라인상으로 사상과 정보, 서비스가 교환되고 인간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가 도입한 집단 지성(Intelligence Collective)의 시대는 기성 언론의 일방향적 주입식 정보에서 상호 소통의 정보 패러다임

한국형 시민 저널리즘은 IT기술에 의한 쌍방향
의사 소통 공간 확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이
어우러진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출발해

을 열어젖혔다.

즉, 단순히 IT 기술의 진보로 시민 저널리즘이 만개한 것이 아니라, 지식 대중으로 성장한 이용자들이 사이버 공간으로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역동성을 가졌던 것이다. 특히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결정적인 여론 형성을 주도했으며, 언론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깨는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로 등장했다.

시민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들어 스스로 구축한 웹사이트에 퍼뜨리는 현상은 21세기를 전후로 유행처럼 번졌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생긴 인터넷 매체들은 '언론'과 '저널리즘'의 범주에 들지 못했지만, 지난해 비로소 법제화를 완료하면서 '시민기자'들과 함께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태동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민 저널리즘은 선거, 게이트 사건 등 무거운 이슈를 추적하거나 지역커뮤니티에 밀착하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각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등은 앞 다투어 시민 참여형 모델을 도입하면서 시민기자는 전혀 낮설지 않게 됐다.

다시 말해 한국형 시민 저널리즘은 IT기술에 의한 쌍방향 의사소통 공간의 확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지식대중의 급성장,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등 보다 특정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 시민 저널리즘이 주류 언론의 역할 모델 재모색에서 출발한 것과는 대별된다.

2000년 2월 <오마이뉴스>가 시민이 직접 뉴스를 생산하며 언론지형에 변화를 이끈 것은 특기할만한

사건이다. 자극을 받은 주류언론(Mainstream media)은 물론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등도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시민 저널리즘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는 시민기자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반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존 신문과 방송도 기자나 PD들이 독점하던 저널리즘의 창구를 이용자와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다. 아예 시민기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채널을 신설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시민기자 제도를 두고 있고, 대부분의 신문사(닷컴)들도 커뮤니티 - 블로그 등으로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한 쪽으로만 진행되는 등 다양한 형식을 띤다.

또 직접 취재를 통한 뉴스 형식, 게시판이나 토론 및 기사 의견 쓰기(덧글) 등의 형식, 블로그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 형식 등 시민이 참여하는 양상도 상이하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되는 콘텐츠를 지면이나 인터넷 뉴스 페이지에 적용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며 그것의 정례화 여부도 차이가 있다.

시민기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비교적 엄격하고 체계적인 경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경우 등 다양하다. 아예 시민기자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시민 즉,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UCC(User Created Content)¹⁾라는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적극 도입되고 있다.

1) UCC는 UGC(User Generated Content)로 쓰이기도 한다. 직접 취재에 나서는 시민기자제가 아니라도 시민 저널리즘은 UCC 기반인 기사 댓글, 토론실, 블로그 등에서 구현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UCC를 시민기자제와 함께 저널리즘의 요소로 정의한다.

이 때문에 '시민 저널리즘'은 이용자의 제한 등 참여하는 형식과 규모, 콘텐츠의 활용 상황에 따라 표출되는 상황이 다르다. UCC를 포함, 이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가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격상되고 있는 경우 역시 각 매체별로 판이하다.

방송사 시민기자 체계적 운영

우선 방송 3사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 확산, '동영상' 콘텐츠의 과급성을 고려,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정규 프로그램에 내보내고 있다. 제도권 기자가 아닌 아마추어가 'VJ' (Video Journalist)로 활동하는 영역도 늘어나는 추세다. MBC는 아예 대학, 기업 등 유관 영상단체들과 제휴하면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방송 3사 모두 인터넷으로 시민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SBS 'U포터 뉴스' (http://uporter.sbs.co.kr/uporter_reg1.html), MBC 'imnews 시민기자' (<http://imnews.imbc.com/citizen/creport/index.html>)가 대표적이다. KBS도 2004년부터 '명예VJ' (http://www.kbsnews.com/vjnet/vjnet_news_intro.html)를 통해 시청자 참여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각 방송사는 시민기자의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SBS는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 MBC는 '제도권 언론이 미치지 못하는 시민들의 풀뿌리 정보를 시민 스스로가 기자가 되어 참여하는 사람' 등이 그것이다.

이들 시민기자는 SBS U포터를 제외하면 1박 2일간의 연수를 진행, 취재 전반의 교육을 받는다. 4월 현재 15기를 배출한 MBC 시민기자는 교육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스터디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전

담 교육팀이 일반적 관리를 맡는다. 4기까지 배출한 KBS는 오프라인에서 9개 지국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 3사의 시민기자제가 다른 언론 매체에 비해 자격조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되는 것은 영상매체의 과급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시민기자들은 또 활동 상황에 따라 취재료 또는 특종 관련 분기별 지급을 통해 활동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표 1〉 방송사 시민기자 운영 현황

	도입시기	선발방법	윤리강령	콘텐츠 활용	활동지원
KBS	2004. 3.	연수교육	있음	방송에 비정기적 활용 - 온라인 게재	보도시 취재료
MBC	2003. 9.	연수교육	있음	방송에 활용 - 온라인 게재	소정의 상품
SBS	2005. 4.	제한없음	없음	방송에 비정기적 활용 - 온라인 게재, DMB 등	취재료 및 사이버 머니

신문사는 '시민기자제' 보다 이용자 참여 주목

신문사들의 경우는 시민기자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편이다. 일부 신문사는 대학생 기자단을 꾸렸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아 중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참여 기반을 넓히는 쪽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다시 말해 신문사들의 시민기자제는 'UCC' 기반 확보라는 차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이다. 때문에 신문사는 시민기자보다는 '커뮤니티'와 '게시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신문사들이 블로그를 도입했으며, 토론실과 여론조사 및 기사덧글을 서비스하고 있다.

직접 저널리즘을 구현하기보다는 신문사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이용자들의 방문을 늘려 영향력을 강화하는 성격으로 절충된 것이다. <조

방송사는 체계적인 시민기자제 운영,
신문사는 시민기자제 보다는
이용자 참여에 초점 두고 있어

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웹 사이트에서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제 모델 대신 카페, 블로그, 토론실 - 시사발언대 등 커뮤니티 성격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표 2> 신문사(닷컴) 시민기자 - UCC활용 현황²⁾

	형 태	시민기자제	주요 UCC 특징
경향신문	네티즌칼럼-블로그	-	커뮤니티(칼럼, 의견) 중심
국민일보	네티즌칼럼(글)-블로그	쿠기 참여 기자 폐지	블로그 정글
동아일보	커뮤니티, 토론실-여론조사	-	'동아누리'-네티즌 참여 사이트
문화일보	-	과거 대학생 기자 운영	2,500여 명까지 참여한 '知Key' 폐지 - 기사 댓글 없음
서울신문	네티즌칼럼	-	과거엔 지면에 반영
세계일보	블로그	-	글로벌 통신원(10명) UCC 기반 '패밀리 비주얼' 운영 전문가 수십 여 명 온라인에서만 활동
조선일보	카페, 블로그	-	'네티즌편지쓰기'
중앙일보	대학생기자-디지털국회	있음	'아리아리' 운영 원고료지급, 인턴기회 지급
한겨레신문	'펼친네트워크'(칼럼) '스포츠통신원'	있음	2,500여 명 필자참여 스포츠면 함께 참여 핸드폰으로 이용자 참여 유도
한국일보	'네티즌리포터'(칼럼 등)	-	'e판사판'-커뮤니티 중심

<한겨레신문>은 '펼친네트워크'를 신설(2005), 생산되는 콘텐츠 중 일부는 지면과 온라인에서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로 콘텐츠를 보내면 웹에서 반영하는 '폰카뉴스'와 '스포츠 통신원'

을 도입했다. <한국일보>는 '디지털리포터',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네티즌 칼럼'을 활용하고 있다.

'시민 저널리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중앙일보>는 2003년부터 대학생 기자 '아리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아리아리'는 대학생들이 만드는 온라인 신문으로 기사, 사진,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게재된다. 대학생 기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5회 이상 사이트에 게재돼야 하는데, 전담 데스크의 심사를 거친다.

좋은 기사는 지면에 게재를 추진하며, 활동이 우수한 대학생 기자는 인턴 기회까지 준다. 2002년 대학생 대상의 온라인 신문 '知Key'를 탄생시킨 <문화일보>는 2005년 초 서비스를 중지했다. <문화일보> 측은 이 배경에 대해 회사 지원 부족과 대학생 참여 저조 때문이라고 밝혀 대비된다.

이밖에도 <헤럴드미디어>는 '누리기자'(2005. 4.)란 명칭으로 인터넷 '생생뉴스'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누리기자'의 활성화 추이를 보면서 기사 작성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그러나 신문사(닷컴)를 중심으로 하는 UCC 기반의 서비스는 대체로 특별한 자격 규정이 없고, 실제 콘텐츠 활용도도 떨어진다. 또 대학생 기자 등으로 도입됐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는 등 포털사이트에 이용자가 집중된 이후 이용자 참여 콘텐츠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 신문사닷컴 관계자는 "신문사들은 네티즌 등이 참여하는 아마추어 기자 조직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있다"면서, "특히 비용 측면을 상쇄시킬만한 수익 모델도 없고 전사적인 관심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2) 신문기업의 시민기자제는 지면, 온라인 뉴스면에 노출되는 취재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견글(칼럼)을 게시하는 경우는 이 표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인터넷 신문, 시민기자제 절치부심

이처럼 기존 신문사의 '시민기자제'가 답보상태에 있는 반면,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오마이뉴스>는 현재 7만 여 명의 시민기자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등 일부 인터넷신문은 지방 소식을 시민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³⁾

인터넷신문의 시민기자들은 주로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칼럼류나 지역 밀착성 고발기사들을 올리는 등 목격한 주제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신문 <참말로>의 경우 전체 기사 중 '국민기자'가 올리는 경우가 30%를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도 비중이 높다.

이렇게 시민기자들이 올리는 기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부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오마이뉴스>는 '기자회원'이 올리는 글을 편집부가 검토,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또 '기자회원'이 제안하는 아이템을 함께 취재하는 등 시민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민기자들의 선발부터 역할과 참여 정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시민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기사를 상근기자가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 취재윤리 논란에 이어 조직개편까지 겪는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오마이뉴스>는 시민 저널리즘이 정착하기 위한 제2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은 상근기자 강화로 시민기자들의 콘텐츠가 노출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반발이었다.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시민기자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신문, 방송 등 기존 언

론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전면적이며 주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은 상근기자 규모가 작아 시민기자에게 일정 부분 콘텐츠 생산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요도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경영문제로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정례적으로 기자 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오마이뉴스>, <브레이크뉴스>, <참말로>, <프론티어 타임스>가 고작이다. 이는 문화부에 등록된 전체 인터넷신문 353개(2006년 3월 현재) 가운데 5%도 되지 않는 수치다. 시민기자의 활동 수준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브랜드 파워'가 결정되는 온라인 매체의 환경상 최근 기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원고료 지급 등 취재활동에 대한 보상도 크게 부족한 편이다. 원고료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오마이뉴스>와 <데일리안> 외엔 거의 없는 편이다. 독자 자발성에 근거하는 인터넷신문의 시민기자제 특성상 원고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널리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포털사이트 UCC 활성화에 총력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의 '시민기자제' 모델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자단'이다. <미디어다음>은 지난 2004년 일종의 '객원기자제' 성격의 '프리랜서 기자'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1만 여 명에 가까운 '블로거 기자단' (2005)으로 외연을 확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미디어다음>은 현재 통신원, 그 중간단계인 네트

3) 미디어오늘 2005. 9. 14. 자

인터넷신문은 시민기자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포털사이트는 UCC 활성화에 총력 기울여

워크형 취재조직 형태인 ‘프리랜서 기자’ 등을 ‘블로그’ 서비스로 통합, ‘블로거 기자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정식 상근 기자가 결합해 ‘저널리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미디어다음>이 이처럼 이용자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UCC가 뉴미디어의 경쟁력의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와의 교감을 중심으로 하는 포털사이트의 UCC 확보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뉴스 페이지에 함께 구성되는 토론실 - 기사 댓글 - 여론조사 등과 함께 커뮤니티 서비스로 넓어지는 형식이다.

<네이버>의 경우 마니아 분석 등 스포츠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 콘텐츠를 넓히고 있다. <네이버>는 또 초기 화면에서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용자 콘텐츠를 연결하고 ‘지식정보’ 등을 검색 등과 연계해 강력한 미디어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의 포털에서 활용된다.

이 같은 경향은 콘텐츠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콘텐츠 편집과 유통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광범위한 이용자들이 몰리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편집 행위를 이용자들에게 넘기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활동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확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털에서 ‘네티즌이 많이 읽은 기

사’나 ‘네티즌 의견이 많은 기사’를 잘 보이는 곳에 위치, 여론을 모으는 데 주력하는 형식이다. <네이트닷컴>은 2005년 1,200여 명으로 구성된 ‘네티즌 편집자’를 위촉, ‘네티즌 편집판’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국내 온-오프라인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등의 ‘시민 저널리즘’은 첫째, 각 매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과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고 둘째, 콘텐츠의 활용 수준도 차이가 있으며 셋째, 기자들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 등 시스템적인 관리가 양극화하고 있다.

UCC라는 개념이 시민 저널리즘과 접점을 형성하는 경우,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자단’도 있지만 아직은 오락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시민기자들의 수효는 늘고 있지만 질적인 성장세는 답보 상태다.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신문, 포털사이트 등 뉴미디어들이 다른 차원의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드 미디어들은 UCC를, 영향력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 등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차별성 있는 틈새 콘텐츠 확보로 다루고 있다. 인터넷 신문 등 새로운 매체들은 논란 속에서 콘텐츠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일임하면서 저널리즘을 시연하고 있다.

<표 3> 각 매체별 시민 저널리즘

	신문사(닷컴)	방 송 사	포털사이트	인터넷 미디어 (오마이뉴스)
시민 저널리즘	- 콘텐츠 확보 - 기자 주도형	- 콘텐츠 확보 - 기자 주도형	- UCC (비즈니스 전략) - 이용자 주도형	- 저널리즘 지향 - 기자, 이용자 공동 주도형
주요 쟁점	- 낮은 참여 - 신뢰도	- 신뢰도 - 선정성	- 저작권 - 신뢰도	- 저작권 - 신뢰도 : 교육

또 신문, 방송 등 기존 언론사들은 시민 저널리즘을 기존 뉴스조직과 기자들의 주도로만 게이트키퍼를 하고 있고,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신문들은 기자와 이용자인 시민들이 함께 주도해가고 있다. 이에 비해 포털사이트들은 관리자가 존재하지만 이용자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주도형으로 분류된다.⁴⁾

기존 언론 “시민기자는 시한폭탄”

이처럼 기존 언론이 시민기자제 즉,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마 추어 저널리스트들이 저널리즘의 신뢰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저널리스트들은 매체의 테두리를 벗어난 활동들, 예컨대 블로그에서 활약하는 저널리스트들의 영향력에 대해 의문하고 있다.

또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와 기괴한 정보들로만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품격을 낮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기존 뉴스 조직은 훈련된 기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서 새로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검증되지 않고 있어서이다. 특히 정보원 확보 등 취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뉴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률적 문제가 잠복한 ‘시한폭탄’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언론사들은 시민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바로 서비스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초상권, 명예훼손,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시비가 생긴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곤혹스러워 한다.

특히 시민기자나 블로거 등 새로운 저널리스트들이 네트워크 환경을 활용,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또 제도권 언론의 아이템을 ‘홍내내기’에 급급하거나 특종에 매달리고, 선정적으로 흐를 우려가 높아 기존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영역을 발굴하는 등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기존 언론이 급격히 확산된 시민기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한과 역할, 가치가 저널리즘 영역에서 다뤄질수록 정체성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을 ‘배제’하거나 사이버 저널리즘으로 규정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다.⁵⁾

이 과정에서 기존 언론이 시민 저널리즘과 경쟁하면서 수준 낮은 정파성을 띠거나 시민 참여형 인터넷 미디어가 제도권 언론에 기웃거리며 ‘권력화’하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이 상호 보완할 부분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 저널리즘의 긍정적 측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언론의 관점에서는 시민 저널리즘은 소외되거나 외면 받던 계층과 이슈를 발굴해 참여지향적 뉴스를 만드는 등 새로운 아이템에서 훨씬 앞서 있다. 또 지역 커뮤니티와 밀착한 공공 현안이나 개인의 일상과 밀착된 콘텐츠들은 매력적이다.

기존 언론이 다루는 고답적이고 묵중한 뉴스에서

4)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2004.1. 김병철-최영)에 따르면, 시민 저널리즘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으로 나뉘었다.

5) 한림대 최영재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제도권 언론의 기자들은 시민기자들을 저널리즘 영역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배제 전략’이나 이들을 사이버 저널리즘으로 규정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시민기자들은 제도권 언론에 맞서 ‘대항 전략’과 ‘편입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 저널리즘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산업적
‘저널리즘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야

는 느낄 수 없는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네트워크상에서 전문가들이나 커뮤니티들과 연계돼 한층 전문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 때문에 다루는 소재와 표현도 훨씬 다양하고 자유롭다.

이용자 즉,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들이 다루는 콘텐츠는 기존 매체 종사자들이 다룰 수 없는 영역으로 보다 생생한 현장감이 묻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의 한 부분이다. 특히 인터넷 등 유비쿼터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 보다 역동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도 하다.

소통과 상생, 교육과 보상이 필요

이러한 장점을 올드 미디어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기반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 시민 참여가 적정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통적인 뉴스조직이 눈높이를 대폭 낮춰 시민 저널리즘의 긍정적 확산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내 주요 언론사들은 이용자와 유기적인 소통에 나선지 오래다. <워싱턴포스트>는 ‘discussion’ 섹션 내에 독자와 편집자·기자 간의 채팅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ask NYT’ 코너를 통해 편집인이 직접 독자의 비판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엔 블로그와 ‘my times’ 등으로 독자와의 소통 창구를 늘렸다.

또 지난 4월엔 블로그 신디케이션 <블로그버스트>(BlogBurst)가 오픈했다. 지식대중, 즉 전문가 급의 600여 블로거들의 글을 직접 <워싱턴포스트>, <샌

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가넷> 등에 공급하는 신디케이션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전통 매체에서 일반 블로그 등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권위의 추락을 막으려는 절충적 선택으로 보인다. 특히 기사 댓글은 채택하지 않거나 편집자의 검증을 거친 뒤라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또 일반적으로 전통매체 웹사이트 내에 독자들의 자유로운 블로그 생성도 막아놓고, 단지 기자와 편집자, 저명인사의 블로그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언론사들은 블로그나 시민 참여형 공간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열어 두고 있다. 하지만 관리와 검증, 교육은 제한적,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 저널리스트와 아마추어 저널리스트간의 소통도 전무한 편이다. 이러한 언론 환경이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시민 저널리즘’이 형성, 심화하는 조건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신생 매체에서 발전한 시민 저널리즘은 아직 기존 언론사로 온전히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 참여 공간을 담당하는 부서를 갖춘 언론사도 소수에 그치고 있고, 생산적인 논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시민 저널리즘의 장점을 위기의 언론산업에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인식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저널리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기업, 언론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저널리스트를 비롯해 지식인과 NGO가 적극 참여, 소통의 문화를 일궈야 할 것이다.

특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아마추어 저널리스트

트들에게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평가받고, 체계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통매체가 함께 함으로써 시민 저널리즘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경험하고 활용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원동력

‘시민 저널리즘’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민이 직접 취재, 편집과 같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에 개입하는 경우, 시민이 전문 기자와 함께 공동으로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경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적인) 사건 기록 또는 시사 문제에 대한 의견과 같은 단순한 콘텐츠 생산 활동의 경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기자, 즉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선발, 교육, 보상 체계를 갖고 있는 언론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 같은 UCC 기반에서 저널리즘과 접점을 찾는 노력도 일어나고 있다.

미약하지만 전통매체들도 이용자와 소통을 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직접 기자들이 참여하는 일도 늘고 있다. 인터넷신문들도 시민기자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역할과 가치를 재설정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핵심은 보다 더 많은 참여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특히 시민 저널리즘은 향후 언론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유권자인 시민이 공공 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하는 공간으로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나 대안 미디어인 인터넷신문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적 모델을 찾기 위해서

는 콘텐츠 확보나 비즈니스 차원이 아닌 보다 ‘저널리즘적’ 관점이 요구된다.

앞으로 시민 저널리즘은 공동체 문제를 조명하는 ‘공공 저널리즘’, 맹목적 비판이나 전통적 시각을 벗어난 ‘대안 저널리즘’, 지역 커뮤니티 또는 정부, NGO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현안을 계속 추적,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쌍방향 저널리즘’, 이를 한 사회의 미래를 위한 속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담론 저널리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저널리스트와 새로운 시민기자들이 인터넷과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만남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민 저널리즘’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과도하게 미화하는 극단의 시각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미 커져 버린 시민 저널리즘과 위축된 전통적 저널리즘은 상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 저널리즘의 제2 도약은 결국 온라인 저널리즘 등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는 모든 미디어 기업, 이용자, 국가, NGO의 연대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병철·최영(2004. 1).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6호.
- 정대필(2006. 3). 지상과 TV에도 시민기자 뉴스 등장. 『신문과 방송』.
- 이원섭(2006. 5). 인터넷신문 등록 현황. 『신문과 방송』.
- 권혜선(2005). 시민기자 정착 아직은 먼 길. 『미디어오늘』 2005년 9월 14일자.
- 홍수원 편역(2005). 블로그와 시민 저널리즘이 돌풍 일으킨 2004년. 『미디어 월드 와이드』 (MEDIA WORLD-WIDE).
-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2006). 「온라인신문, 경쟁과 공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피에르 레비(2002). 「집단지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한 제언(II)

이 봉 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2회 수상 (사는 이야기 부문 / 뉴스 부문)
-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 으뜸상 수상

뉴스가 있는 곳에 사는 시민이 곧 현장기자다

2004년 4월 19일 밤, 부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건물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11층 높이의 철제 지지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공사 중이던 인부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기자수첩을 들고 그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난 직업기자는 아니다. 〈오마이뉴스〉에 기자회견원으로 가입해서 필요할 때 쓰고 싶은 만큼의 기사를 송고하는 시민기자다.

시민기자인 내가 백화점 사고를 취재하게 된 건 순전히 그 백화점과 내가 사는 집 사이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100미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소방차 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큰 길로 모여들었다. 나 역시 사고 현장으로 갔다. 곳곳에 널부러진 공사자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삼풍백화점 참사를 연상케 했다.

2년 가까이 시민기자 노릇을 했던 탓에 구경꾼 중

한 사람으로 그냥 있을 순 없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러자 경찰이 막아섰다. 난 '취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났다.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다 카메라는커녕 손에 불펜 한 자루도 없는 나를 기자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랴부랴 짐으로 뛰어 가서 기자수첩과 카메라를 챙겼다.

현장에 다시 갔더니 마찬가지로 경찰이 막아섰다. 난 기자수첩을 보여줬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에게는 기자증이 없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자증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여태껏 나에게 기자증이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자수첩 하나면 충분했다. 나를 막아섰던 경찰이 길을 열어줬다.

가까이에서 본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소방차와 병원 구급차가 수시로 드나들고, 건물 잔해를 치우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됐다. 어느새 기자들도 저마다 자리를 잡고 현장을 중계하기 바빴다. 난 현장 상황과 사상자 수를 기록하고, 몇 장의 사진을 찍은 후 현장을 빠져 나왔다.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송고했다. 백화점 외벽 붕

피 사고에 대한 간단한 스트레이트 기사였다. 하지만 <연합뉴스>에서 이미 속보가 나온 후였고, 내 기사만이 갖는 차별점은 없었다. 십 분쯤 지났을까. <오마이뉴스>에서 전화가 왔다. 현장에 다시 가라고 했다. <오마이뉴스>에 필요한 건 <연합뉴스>식 속보가 아니라, 현장의 모습 그대로라고 했다.

그때부터 아침 해가 밝아 올 때까지 난 현장에 있었다. 건물 잔해가 하나씩 치워질 때마다, 사상자가 한 명씩 실려 갈 때마다, 사고 현황에 대해 브리핑이 있을 때마다 <오마이뉴스>에 휴대전화로 현장을 중계했다. 부천에 사는 또 다른 시민기자를 현장에서 만난 후로는 현장은 내가, 사상자가 실려 간 병원은 그 시민기자가 맡기로 했다. 그 후로 기사는 현장 4신까지 이어졌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타 언론의 기사와는 차별화 되는 <오마이뉴스>다운 기사가 하나 만들어졌다. '뉴스가 있는 곳에 사는 시민이 곧 현장기자'가 되는 게 바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¹⁾의 시작이다.

기사는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난 잠 한 숨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다. 사고 현장에서의 나는 시민기자지만, 평소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이다. 회사 동료들은 그 기사를 보고 '수고했다'며 격려해 주기도 했지만, 일부는 회사 일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 싶어 시민기자 노릇을 마뜩잖게 여기기도 했다.

이 점이 시민기자들이 느끼는 갈등 중 가장 큰 것이다. 취재와 기사 작성에 시간을 빼앗기는 만큼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 그렇다고 생업에 충실하다 보면 시민기자로서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스스로도 흥미를 잃고 중도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난 왜 시민기자를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오마이뉴스> 창간 이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민기자 노릇을 하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우선 난 왜 시민기자를 하고 있을까. <오마이뉴스>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 전공이 이공계일 뿐 아니라 반도체 만드는 회사원 생활을 오래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언론사 게시판이나 토론방에서 풀어 놓는 일은 즐겨한 정도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생긴 이후로 시민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게시판에 올리는 의견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껏 내 이름으로 출고된 기사가 500개 가까이 된다. 6년 간 500개면 매주 한두 개는 꾸준히 써왔다는 이야기다.

돈 때문일까? 기사 쓰기를 일종의 부업으로 여기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기사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취재를 위한 시간을 제외하고도 두세 시간은 족히 걸린다. <오마이뉴스>에서 주는 원고료는 기사가 메인 톱에 걸릴 경우 2만 원이다. 원고 쓰는 시간에 회사에서 잔업을 하면 그 금액의 몇 배는 더 받는다. 돈 때문이었다면 차라리 야근을 하는 게 낫다. 지난 6년간 기사 쓰는 시간 동안 야근을 했다면 난 회사에서 특진을 두 번도 더 하고 남았으리라 확신한다.

1) 편집자 주 : 본 글은 현직 시민기자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 참여의 의미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 '시민 저널리즘' (civic journalism) 대신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곳에 사는 시민이 곧 현장 기자’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시작

권력욕이 있어서였을까? 기자 출신의 정치인도 꽤 많고, 기자 노릇 자체가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전에 대통령을 친구라 부르며 자기보다 나이 많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어느 신문사 기자의 사례를 보면 기자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6년간의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취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건 없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시민기자인데 권력은 무슨...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내가 쓴 기사가 소개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이 시민기자제의 사례로 취재 대상이 된 적도 있다. 그게 한두 번이라면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일상을 방해받는 것도 만만치 않아 그런 걸 노리고 기사를 쓰는 경우는 없다.

내가 시민기자 노릇을 하는 이유는 기존 언론의 지형 아래에서는 나 같은 회사원,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천민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놀림 당하기만 하는 노동자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도 많은데, 마땅히 그 이야기들을 털어 놓을 곳이 없다. 설령 털어 놓는다 해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들도 없다.

왜 인터넷이며, 왜 <오마이뉴스>인가?

여기에 대안으로 떠 오른 것이 인터넷 공간이다. 인터넷은 그것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누리꾼’ 이라는 호칭으로 열려 있는 공간이다. 게시판에 올리는 글들은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그 글 자체만으로 평가를 한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이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글이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을 때는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게이트키퍼를 통해 인터넷 게시글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마이뉴스>는 바로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터넷 게시글이 기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게이트키퍼 역할이 너무 강조되면 기성언론의 닫힌 구조를 벗어날 수 없고, 너무 느슨하면 언론으로서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마이뉴스>는 애초부터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시작된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닌 언론으로서의 신뢰성과 인터넷 매체로서의 개방성이 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을 마련해 준다. 난 노동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마이뉴스>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수천, 수만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몇 해 전 전국 5개 발전노조의 파업이 있었을 때, 난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빌려 장관의 입장을 따져 물은 적이 있었다. 그 기사는 <오마이뉴스> 톱기사로 올려 졌고, 며칠 뒤 노동부장관 명의의 반론이 <오마이뉴스>에 실렸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노동자와 장관을 한 자리에서 토론하게 만든 것이다.

6년 전 시민기자를 시작했을 때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기에 <오마이뉴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매체들

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나는 여러 인터넷 매체 가운데 <오마이뉴스>를 선택했다. <오마이뉴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마이뉴스>를 선택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뉴스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고서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으며,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매체들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 봐야 한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오마이뉴스>는 결과물이 아니라 도구다. 저널리즘에 참여하는 시민과 독자 사이를 이어주는 도구. 따라서 더 좋은 도구가 나타난다면 시민기자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책임

할 말 많은 노동자로서 좋은 도구를 만났기에 시민기자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만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내 아이들 때문이다.

혼자 살 때는 정치를 논하거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글을 주로 썼다. 그 때는 그런 모습만 눈에 띄었다. 하지만 두 딸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자꾸만 시선이 간다. 교육문제가 대표적일 것이고, 여성문제나, 장애인 문제도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환경이나 인권 관련된 문제도 피부에 와 닿는다.

난 내 딸아이가 살아 갈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 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다 살만한 세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그래도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만한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사를 쓴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가까운 미래가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성 차별을 포함해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노동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 그게 내가 시간을 쪼개어 기사를 쓰는 이유다.

물론 다른 이유로 기사를 쓰는 시민기자들도 많다. 내 이웃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혹은 반기 위해서, 기성언론이 눈감아 묻혀진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시민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쓴다

이제까지 시민기자 노릇을 왜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부터는 기사를 어떻게 쓰는가를 이야기할 순서다. 난 시민기자로서 기사를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난 노동자이면서, 두 아이의 아버지고, 학부모이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자 유색인종이며, 비장애인이고, 어른이며, 가진 것 별로 없는 서민이기도 하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고, 계급적으로 기층민중의 한 사람이다. 지역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내가 태어난 지역을 의식하고 있으며,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한다.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기사를 쓴다는 것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과 자기가 연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야만 어떠한 사안을 놓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약자의 편에 서는 일인가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최소한 내가

시민기자들은 기사의 원고료를 쌓는 대신
기사쓰는 재미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더 중요시해

기사를 쓰는 원칙은 그렇다. 거기에 세상은 진보해야만 한다는 평소 내 생각을 덧붙인다.

이런 점이 시민기자의 글을 편향적 혹은 주관적이라고 폄하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하지 않은가? 직업기자라고 해서 온전히 공정한 입장에서 사실만을 전달하는 건 아니다. 공정을 가장한 편향보다는 처음부터 자기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좌표를 공개한 후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게 훨씬 솔직하고 건강하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기자들에게 좀 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나의 계급성에 맞춘 기사쓰기 원칙이 옳다는 건 아니다. 다만 시민기자로서 기사를 쓸 생각이려면 최소한 자기만의 기사쓰기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지 못한 기사는 기성 언론에서 찍어내는 봉어빵 기사와 하등 다를 바 없게 되며, 굳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따로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기자 노릇은 누구나 할 수 있는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남에게 전해 주고 싶어 하는 건전한 시민'이라면 누구든 시민기자를 할 수가 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에서부터 외국의 현지인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시사 따라잡기, 소재 발굴, 취재, 교열까지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든다. 기사쓰는 게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을 만큼 원고료를 많이 받지 못한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희생을 즐겁게

감수하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명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사쓰기가 즐겁지 않으면 독자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오마이뉴스>의 성공을 확인한 여러 언론들이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동참했지만 온전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상당수의 기존 독자를 가지고 있고, 막대한 돈과 기술을 투입하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까닭은 그들이 시민 기자들에게 재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성 언론들은 시민기자를 자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업기자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했다. 기존 사이트 옆에 자매지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오마이뉴스>보다 원고료를 조금 더 주면 당연히 옮겨 올 걸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민기자들이 참여할 공간이라고 해봐야 기사를 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재미없는 곳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시민기자들은 기사의 대가로 원고료를 쌓는 대신 기사 쓰는 재미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자 한다. 오로지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체만이 시민기자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 과연
합당한가

<오마이뉴스> 창간 당시부터 시민기자 노릇을 해 온 탓에 내게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려주는 이들이 가끔 있다. 그 중에는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도,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성언론에는 관대하면서 유독 시민기자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안 자체를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

인 것 두 가지를 꼽자면 시민기자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를 왜곡한다는 의혹과 기사 신뢰성 자체를 낮추어 보는 시선이다.

기사쓰기가 세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적 외피를 두르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은 시민기자가 아니라 자사 이기주의에 치우친 기사를 대량 생산해 내는 기존 언론사들이다. 일부 전문지나 지방지의 앵벌이 행태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시민기자들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민기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더구나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인터넷 언론의 특징인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의 결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시민기자가 사적 이해가 걸린 기사만 쓰면 독자들의 검열에 바로 걸린다.

시민기자들의 기사는 검증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 시민기자들은 대부분 자기 발 담그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기사로 올린다. 해당 분야에 전문가일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아이의 학부모로서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한 기사를 쓰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 줄 자신이 있다.

직업기자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쓴 기사와 전문가가 직접 자기 이름 걸고 쓴 기사 중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내 선택은 후자다. 지난 5월 31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오마이뉴스 인터내셔널>과 기사 링크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신문 역시 시민기자의 기사를 신뢰한다는 방증이다.

시민기자의 등장과 저널리즘의 진화

그렇다면 시민기자의 등장과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등장 이후 기성 언론의 직업기자와 시민기자가 기사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기성 언론의 직업기자와 유명 칼럼리스트들이 긴장하게 되었다. 출입처의 보도자료를 빼껴 내던 기자들이 보도자료 외에 또 다른 하나를 찾기 시작했다. 시민기자 노릇을 하다 보니 가끔 내 메일함에도 여러 단체에서 보내 온 보도자료가 들어온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과 똑같은 기사를 크레디트만 바꿔 찍어낸 신문을 보면 쓰레기통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시민기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보도자료에 의지한 기사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기사를 잘도 써 냈던 기자들 역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연소식을 프로그램만 보고 쓰고, 시위현장을 방송 뉴스를 보고 쓰던 기자들이 현장에서 올라오는 시민기자의 생생한 소식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수나 변호사 등 일명 공인 받은 지식인들만 쓸 수 있는 줄 알았던 칼럼도 시민기자들로 인해 더욱 풍성해졌다. 외국 철학자의 이야기를 잔뜩 인용하고 선 거기에 살을 덧붙였던 나태한 칼럼은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시민기자들이 삶 속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칼럼과 일대일로 비교되는 건 전문 칼럼리스트들에게는 악몽이지 않을까?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기사의 소재도 바꿔 놓았다. <오마이뉴스>는 라디오 방송의 청취자 사연 정도로 소개되던 사는 이야기를 기사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아이의 첫걸음마, 군대에서 먹었던 '뽕굴이'에 대한 추억, 치매 걸린 어머니의 일상이 톱뉴스로 선정되고, 독자들이 환호했다.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때로는 편지글로, 때로는 대화체로, 사진과

시민기자 구성의 외연을 넓히는 등
참여 폭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시행해야

동영상만으로도 뉴스를 전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로 언론 민주화를 완성해 나간다는 데 있다. 80년대 군부가 물러나면서 언론의 민주화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나라 언론지형은 아직도 몇몇 보수언론이 독과점하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그 권력의 폐해가 너무도 크다. 언론을 통제하던 주체가 군부에서 족벌 또는 재벌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여기에 '다윗의 돌팔매'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다. 새로운 독점 언론권력에 의해 가려지고 왜곡되었던 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민주화이며,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껏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등장이 가져 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온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식을 가진 시민기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마이뉴스>만 해도 새로이 시민기자로 참여하는 숫자가 초기에 비해 줄어든 상태다. 시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 독자들 역시 외면하기 마련이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최근의 정체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여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여성시민기자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다. 시민기자의 기사가 주로 생활밀착형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삶에 기반한 기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거꾸로 여성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소식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성 섹션을 전면에 내세우고, 편집이나 기사 선택에 있어 여성의 시각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성기자의 글에 주로 등장하는 악성 독자댓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사를 쓴 여성이 댓글 때문에 기사 쓰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라면 특종 또는 속보에 대한 강박을 버려야 한다. 시민기자들은 기사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접한다고 해도 기사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신속한 보도보다는 정확한 보도, 또 다른 시각에서의 보도를 앞세우는 게 옳다. 속보에 대한 강박을 버리지 못하면 시민기자의 기사는 지면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셋째, 기사 형식에 대한 파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시민기자들은 기존 언론의 관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자유로움이 기사 형식에 대한 파괴로 나타나는데 게이트키퍼를 담당하는 매체들이 기존 관행에 얽매어 기사로 채택하기를 주저한다면 새로운 시도가 사장될 수 있다. 시민기자의 등장은 기존 언론의 보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론의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저만치 앞서가는 시민기자의 의식을 매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넷째, 시민기자에 대한 언론계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기자의 취재기사 중에는 발품이 많이 든

것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이 자발적 참여를 이유로 보상에는 인색하다. 취재과정에서의 경비에 대한 보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언론사 또는 언론단체에서 시민기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춘 이들이 전달교육을 함으로써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언론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매체 간의 차이를 떠나서 시민기자 간의 연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시민기자들이 모여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각도의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동일한 사안이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서로 비교해 가며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기자의 권익에 대한 동일

한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시민기자 간의 연대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시민기자들 역시 자신의 기사가 독립된 언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책임질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할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내놓는 글인 만큼 기사의 완성도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 일정 수준의 학습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강박이 되어 시민기자로서의 시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등장으로 언론으로부터 객체에 머물러 있던 시민들은 주체와 형식, 마감시간이 따로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막강한 도구를 가진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 역시 누구나 시민기자일 수 있으며, 시민의 참여가 언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

인터넷상 ‘펌’이나 ‘링크’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

-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 방법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

황 인 경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I. 들어가며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령상 책임을 지기 위한 전제로서의, 명예훼손 책임의 실체법적 요건의 하나는 “사실을 적시”하여 (즉, 그 수단을 불문하고 사실을 알게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²⁾ 그 중 “사실을 적시”한다는 요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다는 개념, 즉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개개의 사실적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사실의 적시는 언동이나 문서³⁾, 도화, 신문, 잡지, 출판 등에 의할 수 있었는데, 점차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상의 이메일 등도 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1) 이 글은 2005. 11. 26. 개최된 제5회 언론법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다시 수정한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성립에 공연성이 필요한지, 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공연성’에 관하여,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261 판결에서는 “민법상 명예를 해하였다든 이유로서는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라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에서 서 있는 듯하나, 위 판결도 피해자 본인에게 한 사실의 적시만으로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보는 한 적어도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그러한 진술을 할 것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다음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지만 민사상으로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반드시 구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예컨대 ‘도둑놈’, ‘화냥년’ 등과 같은 모욕적 언사나 추상적 사실의 언사를 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모멸적 언사를 한 경우, 사실의 적시나 의견의 표명이나 하는 구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위수(1993).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도서관. pp. 440 ~ 441; 박윤직 외(2005). 『민법주해』(채권 11). 서울: 박영사. p. 368}

3)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거나(울산지방법원 2005. 6. 15. 선고 2002고단3588 판결), 명예훼손의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끼워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는(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12. 2. 선고 2004고단484 판결) 등의 방법이 있다. : 한편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 범인이 유지, 경영하는 OO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운영계획서’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그 책자 중에 “설립자 △△”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사실 그 설립자는 원고 중증이었다는, 제2심 판결은 원고 중증이 종종 총회의 결의 하에 중증장애인을 출연하여 후세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인 피고 학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사실로서 단체로서의 종종뿐만 아니라 중

인터넷은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게 쌍방향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이 자신의 개성이나 취미를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인 미

니홈피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가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네티즌⁴⁾은 자신이 공감하는 타인의 글을 퍼오거나⁵⁾ 타인의 게시물을 링크하는 방법으로 그 전파적 파급력을 늘리고 있다.⁶⁾ 사실 '핼'은 (그 명칭이야 어떻든지) 인터넷이 보급된 이래 꾸준히

증권 총원의 명예 및 사회적 신용과 관계되는 사항이고 그 설립자의 지위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피고 법인이 그가 발행·배포하는 위 '학교운영계획서' 책자에 "피고 법인의 설립자가 △△"이라고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 중증이 피고 학교법인의 설립자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어 원고 중증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문서배포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다음, "학교법인 설립자인 중증이 정기총회에서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그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부절차를 결의하였으며, 그와 같은 결의에 따라 중증의 회장이 개인 명의로 학교법인의 설립 대표자가 되어 그 명의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한 이상,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증으로서 학교법인의 설립 당시에 이미 중증의 대표자가 학교법인의 설립자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이 그가 운영하는 학교 명의로 발행·배포하는 '학교운영계획서'에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주체가 중증이라고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그 설립자가 중증대표자라고 기재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중증의 사회적 명예나 신용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네티즌이란 시민을 뜻하는 '시터즌'(citizen)과 통신망을 뜻하는 '네트워크'(network)의 합성어이다. 네티즌을 기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망, 컴퓨터의 집합체이며 정보의 수신과 발신의 틀로 보는 입장으로 실용주의적 이해 관심을 보여준다. 이에 반하여 공동체적(사회적) 관점에서는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만들어지는 사회관계를 주목하여, 통신망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협동 과정이자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이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낳는 창조적인 움직임으로 본다. 한편, 통신망 사용자와 네티즌의 차이점은 공동체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냐의 여부인데, 네티즌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통신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에서 가치를 만들고 사회적 차원에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치 개념이다.

5) 일명 '핼'이라고도 한다.

6) 다음은 요즘 젊은이들의 퍼오기 문화와 그 문제점에 관하여 보도된 기사내용이다.

<<http://blog.naver.com/wiseberg.16083812>> "최근 한 마케팅업체에서 발표한 '퍼뮤니케이션의 시대'라는 보고서에는 퍼오기(핼)를 즐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핼킨족과 이런 활동을 뜻하는 '퍼뮤니케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핼킨족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퍼오는 사람을 지칭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핼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도 단순한 조크에서부터 나름대로 진지한 내용의 콘텐츠까지 재미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중략) 한편으로는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대중매체와 달리 일개 네티즌의 콘텐츠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핼의 의의를 찾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핼이라는 행위는 그동안 딱히 이름만 붙여지지 않았을 뿐 인터넷이 보급된 이래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핼킨족의 등장이란 결국 과거에는 일반사이트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던 핼이 일인 미디어로 자리를 옮기면서 일어난 방법상의 변화일 뿐이다. 별로 새로운 것 없는 핼이 이처럼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일인 미디어의 확산'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미니홈피와 블로그가 활성화되면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사냥'에 적극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일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클릭 한번이면 콘텐츠를 자기 블로그로 가져올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어 핼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핼 문화가 확산되면서 뒤따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작권 문제이다. 대부분의 핼이 그 사이트와의 '링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국과 달리 직접 따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핼 행위는 가뜩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별다른 거부감 없이 진행되고 있다.(중략) 누군가에 의해 1차적으로 생산된 콘텐츠를 핼킨족이 목적과 의도에 맞게 수집하고 분류함으로써 나름의 편집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후략)"(세계일보, 2004년 10월 8일자); "퍼옴 문화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고대행회사인 휘닉스 커뮤니케이션즈는 '퍼뮤니케이션의 시대'(The Purmmunication)라는 보고서에서 핼이란 온라인의 '디지털 입소문'으로 오프라인의 구전(口碑)과 기능이 같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핼은 커뮤니케이션의 자발성과 신속성, 확장성에서 구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경향신문, 2004년 9월 29일자); "미니홈피 등 1인 미디어를 쓰는 네티즌들에게 '핼'(인터넷 콘텐츠를 복사해 옮기는 것)은 이미 구문이다"(조선일보, 2004년 12월 2일자); "요즘에는 소위 '1인 미디어'로 불리는 '핼킨족'이 전파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핼킨은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콘텐츠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퍼온다는 인터넷 속어인 '핼'과 네티즌들이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즐겨 사용하는 '킨'(KIN을 세로로

있어 왔고 단지 그것이 1인 미디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물론 개인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한다는 데에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최근 1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낀 많은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 사냥’에 나서게 되면서 그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크게 드러나고 있다. 외국에서 ‘콘텐츠 입수’가 대부분 웹사이트와의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핍’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대중에게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을 몇몇의 언론기관만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편집과정을 거친 후에 의견표명을 하였던 반면, 개인은 별다른 통제없이 누군가에 의해 먼저 생산된 콘텐츠를 스스로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수집하고 분류함으로써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그 콘텐츠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은 원문인 경우 그 원문은 원문 작성자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핍’, ‘링크’와 같은 인터넷상의 전파방법에 의해 빠르게 전달되어 더욱 심각한 명예훼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피해자는 원문 작성자가 아닌 전파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전파자(‘핍’

이나 ‘링크’를 실행한 자)에게 원문 작성자와는 별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 의문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실제 원문 작성자가 누구이든지, 원문 자체에 의해 이미 피해자가 명예훼손 당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핍’이나 ‘링크’는 명예훼손적인 원문을 인터넷상으로 빠르게 전파시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문 전파자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사회감정이야 어떻든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은 명예훼손 방법으로서의 명예훼손적인 원문을 ‘핍’하거나 ‘링크’하는 것도 그 사실적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⁷⁾ 다만 여기서 부언할 점은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원문 전파자의 책임이 ‘전파자의 책임’이라고 논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파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행위가 민법 제750, 751조의 불법행위책임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전파행위가 위법행위인지, 구체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가능할 것이다.⁸⁾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쟁점(Ⅱ) 및 ‘핍’이나 ‘링크’보다 더 일반화된 형태로서 명예훼손적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가 될 수 있는지 여부(Ⅲ)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 다음, ‘핍’이나 ‘링크’가 무엇인지,

세우면 ‘즐’자가 됨)을 합성한 글자이다. 콘텐츠를 퍼 나르는 것을 즐기는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퍼뮤니케이션’이라는 신조어로 불린다”(한국경제, 2004년 9월 30일자)

- 7)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실적시는 반드시 언어에 의한 필요가 없고, 문서배포나 공무집행 등 행동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주로 핍이나 링크 외에 보편화된 형태로서의 ‘인용’에 의한 의견표명의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것이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즉 인용된 원문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냐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판례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이유는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인용이 사실적시 방법이 아니라고 다투지 않고 인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투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위법성조각 여부는 설령 ‘핍’이나 ‘링크’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과의 관련성에서 공익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개념이므로 일반화하여 논의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협이 가능한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법성조각 여부가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8) 왜냐하면 전파로 인하여 피해자가 침해당하는 범익은 명예이고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그 위법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는 형태를 띠게 되므로 그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사실적시 여부는 그 핵심요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다(Ⅳ).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적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한 자가 언론기관인지 개인인지, 그 원문을 작성한 자가 언론기관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그리고 원문 전파자가 '펌'이나 '링크'를 함에 있어 명예훼손적 원문을 승인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장으로 표명하였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원문의 신빙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더 강화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한 명예훼손적인 원문의 인용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인지 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다(Ⅴ).⁹⁾ 그러면 다음에서는 우선 인터넷의 특성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Ⅱ.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쟁점

1. 인터넷의 특성¹⁰⁾

우선 인터넷의 특성으로 그 쌍방향성을 들 수 있다. 그 의미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기존 매체에 있어서의 정보의 수신자에 불과하였던 개인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는 비용지출 없이도 정보의 발신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정보수신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터넷상에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으며,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읽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익명성을 들 수 있다. 개인은 발신자의 입

장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염려가 없는 아이디만으로도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익명이 허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개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키고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다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범람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 다음 시·공간의 비제약성 및 접근·전파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한 자가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정보수신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시설만 갖추면 어떠한 공간에서도 자유로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반복적인 정보접근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적 원문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그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고, 설령 한 나라에서 인터넷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다 하여도 규제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로부터 전파되어 오는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차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탈(脫)통제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정보흐름에 있어서는 그 수단을 지닌 언론기관이 정보통제자가 되어 그 편집권을 행사하였지만, 인터넷에서의 정보흐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모든 정보가 유통 경로상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중심축이나 인

9) 우리나라는 종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도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제2항)”고 규정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었다.

10) 방석호(1999). 「새로운 언론매체의 등장과 권리침해의 문제」, 『민사판례연구』 XXI 제21권 서울: 박영사. pp. 734 ~ 735; 서보학. 「유해정보사이트에 링크해 놓은 경우의 형사책임」, 『법률신문』 3205호. 법률신문사. pp. 13 ~ 14.

터넷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실체가 없다. 이러한 인터넷의 탈 통제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인터넷상에서 다른 매체에서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2. 반론이 가능한 인터넷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의 문제

그런데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근거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기존 매체와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인터넷이 아닌 다른 매체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별도의 의견표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반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책임의 추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시급한 반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같은 게시판을 통해 반론을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유효적절한 반론권의 행사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의 논쟁을 유발한 장본인으로서 반론권의 행사가 가능하였고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반론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오프라인에서도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을 그 표현정도에 차이를 두어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를 논하는 것에는 의

문이 있다.¹¹⁾ 또한 반박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그 명예훼손적 내용을 접한 수신자들이 개별적으로 검색을 통해 반론을 접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3. 이미 알려진 사실을 다시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의 문제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원문을 통해 이미 명예훼손적 사실이 알려진 경우 그 사실을 다시 전파하는 것도 또 다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이다. 만약 원문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어서 이를 인용하거나 퍼오거나 링크하는 등의 전파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더 이상 저하시키지 않는다면 그 원문이 어느 정도 세간에 알려졌는지에 따라 그 원문의 전파에 대한 명예훼손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극단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견해는 명예훼손에서 적시되는 사실은 반드시 비(非)공지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되는 내용이 이미 공표되어 알려지거나 극단적으로 공지의 사실이라도 ‘전파’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도 “이 사건 기사내용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 신문에도 소개되어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 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

11) 정상규(2005, 봄),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 『언론중재』 제94호, pp. 71 ~ 72; 김용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재판자료』 99집, 법원도서관, p. 120.

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¹²⁾ 하지만 공지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것이 이미 사회전체에 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새삼스럽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여기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³⁾

다음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전파’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펼침’과 ‘링크’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보다 더 일반적으로 쟁점화 되어왔던 원문의 ‘인용’이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Ⅲ. 명예훼손적 원문의 ‘인용’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인지 여부

1. 명예훼손 요건으로서의 ‘사실적시’의 개념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 방법은 적시자가 자신이 체험한 것으로 표시하든 인용하여 표시하든 상관없다. 즉 “이러이러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소문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사실로서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¹⁴⁾ 왜냐하면 결국 피적시

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함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¹⁵⁾ 예를 들어 A가 “B가 C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이를 들은 D가 E에게 “B가 C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A가 말하더라” 또는 “B가 C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 경우, 위 D의 진술에는 B가 C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적시 외에 B가 C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고 D의 진술 그 자체만으로도 B의 명예가 손상되므로 원 진술자인 A의 진술뿐만 아니라 D의 진술도 각각 B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다.¹⁶⁾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바로 적시하느냐 아니면 ‘인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시하느냐에 따라 어느 것은 단순한 원문의 인용이고 다른 것은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용’도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무엇이라고 주장된다고 하는 ‘인용’은 자신이 주장자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서 만약 그것이 인용자의 주장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실제상 공격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¹⁷⁾ 또한 신중하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믿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소문차원에 불과하여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식의 부기문을 붙이더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상 그 책임에 영향이 없다.¹⁸⁾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의 보도의 경우 보도방법이 “...이라고 한다”, “○○○ 발표에 의하면...”등의 인용형식 또는 풍문·전문에 바탕을 둔 보도라고 하더라도 그 진실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13) 정현수(1999), 「후보자 비방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p. 375.

14) 정현수(1999), 앞의 논문, pp. 375 ~ 376.

15) 김광삼,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민사책임」, 『전북대학교 대학원』, p. 42.

16) 이성룡(1999),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과 손해배상소송 실무의 개관」, 『인권과 정의』 제271호, 대한변호사협회, p. 88.

17) 이상경(1992, 봄),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제12권, p. 48.

18) 윤재윤·함석천(2005), 「언론분쟁과 법」, 서울: 『청림출판』, p. 121.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를 지는 언론으로서는 사실에 관한 보도인 이상 그와 같은 표현방법을 썼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입법례¹⁹⁾

가. 미국

책임의 명칭이 명예훼손 책임이든지 아니면 전파자 책임이든지를 불문하고 결국 인용은 타인의 진술을 ‘전파’ 하는 것이다. 미국 보통법에서는 “소문 전파자는 소문 날조자와 마찬가지로 나쁘다”(Tale bearers are as bad as tale makers)는 법언에 따라 전파도 주장과 마찬가지로 그 전파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전파자가 원 진술자의 진술을 자기의 것으로 채택하여 전파자가 타인의 명예훼손적 진술을 자기 스스로 채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진술을 전파하는 것은 원 진술과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소문이라고 명시하거나 원 진술자의 신원을 밝혔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전파자가 그러한 진술을 믿지 않는다고 표시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법리가 적용된다.²⁰⁾ 이러한 법리는 언론기관의 전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었고, 결국 명예훼손적 진술의 전파는 그 전파자가 진술의 진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거나 뉴스가 정말로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거나 기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도 진실의 항변으로서 면책되지 못한다고 보게 되었다.

하지만 엄격한 전파자 책임의 추궁은 언론의 뉴스 보도에 큰 제약이 되었고 그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판례법상 언론보도와 관련한 특권이론을

낱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행위나 공적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공정보도의 특권”(fair report privilege)이 모든 주에서 인정되고 있다. 현재는 대체적으로 전파에 의한 명예훼손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보도기관의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기관이 통신사 등 뉴스 수집기관으로부터 받은 소식을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 그것이 신뢰할만한 뉴스 수집기관으로부터 전신 받은 것이고,
- 보도자로서는 그 뉴스가 허위인지를 몰랐으며, 그 뉴스자체의 문면상으로는 그것이 부정확한 것일지 모른다고 주의를 하게 할만한 사항이 없고,
- 보도기관이 수신한 내용을 아무런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보고 있다.²¹⁾

나. 독일

독일에서는 주장과 전파를 구별하되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그러나 전파의 단계나 전파의 태양에 따라 책임이 같을 수는 없다. 이러한 구별을 위하여 독일의 학설은 전파의 태양을 “지적인 전파”(Intellektuelles Verbreiten)와 “기술적 전파”(Technisches Verbreiten)로 구분하고 있다.

‘지적인 전파’란 타인의 표현내용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그 정신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타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이다. 즉 전파되는 주장에 대하여 구술이든 서면이든 전파

19) 박용상(1995),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3)」, 『법조』 44권10호(469호), 법조협회, p. 7: p. 16.

20) 원 진술이 면책특권에 의한 발언인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21) 한위수(1993), 앞의 논문, p. 414.

자가 관념적 관련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논문이나 해설서에서 타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적인 전파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 효과에서도 원칙적으로 주장과 마찬가지로이다. 타인의 주장이 구분될 수 없이 삽입되어 “우리 자신은 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유보문구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또한 언론기관의 보도도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진술을 재생하는 이른바 인용에 의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단체나 인물의 활동에 대한 보도는 보고서, 연설 및 기자회견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 뉴스보도의 일반적인 관행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말했다”고 하는 방식이 보통인데, 언론기관의 전파는 언제나 지적인 전파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여야 하므로 언론기관은 원칙적으로 전파내용의 원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반면 ‘기술적 전파’란 전파자가 전파내용의 정신적 의미와는 무관하게 전파과정에 단지 기술적 내지 도구적으로만 관여하는, 즉 표현내용에 대해 아무런 관념적인 연관을 가짐이 없이 주장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쇄인, 인쇄물의 반포에 관련되는 서적상, 가판점 등은 물론 수송원과 배달원, 방송의 경우 제시된 문언을 단지 읽기만 하는 아나운서, 철도나 우편을 관장하거나 신문이나 서적 등을 운송·배달하는 배달원이 기술적 전파자에 해당하는데, 기술적 전파자의 경우 문서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독일에서는 전파매체가 원문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장자와 같은 책임을 지게 하나, 일정한 형식에 의해 거리를 두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용한다. 원문에 대하여 특히 언론기관의 책임이 배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 내용으로부터 절연하는 경우

이다. 전파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특히 자신의 주장으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문에 대해 어느 정도 명백하게 절연할 것인가, 그 형태가 얼마나 명료해야 하는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인쇄매체의 보도에 있어서는 다툼 있는 주장을 예컨대 “동독의 간첩”이라는 인용부호를 씌으로써 족한 경우가 있고 저자의 의견이 부각되는 해설기사에서는 보다 명료하게 편집자의 의견과 같지 않다는 해명이 필요하며, 향의보도, 풍문보도, 가십보도에 있어서는 절연을 진지하게 평가할 것인지 상세한 심사를 요하는데, 뉴스방송에 있어서는 예컨대 “미확인 보도에 의하면”이라든가, “...라고 언명되었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절연할 수 있다. 때로는 정보원천이 언급되었다거나 상이한 의견이 서로 대비되어 진술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해관계 또는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에서 평가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대비·설명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발언이 대충 동등한 정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생방송 토론과 같이 방송사가 광범위하게 ‘의견의 시장’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리가 적용된다. 방송사 소속이 아닌 외부참여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그와 함께 또는 그에 대신하여 방송사가 토론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언론의 본질과 그 기능에 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방송사는 출연 상대방이 무엇을 말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토론참여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회자의 즉각적인 이의가 없었다 하여 방송사가 그 토론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상세한 지식을 갖춘 사회자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절연이 인정되는 경우 전파자의 책임은 주장의 경우보다 면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지만, 전파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반론권 등의 경우에는 전파자체의 효

과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

결국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별도의 책임제한이나 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전파자에게 원 진술자와 같은 책임을 지울 수 있고, 결국 전파자가 원 진술자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3. ‘인용’ 형식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가. 쟁점

그렇다면 이제 논점을 돌아와 본다.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자가 출처를 밝히거나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용’ 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문과 인용문이 구분되지 않아 ‘인용’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적시’ 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자신의 명예훼손적인 사실적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경우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쓰면서 직접 취재한 내용인 것처럼 쓰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사작성과 마찬가지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²²⁾ 그런데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의 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공급 받은 경우에는 기사공급자의 신뢰도에 따라 책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통상 공급사와 언론기관 사이에, 크레딧²³⁾을 붙이지 아니한 기사에는 언론기관이 책임지기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에 따라 제공받은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크레딧나 전재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보도는

직접 취재한 보도처럼 다루어지고,²⁴⁾ 크레딧을 밝혔다면 그 공급사의 신뢰도에 따라, 예를 들어 연합뉴스나 AP, UPI 등 국내의 유수의 통신사가 보낸 뉴스는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²⁵⁾

나. 판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권위있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 그 언론기관이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그것이 명예훼손으로서의 ‘사실적시’ 인지의 측면보다는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즉 언론기관이 그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o 서울고등법원 2000. 8. 31. 선고 98나25445 판결

피고가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연합통신’ 이라 한다)으로부터 문제가 된 이 사건 기사를 송고 받아 기사화한 사안에서, 피고가 연합통신이 국내 일간지들과 송수신 및 전제계약을 맺고 각 신문사에 기사를 송고해 주는 권위있고 신뢰할 만한 통신사이고, 각 신문사가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일반 관행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자신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볼 때

22) 전원열(2001),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석·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p. 261 ~ 262.

23) 제공통신사의 표시

24) 결국 크레딧 없이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스스로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윤재윤·함석천(2005), 앞의 책, p. 121.

25) 윤재윤·함석천(2005), 앞의 책, pp. 119 ~ 120.

신문사가 통신사와 통신 송수신 및 전제계약을 맺고 그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면서도 그 전제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지방 신문사로서 연합통신과 통신 송수신 및 전제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 송고 받은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연합통신과 사이에, 연합통신이 제공하는 뉴스를 고의로 왜곡하지 않고 연합통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재할 때에는 크레디트를 붙여서 그 전제사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크레디트를 붙이거나 전제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반대 당사자인 원고를 상대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를 게재하여 결국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그 기사에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하였다.²⁶⁾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일간신문 1991. 4. 12.자 코리아헤럴드에 ‘여배우 불법유학관련 혐의’라는 제목과 ‘약 100억 원 챙겨, 한국 유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라는 소제목 아래 ‘C’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경찰은 중, 고생 수백 명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 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C를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실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미국 학교 측에서 수업시간 후 학교 부설 농장에서 말먹이를 주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알선업체인 000 아카데미의 대표인 C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사실은 소외 A가 000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미국에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함으로써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으며, 원고는 위 회사의 광고모델이

26) 서울고등법원 1996. 9. 18. 선고 95나41965 판결도 마찬가지로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인사이드월드’라는 잡지에 한국교포신문인 <LA 데일리타임즈>의 발행인 소외 연훈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기초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숨겨 놓은 딸이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2. 5. 7. 피고 발행의 일간 신문인 부산일보 사회면에 4단 크기로 “김영삼 대표 명예훼손 혐의, ‘인사이드월드’ 발행인 구속”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의 위 구속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기사 말미에 “손 씨는 지난 88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통일교도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후 최 회장에게 시가 7억 원짜리 땅을 21억 원에 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일이 없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된 사람은 원고가 아닌 <LA 데일리타임즈> 발행인인 연훈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피고가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 받아 기사화한 것인데, 연합통신은 국내 일간지들과 송수신 및 전제계약을 맺고 각 신문사에 기사를 송고해 주는 권위 있고 신뢰할만한 통신사로서, 각 신문사가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일반 관행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하여, 본문과 마찬가지로 취지로 판시하였다.

되었다가 A의 제의로 위 회사의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유학 상담 업무 등을 한 것이었다. 경찰은 ○○○아카데미 등 해외유학 알선 업체를 내사한 후 A, 소외 B 및 원고를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250명의 중·고등학생을 유학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합계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하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A, B와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가 공모하여 중, 고등학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A 등과 공모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수배 중이라는 보충설명까지 하였으나, 사실은 위 발표 당시까지 원고는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수사를 피하려고 한 바가 전혀 없었고 원고를 조사한 바도 없었다. 그러나 경찰발표 후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매체들은 마치 원고가 위 불법유학 사기 사건의 주모자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도주한 듯이 뉴스를 내보냈고, 같은 날 오후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연합뉴스도 마찬가지로 통신문을 송신하였고, 위 코리아헤럴드는 영자지인 특수한 사정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기자가 없는 관계로 경찰수사 관련 기사나 기타 사건기사는 연합뉴스의 통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 소속 기자들은 뒤늦게 경찰에 가서 위 보도자료를 구한 후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경찰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통신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 후 경찰은 원고를 조사하고 원

고가 ○○○아카데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불법 유학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비위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는 경찰출입기자가 없는 탓에 그 소속기자들이 경찰의 보도자료나 연합뉴스의 통신문 등 참고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기자들이 직접 구한 유일한 취재자료는 경찰의 보도자료이고 위 기사내용을 경찰의 보도자료 내용과 비교해도 경찰의 보도자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판시하면서 위 사안의 경우 진실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다. 소결

앞에서 언급한대로 판례는 언론기관이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타처에서 제공한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위법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 관점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권위있는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언론기관에게 그 통신사로부터 받은 모든 기사에 대하여 진실 확인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칠 뿐 아니라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기사를 신뢰할만한 통신사로

부터 받은 것이고, 받을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크레디트를 붙여 실질적 변경이 없이 보도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²⁷⁾ 하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 '인용' 형식을 드러내는 경우

가. 인용주체가 언론사인 경우

(1) 책임인정

○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

원고 A 등은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이고, 피고 C는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대통령 후보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주최한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1997년 말경 각종 언론사 및 사회단체들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들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에 관한 소견을 듣는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를 계속하여 개최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C의 사회로 당시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던 이회창 등을 초청하여 '대통령 후보 초청 사상검증 대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바, 위 토론회는 KBS, MBC, SBS를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론회의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온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견해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 경실련이라

든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카톨릭 인권위원회, 무슨무슨 사제단, 뭐 부지기수로 많 습니다.(중략)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시민단체가 전체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협을 주고,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태도 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 재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해서 돈을 긁어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말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또 추가 고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행태를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려는 분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시민 단체가 그저 듣기 좋게 정부에게 압력도 가해야 되고 기업에게 압력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듣기 좋 게만 하실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더 시민 단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구상은 안 가지고 계신지. 왜 그런가 하면 무슨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그 목적은 좋고 모토는 좋습니다만, 그러한 목적과 모토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 단체에 대한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토론회의 토론 내용 전문을 월간 '한국논단' 1997년 11월호에 게재하면서,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시민단체가 특정 세력에 반대, 폭력적 위협하고 있다'는 소재목으로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법원은 "민법상의 명예훼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

27) 한위수(1999, 가을).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제72호, 언론중재위원회, p. 21: "이 때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통신사와 언론기관이 크레디트를 붙인 경우 통신사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과 피해자에게 대외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느냐와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전제로 하여 비방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방법은 질문의 형태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이라는 식으로 타인의 주장 또는 풍문을 전파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에도 일반 시청자나 독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발언자가 그 주장 내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읽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 또는 풍문의 존재 자체만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주장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피고 B의 이 사건 발언은 비록 타인의 주장 또는 풍문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발언의 전 취지로 보아 피고 B가 자신의 생각을 우회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그 발언의 형식에 관계없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²⁸⁾ 피고 B의 책임이 인정되고, 피고 C의 위 발언을 월간 '한국논단'에 게재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책임부정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9892 판결

피고 중앙일보사는 연합통신 소속의 A 기자가 피고 B의 강연내용을 취재수첩에 받아 적은 것을 토대로 작성하여 송신한 통신문을 접하고, 같은 날 A 기자와 한림대학교 관계자에게 피고 B의 발언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날인 중앙일보 제1면 중간에 '노조원들의 성당·사찰 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 B

총장'이라는 제목 하에 "S대 B 총장은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총장은 14일 한림대 수요 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 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B는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 27.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 15.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며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 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라고 주장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심은 "피고 B는 1994. 7.경이래 '사회 각계각층에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고, 한편 원고 조합 조합원들의 농성사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으므로 이는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있는 내용에 관한 발언에 해당하므로 피고 중앙일보사가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피고 B가 한 위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중앙일보가 피고 B가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논평없이 그대로 게

28) 피고들은 위 발언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으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시민단체들이 기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은 원고 경실련에 국한하여 한 발언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한 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보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중앙일보사의 위 기사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이 없어 결국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에 그것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 성당과 사찰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B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²⁹⁾ 이는 결국 피고 중앙일보사의 인용보도가 단순히 피고 B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자체를 보도한 것으로서 본 것이다.

나. 인용주체가 개인인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판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적시자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든 불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어느나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어서 구체성 있는 사실적시에 해

29) 이 사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조합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중 일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모두 원고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S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사람이었다. 원고 조합은 1995. 5. 2.부터 한국통신과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마찰을 빚던 중, 검찰이 원고 조합의 간부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하려고 하자, 쟁의와 무관한 사유로 조합간부들을 대량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투쟁하였는데, 당시 조합장이던 소외 C와 원고들 및 다수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으나 경찰력의 투입으로 연행되어 모두 구속되었다. 한편, 피고 B는 S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1994. 7.경부터 각종 공식석상에서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이른바 주사파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켜 왔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 13명의 농성사태가 있는 직후에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 자체를 목표로 6. 27.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 15.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 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다”, “정보화시대에 북한은 이미 남한 내 어느 집이 쌀밥을 먹고 어느 집이 보리밥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을 정도로 북한세력이 남한에 침투해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이번에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명동성당,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한 것도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냐는 참석 교수 1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면서, “교회와 사찰을 적화통일에 이용하려고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분별을 해야 한다”, “이번 명동성당과 조계사 사건을 이벤트로 하여 북한이 종교로 하여금 정부와 싸우고 계급투쟁의 앞잡이가 되도록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지도자들의 분별이 좀 미비한 것 같다”, “공권력을 넣은 것은 잘 넣었다. 교회와 정부를 싸움 붙이려는 자들이 있다”등을 말하였다. 한편, 피고 조선일보사와 함께 국내 다른 언론사들도 일제히 피고 B의 발언을 보도하였으나,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농성한 것이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 근거가 없었고, 피고 B는 1995. 6. 16.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는 달리 와전되었다고 해명하였으며, 그 후 위 발언을 보도했던 언론사들 중 대다수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농성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들의 반론문을 게재하였다.

당한다”고 판시하였다.³⁰⁾

5. 소결

살펴보면,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9892 판결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의 판례는 ‘인용’을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인용자의 ‘사실적시’가 된다고 본다. 타인의 명예훼손적 원문을 인용하는 것은 그 명예훼손적 내용을 수증하고 이를 자신의 의견으로 삼아 사실적시 한다는 측면과 단순히 사인(私人)이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용한다는 측면이 양립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언론기관이 개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인용하는 것은 언론기관이 제3자에 대한 보도를 함에 있어, 통상 개인이 제3자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를 통해 자신의 보도에 대해 신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기관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만 정보전달을 하는 보도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언론기관이 사인(私人)이 언급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인용한 것이 단순히 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은 언론기관이 개인인 피고 C가 한 발언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제목인 ‘시민단체가 특정 세력에 반대, 폭력적 위협하고 있다’ 등에서 언론기관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9892 판결과는 다르다고 보인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명예훼손적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등으로 전파하는 것이 원문과 별개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를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V. ‘핼’이나 ‘링크’가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인지 여부

1. ‘핼’이란?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 본 인용은 “남의 글이나 말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만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서 통상 인용자가 사실이나 의견을 주장하면서 “누가~라고 했다” 또는 “~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핼’도 원문을 다른 곳에 옮겨 신는 ‘전재(轉載)’이므로, 인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핼’은 그 형태에 있어 출처를 밝힐 수도 있고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인용임을 드러내지 않은 ‘인용’과 유사하게 보면 될 것이다. 출처를 밝힌 ‘핼’은 퍼온 글을 읽기 위해 이용자가 별도의 조치, 예를 들어 마우스 클릭과 첨부파일 열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³¹⁾와 퍼온 글이 퍼온 자의 글 속에 복사되어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읽을 수 있는 경우³²⁾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별

30)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제2심은 수원지방법원 1985. 1. 31. 선고 84노1313 판결).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윤OO 부부에게 김OO이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산다는 말이 있는데 아느냐고 물었더니 오OO이가 모르겠다고 하였다 는 내용이다.

31)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http://blog.naver.com/mslee0826.do?Redirect=Log&logNo=6931022>)
[퍼옴]아파트분양계산기(첨부파일참조) | 집장만하자 2004/10/27 12:44
<http://blog.naver.com/mslee0826/6931022> (일반분양계산하기.jpg)
맛벌이부부 10년 10억 모으기(<http://cafe.daum.net/10in10/>)(이하 생략)

32)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eid=yAlxt2O7mIEDVYTow/BFpnp5oFFuHhYB>)
“오픈백과 : [핼]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의 생애와 사상”
집필자 : brookeeze (2004-09-12 17:05) 신고하기 | 이의제기

도의 조치가 없어도 퍼온 글을 읽을 수 있어 마치 그것이 퍼온 사람의 글이라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인용'과 유사하다. 전자의 경우는 링크와 유사한데 왜냐하면 뒤에서 살펴보다시피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보기 위해 이용자가 링크표지를 마우스로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사이트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퍼온 글을 읽기 위해 첨부파일을 열거나 마우스 클릭이라는 별도의 조치를 거쳐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자의 '뺨'과 후자의 '뺨'은 그 기능적 차이나 읽는 자의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정도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전자의 '뺨'은 뒤에서의 링크에 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고, 후자의 '뺨'은 앞에서의 '인용'에 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2. '링크'는 무엇인가?

가. 개념

한편 '링크'³³⁾는 인터넷상에서 문서 내지 그 밖의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링크이용자는 모니터상에 나타난 링크표지를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링크가 활성화되면 이용자의 웹브라우저는 링크 아래에 연결되어 있던 자료를 열어서 이용자의 모니터상에 나타나게 하는데, 즉 연결된 자료의 URL³⁴⁾ 표시를 통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보여 지

게 된다는 이치이다. 링크는 웹상의 어떤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이용자를 안내하기 때문에 논문에 사용되는 주석에 비유될 수 있는데, 링크는 링크이용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컴퓨터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신속하게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링크제공자로 하여금 번거로움 없이 자신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제공자의 서비스도 링크로서 연결할 수 있게 하므로, 링크제공자는 자신의 컴퓨터 저장공간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보를 확대시킬 수 있다. 오늘날 이미 인터넷상에 수많은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정보는 다른 정보와 링크로 서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발견될 수 없다. 인터넷상의 정보가치는 정보의 수나 질이 아니라 링크를 통한 연결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은 인터넷상에서 링크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링크는 크게 링크가 지시하는 웹페이지의 위치에 따라 자신의 웹사이트 내에 있는 웹페이지로 향하는 내적 링크와 자신의 웹사이트가 아닌 제3자의 웹사이트로 향하는 외적링크로 나눌 수 있고, 주로 문제되는 것은 외적링크이다. 내적링크는 제공자의 책임 자체가 링크설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용의 유포 자체로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종류

외적링크는 단순링크와 내부링크로 나눌 수 있다.

출처 : <http://user.chollian.net/~ummaumji/html/98-3.html>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의 생애와 사상
(Christoph Blumhardt 1842-1919)(이하 생략)

33) 이하 박희영, 앞의 논문, p. 69; 황병하, 앞의 논문, p. 145.

34) URL(Uniform Resources Locator)은 전자우편의 주소나 도메인 주소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접근대상인 컴퓨터(host computer)의 주소라 할 수 있다. URL에 의하여 이용자는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나 자료가 있는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옮겨가게 된다. URL은 특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특정 컴퓨터에 위치한 특정한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게 된다. {이대희(2002),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서울: 『박영사』, p. 31.}

인터넷상에서 가장 흔한 제3자의 웹사이트와의 연결은 단순링크를 통해서 일어난다. 단순링크는 링크하는 웹사이트에서 링크에 의해 연결되는 웹사이트, 즉 링크되는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초기화면링크’라고도 하는데, 링크되는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로만 연결이 가능하고 그 사이트의 하부 디렉토리에 있는 구체적인 파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뒤에서 살펴보다시피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이 그 대상으로 삼았던 링크가 바로 단순링크이다. 단순링크에서 링크이용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을 통하거나 새로운 창을 실행시켜서 제3자의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다. 한편, 내부링크는 링크되는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웹사이트의 하부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웹사이트나 그 밖의 다른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서 ‘심층연결’이라고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링크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링크실행을 통해 다른 제공자의 정보가 직접 이용자의 컴퓨터로 옮겨 오게 되고 연결된 제공물의 URL이 이용자의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보여 지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³⁵⁾

다. 판례

그렇다면 판례는 링크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하거나 바라보고 있을까?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은 음란물을 게시하는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가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보면 인터넷상의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의 인터넷주소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그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웹사이트나 파일의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하는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인터넷상의 링크란 하나의 웹페이지 내의 여러 문서와 파일들을 상호 연결하거나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상호 연결해 주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마우스 클릭(mouse click)’이라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에 손쉽게 접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다른 웹페이지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특별한 명령어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별도로 취할 필요가 없게 해준다)으로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마우스 클릭 행위에 의하여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정보가 전송되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자신이 클릭함에 의하여 접하게 되는 정보가 링크를 설정해 놓은 웹페이지가 아니라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전송되는 것임을 인식하기조차 어렵고, 점점 더 초고속화하고 있는 인터넷의 사용 환경에서 링크는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들을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링크된 웹페이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³⁶⁾

35) 그 외에도 인라인링크(Inline Link)는 이용자를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인터넷상의 특정 웹페이지 내지 웹사이트로부터 링크로 연결된 이미지 등을 가져오도록 검색프로그램에 지시하는 것으로서 ‘embedded-link’라고도 한다. 이 경우 특히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할 수 없는데 인라인링크도 독자적인 링크의 하나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프레임기술은 웹페이지를 각자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여러 개의 창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웹 디자이너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스크롤 바로 움직일 수 있거나 정지된 여러 개의 창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는 자신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떠나지 않고서도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36) 황병하, 앞의 논문, pp. 140 ~ 141; 이에 대한 제2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1. 2. 15. 선고 99노4573 판결)은 링크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다만 개개의 링크별로 그것이 음란물의 전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라. '링크'의 양면성

앞에서 살펴 본 링크의 개념 및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링크는 문리적이거나 기능적으로 인터넷상 문서를 서로 연결하면서 링크된 문서를 보기 위해 마우스 클릭이라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순한 연결기능을 떠나 마치 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한다. 위 판례는 비록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음란한 웹사이트와의 링크가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시이기는 하지만, 판시 이유에서 언급한 링크의 특성은 링크가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링크는 한편으로 원문이 게재된 링크된 웹사이트와 링크제공 웹사이트를 연결하면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그 원문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원문을 '인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의사로 링크를 설정하였고('땀'의 경우 첨부파일설정), 링크표지의 마우스 클릭을 통해 원문이 순식간에 전송되며 실질적으로 그 원문을 볼 수 있는 인적범위를 확대하여 전파력을 늘렸다는 측면에서 링크설정이 원문을 '직접 전달'하는, 즉 원문을 직접 사실적시하는 측면도 있다.³⁷⁾ 이러한 링크의 양면성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은 원문의 '땀'이나 '링크'설정이 단순히 원문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인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원문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를 사실적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범적 가치판단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점이 바로 이 글의 쟁점이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적 원문을 링크하는 경우 실제 판

례에서는 링크를 단순히 원문의 존재를 알리는 인용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명예훼손적인 원문의 사실적시라고 보는가.

3. '링크'가 사실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 서울지방법원 2003. 12. 18. 선고 2003고정1197 판결

“피고인 A는 철도공무원으로서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으로 근무하는자인데, 2003. 5. 28. 08:20경 진보넷통신 철도청 사내 통신망의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소외 B가 피해자 C의 부하직원으로써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B의 힘을 빌려 여러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처럼 ‘돌쇠’란 아이디로 ‘서열팀장 C야 에미다’란 제목 아래 “그냥 서열을 떠나거라. 서열은 직원 수도 많다는데 네 능력으로는 부적절한 일터 같구나. 여러 사람 피 빨아먹고 네 배 채우던 짓은 이제 그만하고 그냥 정거장 운영팀장이나 하면서 정년이나 무사히 맞이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읽어본 후 ‘mk 59100’이란 자신의 아이디로 “운영팀장으로 보낸다고? 안 되지, 대형사고 날라고? 그냥 집으로 보내”란 제목을 쓰고 그 밑에 위 ‘돌쇠’의 글을 그대로 링크시켜 게재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케 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나. 구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

37) 여기서 직접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지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은 원문의 무차별적 이메일 발송도 유사한 양면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³⁸⁾ 소정의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중략)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범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제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라고 판시하면서 해당 사안의 경우 음란물을 링크하도록 한 행위가 음란물의 공연한 전시라고 보았다.³⁹⁾

음란한 내용을 게시한 웹사이트를 인터넷에 직접 개설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 범위반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위 판시에서의 쟁점은 음란한 내용을 게시한 다른 웹사이트나 웹페이지 등으로의 링크(link)를 포함한 일련의 연결수단 부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경우와 같게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전제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판단에는 그 링크표지가 음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웹사이트를 상

38)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이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의 규정을 전기통신영역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특별히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석호(1999, 봄),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현행 법제의 비교분석」, 『언론중재』 제70호, 언론중재위원회, p. 57.

39)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이 사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1998. 5. 8.경부터 1998. 6. 23.경까지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아이뉴스(Inews)상에 개설한 인터넷 신문 <팬티신문>에, 피고인 B가 개설한 각 홈페이지 및 소의 C가 수십 개의 음란소설을 게재한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피고인 B와 C가 음란사진과 음란소설을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하여 <팬티신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영역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및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그 자세한 방법을 살펴보면, <팬티신문> 사이트의 초기화면 좌측하단에 ‘관련사이트’ 항목을 별도로 만든 다음, 거기에 ‘free photo’, ‘nippon’, ‘sixnine 주식회사’, ‘섹스렛’, ‘야한 박물관’, ‘야설’ 등의 링크표지를 집중적으로 나열해 놓은 사실, 그런데 ① 이용자가 위 ‘free photo’를 클릭하면 곧바로 ‘persiankitty’라는 외국의 웹사이트 초기화면이 나오고, 그 초기화면에는 서양여성성의 음부가 드러난 음란영상과 함께 일부의 음란영상을 무료로 더 볼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인 A는 이 부분 링크 표지의 이름을 위와 같이 무료영상의 의미를 가진 ‘free photo’라고 붙여놓은 사실, ② 또 이용자가 위 ‘nippon’ 표지를 클릭하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일본여성 등이 나오는 음란영상들을 모아놓은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관계로, 피고인 A는 이 부분 링크표지의 이름을 일본의 의미를 가진 ‘nippon’이라고 붙여 놓았던 것이고, ③ 이용자가 위 ‘sixnine 주식회사’ 표지를 클릭하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151개의 음란소설을 모아놓은 웹페이지에 연결되는데, 위 음란소설 등은 원래 ‘sixnine adult 주식회사’라는 명칭 아래 유포되었던 관계로, 피고인 A는 이 부분 링크 표지의 이름을 위와 같이 ‘sixnine 주식회사’로 붙여 놓았던 것이며, ④ 이용자가 위 ‘야설’ 표지를 클릭하면 C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54개의 음란소설을 모아놓은 웹페이지에 연결되는데 음란소설을 속칭 야설이라고 하므로, 피고인 A는 이 부분 링크 표지의 이름을 위와 같이 ‘야설’이라고 붙여 놓았다.

징화하였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보인다.⁴⁰⁾

○ 수원지방법원 2001. 2. 15. 선고 99노4573 판결

한편 이에 대한 제2심 판결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링크(link)’의 방식에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링크하는 방식⁴¹⁾과 다른 웹사이트에 속하는 개개의 문서나 파일에 링크하는 방식⁴²⁾이 있고,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링크한 경우에는 그 링크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링크된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이동된 웹사이트의 서버로 연결되고 새로운 도메인 이름이 화면에 표시되는 반면, 다른 웹사이트에 속하는 개개의 문서나 파일에 링크한 경우에는 링크 부분의 마우스 클릭 시에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나 도메인 이름이 변하지 않은 채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문서나 파일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신문에다가 음란한 부호 등이 게재되거나 음란한 부호 등이 수록된 파일들이 존재하는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링크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이는 위 웹사이트의 주소를 전시하거나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에서 말하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음란한 부호 등이 게재되거나 음란한 부호 등이 수록된 파일들이 존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전시하는 것까지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하는 것으로 본다면,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부호 등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전시하는 것도 처벌하게 되는 결과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초기화면을 링크한 경우와는 달리 다른 웹사이트에 속하는 개개의 문서나 파일에 직접 링크한 경우에는 음란한 부호의 전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대전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6307 판결

피고 A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정교수인데, ○○대학교는 학내기구로 ○○대신문사를 두고 <○○대신문>을 2주에 한 번씩 제작하여 ○○대 내부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소외 B, C, D(B는 원고의 아들이다)는 ○○대 사회체육학과 학생들로서, 한 학기 수업시간 수의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해당과목교수 등으로부터 양호한 학점을 취득하였고, 원고 등은 ○○대 사회체육학과의 태권도 및 유도종목 신입생선발 특차실기시험의 채점을 담당하여 당초에 매겼던 평가점수를 상향 정정하여 채점표를 작성하였는데, 충남지방경찰청은 2001. 3.경 위 사건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접수받고 내사를 벌인 결과, 원고 등에 대해서 B, C, D가 제한일수를 초과하여 수업에 결석하였음에도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대의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하고 위 학생들에게 장학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하였다는 혐의로 (이하 ‘이 사건 학사비리 혐의’라 한다), 원고를 비롯한 실기시험 채점교수들 전원에 대해서는 B, C, D를 합격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채점표를 정정하여

40) 각주 39) 참조

41) 앞에서 살펴본 단순링크.

42) 앞에서 살펴본 내부링크.

OO대학교의 입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입시비리혐의’라 한다)로 각 입건하였으며, 조선일보 등은 이 사건 학사비리 혐의사실 및 이 사건 입시비리 혐의사실을 각 보도하였다. 한편, 2005. 4. 15.자 OO대신문은 “우리학교 K교수(사채, 49)의 아들 등이 수업에 전혀 출석을 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은 학사비리가 일어났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기사를, 2001. 4. 17.자 OO대신문은 “학사비리에 연루된 K모(사회체육)교수가 지난 11일 입시비리혐의가 밝혀져 입건되었다. 한겨레신문 11일자에 따르면 K교수 등 5명은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이 대학 사회체육학과 특기생실기시험에서 수험생 2명에 대한 3개 평가항목 점수를 당초 50-60점씩 줬다가 10-24점씩 올려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기사를 각 보도하였고, 또한 위 각 기사를 OO대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위 홈페이지를 OO대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OO대 학생, 동문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도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대전지방검찰청은 2001. 5. 30. 이 사건 학사비리혐의 및 이 사건 입시비리혐의에 대해서 원고를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게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가 비록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이긴 하나, “입시비리

혐의가 밝혀져”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원고의 이 사건 입시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이러한 입시비리 혐의가 사실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으므로 OO대 교수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는 침해되었고, OO대가 OO대신문을 통해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독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⁴³⁾

여기서 ‘링크’ 설정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각 기사를 OO대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위 홈페이지를 OO대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OO대 학생, 동문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도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 부분이다. 여기서 그 링크가 단순링크인지, 내부링크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한 링크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 ‘링크’에 의한 명예훼손책임, 더 나아가 ‘링크’가 사실적시인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4가합 61216 판결⁴⁴⁾

43) 하지만 법원은 결국 OO대신문사 기자들이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학사비리 혐의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교수들에 대한 취재를 한 후 그들이 주장하는 반론의 요지도 기사에 포함시켜 충분히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 학사비리 관련 부분은 상당부분 진실일 뿐만 아니라, 설사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보도한 OO대신문사 기자들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였다.

44) 그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었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원고 A가 동양현대증권 등으로부터 원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등이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에 한국일보를 비롯한 국내 일간지 및 방송사 등 언론사들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의 혐의내용 및 구속사실 등을 알리는 기사(이하 ‘이 사건 범죄 관련기사’라 한다)를 각 보도하였다. 또한 원고 A가 보석금 20억 원을 납부하고 석방되자,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일간지 및 방송사 등 언론사들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은 피고가 노동조합원이 회원인 다음카페에서 언론기관이 작성한 명예훼손적 원문을 그대로 퍼오거나, 원문 기사 등이 원래 게재된 웹사이트로 링크시켜 놓은 행위에 대하여 “이는 이미 일반대중에 공표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나 그 정보가 소재한 웹사이트의 주소를 선전 또는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설령 이 사건 원문기사 등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각 게시물들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전제 또는 링크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원문기사 등을 단순히 인용 내지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이 사건 원문 기사 등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원문 작성자와 동일한 내용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이 전제 또는 링크 행위가 이 사건 원문 기사 등의 내용을 단순히 인용 내지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앞서 본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그 역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원문 기사 등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은 잘 알면서 원고들을 비방할 의도로 위와 같은 전제 또는 링크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원문 기사 등이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이를 알리는 기사(이하 ‘이 사건 보석 관련기사’라 한다)를 각 보도하였고, 이를 접한 민주노총은 “원고 A가 사기행각으로 원고 회사를 인수한 후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보석금을 마련하여 석방되었고, 막가파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수 억 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였으며, 미국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주간지 <선데이저널>지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 회에 걸쳐 원고 A가 원고 회사를 인수한 과정 및 인수 후 해외투자활동을 하는 과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선데이저널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한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혐의 내용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2003. 11. 28. 2003고합145호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 10. 6. 2003노3322호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daum)’에 노동조합원을 정회원으로 하되, 정회원이 아닌 일반 방문객인 경우에도 게시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개카페(명칭 : 000 카페, 인터넷주소 : <http://cafe.daum.net/>(생략), 정회원수 60~70명,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o 작성일 : 2003. 5. 9., 작성자 아이디 : “태동의 의지”, 제목 : “우리의 대빵(?)에 관련된 신문기사 & 방송기사”』로 하여 이 사건 범죄 관련 기사를 그대로 전제(轉載)하고, 원문 기사가 게재된 한국일보 등의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로 곧바로 접속(links)되는 링크형식으로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에 이 사건 제1게시물을 게재하였고, 『o 작성일 : 2003. 5. 9., 작성자 아이디 : “태동의 의지”, 제목 : “MBC 홈페이지의 글입니다”』로 하여 이 사건 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된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의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로 곧바로 접속되는 링크형식으로 이 사건 제2게시물을 게재하였으며, 『o 작성일 : 2003. 5. 14., 작성자 아이디 : “태동의 의지”, 제목 : “불쌍한 자여”』로 하여 “거짓으로 뭉쳐진 한 인간. 모든 것을 왜곡해서 말만 꺼내면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한 인간.. 그 인간!! 여기 들어 오거덩 한번쯤 읽어 보거라... 너를 위한 글이니 까... 이 XY야.. 그토록 많은 거짓을 유포하면서... 너는 모든 게 맞다고 하는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 누구의 허수아비 주체에... 허수아비이면 허수아비답게 그렇게 살도록 하거라... 까불지 말고 그림.. 허수아비 ~ ~ 잘자 ~ ~”라는 이 사건 제3게시물을 게재하였으며, 『o 작성일 : 2003. 6. 11., 작성자 아이디 : “태동의 의지”, 제목 : “보석금 20억 원 관련 보도”』로 하여 “각종 일간지를 클릭하세요”라고 소개한 후, 이 사건 보석 관련 기사가 각 게재된 언론사의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로 곧바로 접속되도록 하는 링크형식으로 이 사건 제4게시물을 게재하였으며, 『o 작성일 : 2003. 6. 17., 작성자 아이디 : “태동의 의지”, 제목 : “민주노총 건설 산업 연맹에 쓰여 진 속보”』로 하여, 내용 :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저희 회사 관련 글이 있어서 링크 시켜드립니다”라고 소개한 후, 이 사건 성명서가 게재된 민주노총의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로 곧바로 접속되도록 링크형식으로 이 사건 제5게시물을 게재하였고, 『o 작성일 : 2003. 9. 1., 2003. 9. 15. 작성자 아이디 : “깜빡에 강 넣어라”, 제목 : “sundayjournalUSA에 실린 기사들(신속히 보아주기 바람)”(2003. 9. 1.자), “선데이 기사저널...기사(9월 14일자)”(2003. 9. 15.자로 2건이 게재됨)』로 하여 “내용 : 이 사건 선데이 저널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거나(2003. 9. 15.자의 게재된 2건의 경우), 이 사건 선데이 저널기사가 게재된 해당 웹사이트로 곧바로 접속되도록 링크형식으로(2003. 9. 1.자의 경우) 이 사건 제6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원고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당초보다 현저히 확대 또는 심화되었다면, 명예훼손물의 전파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안의 경우 그 원문 기사 등을 단순히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사실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원문 기사를 퍼오거나 링크한 피고가 그 과정에서 “깜방에 강 넣어라”라는 작성자 아이디어를 사용하였고 게시물을 읽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노동조합원이라서 언론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는 그 원문 기사 등을 편집할 권한이 없고 이를 게재함에 있어서 출처를 분명히 밝혔으며 원문의 내용을 수정을 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별도로 부가하지도 아니하였고 원문 작성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전국단위의 노동단체에 비하여 피고는 사실조사 능력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 또한 극히 미미한 개인에 불과하므로 퍼오거나 링크에 의하여 원문 기사 등의 신빙성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⁴⁵⁾

4. 소결

‘핍’이나 ‘링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4가합61216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링크도 링크된 웹사이트에 게재된 명예훼손적인 원문의 내용을 사실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여

기에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대한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의 취지를 더하면 내부링크는 원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시’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단순링크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링크제공자의 입장에서 링크는 링크된 원문이나 그 웹사이트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지 직접 그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링크를 통해 링크된 사이트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인적범위를 단지 확대한 것이며, 링크제공자는 링크된 웹사이트 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링크이용자의 입장에서 링크표지를 클릭하지 않고도 주소를 입력하여 링크된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링크를 단순히 링크된 웹사이트나 원문의 존재를 알리거나 인용하는 측면이 있긴 하다.⁴⁶⁾ 하지만 링크이용자의 입장에서 마우스 클릭에 의하여 접하게 되는 정보가 링크 설정된 웹사이트가 아니라 링크된 웹사이트로부터 전송되는 것임을 인식하기조차 어렵고, 점점 더 초고속화하고 있는 인터넷의 사용 환경에서 링크는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들을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링크된 웹페이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라는 개념은 명예훼손의 형태에 비추어 다소 유동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링크제공자가 링크된 웹사이트 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반드시 그 전파가 사실적시가 될 수 없다고

45)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범죄 및 보석 관련기사, 이 사건 성명서, 이 사건 선데이저널 기사(이하 ‘이 사건 원문 기사’ 등이라 한다)를 의도적으로 취합하여 그 중 일부 내용을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을 통해 그대로 전재하거나,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 사건 원문 기사 등이 게재된 해당 웹사이트로 곧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비록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인 이 사건 원문 기사 등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복사 또는 링크 수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원문 기사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파시킨 이상, 직접 작성자(이 사건 원문 기사 등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사 및 민주노총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원문 작성자’라 한다)와 함께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6) 박희영, 앞의 논문, pp. 93 ~ 95. ; 서보학, 앞의 논문, p. 14.

보이지는 않는다. 그때그때 원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여 스스로 편집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과정에서 현재 명예훼손적 원문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개념이 끼어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링크이용자가 링크 설정된 웹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명예훼손적인 원문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반드시 해당 명예훼손 가해자를 통해서 적시당해야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였다면 그 경로를 제공한 사람이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건으로는 링크인지, 그 중에서도 단순링크인지 아니면 내부링크인지에 따른 기술적인 개념에 따라 그것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원문 내용의 사실적시인지 아니면 원문에 대한 인용인지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인지 여부의 요건 검토에 있어, 구체적인 태양 및 질적 차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규범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규범적 판단에 있어 시대흐름에 따른 명예훼손의 태양 및 제재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펼'이나 '링크'에 의한 명예훼손적 원문의 전파는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네티즌들에 의하여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물론 명예훼손적인 원문을 이메일이나 소수 회원들만을 위한 게시판을 통하여 특정인 몇몇에 대하여만 전파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러한 전파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

지 않았거나 저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량적으로 다른 웹사이트의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한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또한 그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⁴⁷⁾ 한편 그 전파당하는 수신자의 수가 적다 해도 '펼'이나 '링크'가 단순한 '전달'을 넘어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추가되는 등 원래의 원문과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의견표명 수단의 변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상 '펼'이나 '링크'에 의한 명예훼손을 포섭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면 명예훼손적 원문을 게재하는 웹사이트나 문서의 링크설정, 첨부파일 설정도 제3자의 사실적시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의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판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원문내용의 존재를 알리고 그 원문을 인용한다는 측면과 원문내용을 사실적시한다는 측면을 지닌 스펙트럼에서 명예훼손적 원문의 단순링크와 명예훼손적 원문의 내부링크, 마우스 클릭이나 첨부파일 열기가 필요한 '펼'이 놓여있다.

V. 인용과 사실적시의 구분

1. 구분기준

그렇다면 출처를 밝힌 '펼'이나 '링크'가 원문의 존재를 알리고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원문 내용의 사실적시인지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까? 하급

47) 물론 당해 표현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의 진실한 표현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표현인 경우에는 이를 전파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전파자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고 전파자에게 진실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입증책임을 전파자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전파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타에 공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보도와 특별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파자는 원래의 표현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진실확인 의무가 있고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심판례는 “타인의 주장을 인용한 경우에 있어 일반적으로 읽는 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인용자가 그 주장내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가 읽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 또는 풍문의 존재 자체만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주장내용을 이루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으로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⁴⁸⁾ 그 기준은 인용의 형태인 ‘핼’ 이나 ‘링크’ 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퍼온 글을 읽는 자나 링크설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명예훼손적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한 자가 그 주장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그러한 의도가 읽히며 그렇지 않더라도 ‘핼’ 이나 ‘링크’ 에 의하여 명예훼손적 원문의 신빙성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전보다 강화시킨 경우에는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한 자가 원문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그러한 의도가 읽히는지, 더 나아가 퍼오거나 링크에 의하여 명예훼손적 원문의 신빙성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는지 여부는 다시 구체적으로 퍼오거나 링크한 자가 사용한 작성자 아이디가 명예훼손적인 원문과 관련성이 있는지,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과정에서 그 링크설정 페이지에 붙인 제목이 무엇인지, 그 때 원문을 수정하거나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였는지, 퍼온 글을 읽거나 링크설정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자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중립적인 성향을 지녔는지 아니면 적대적인 성향을 지녔는지, 원문 작성자와 ‘핼’ 이나 ‘링크’ 한 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제목을 단순히 ‘핼’ 이나 “~에 대한 기사”라고 하면서 별다른 부가 의견없이 곧바로 퍼오거나 링크하였다면 그 원문의 존재를 알리

고 이를 인용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많다. 하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제목을 정하면서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였다면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많다. 또한 단순히 인용의 의도가 있었다 해도 ‘핼’ 이나 ‘링크’ 와 같은 전파로 인해 원문의 신빙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면 또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 본 서울지방법원 2003. 12. 18. 선고 2003고정1197 판결은 제목 자체가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므로 명예훼손적 원문을 링크한 경우를 바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 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4가합61216 판결도 “게시판의 성격과 운영실태, 원문 등을 퍼오거나 링크한 구체적인 방식, 원문 등이 원래 게재되어 있던 웹사이트의 성격 및 운영실태, 원문 등을 이용한 동기 및 그로 인한 영향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과정에서 ‘깜방에 강 넣어라’ 라는 작성자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그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노동조합원이지만, 퍼오거나 링크한 사람은 원문에 대한 편집권한이 없고 원문에 수정을 가하거나 주관적인 의견을 별도로 부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문 작성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전국 단위의 노동단체임에 비하여 피고는 사실조사 능력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 또한 극히 미미한 개인에 불과하므로 퍼오거나 링크에 의하여 원문기사 등의 신빙성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 보다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적인 원문에 대한 퍼오기와 링크를 단순히 그 원문의 인용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 판단은 일률적일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명예훼손

48)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

손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만한 사이트에 링크를 해놓았는데 기대에 반하여 명예훼손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면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분류

그렇다면 위와 같은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과 언론기관의 사회적 영향력이 다르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적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형태는 크게 개인이 다른 개인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개인이 언론기관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개인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라 출처를 밝힌 경우 원문의 존재를 알리고 인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적시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명예훼손적 원문을 사실적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개인이 다른 개인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우선 명예훼손적 원문을 작성한 개인의 파급력보다 퍼오거나 링크하는 개인의 파급력이 크다면 퍼오거나 링크하는 개인은 그 명예훼손적 주장을 승인하거나 동조하기 위해 '펼'이나 '링크'를 실행하였고 그 원문은 이전보다 신빙성이 높아지거나 그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펼'이나 '링크'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많다. 앞에서 살펴 본 서울지방법원

2003. 12. 18. 선고 2003고정1197 판결에서는 철도공무원인 피고인이 철도청 사내통신망의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다른 철도청 공무원이 게시한 허위내용의 글을 링크하면서 명예훼손적인 제목을 붙인 경우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였다.

나. 개인이 언론기관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이 경우 명예훼손적 원문을 작성한 언론기관의 파급력이 '펼'이나 '링크'를 한 개인보다 크므로 '펼'이나 '링크'로 인하여 원문은 이전보다 신빙성이 높아지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명예훼손적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개인은 언론기관이 작성한 원문의 신빙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에 편승하여 그 주장을 승인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다.

다. 언론기관이 개인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개인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인용한 형태라고 본다면 같은 구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만약 사회적 영향력이나 인용형태에 비추어 언론기관이 개인이 작성한 원문을 인용함으로써 개인의 주장을 승인하거나 동조하거나 원문의 신빙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높아지거나 강화되었을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언론기관의 보도기관적 성격에 비추어 개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⁴⁹⁾

4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9892판결

라.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인용의 한 형태라고 본다면 같은 구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언론기관의 보도기관적 성격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적인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그 사회적 파급력이나 인용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3.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여부

지금까지 우리는 명예훼손적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라는 요건에 포섭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기존 판례는 그것이 설령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라 할지라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해 왔고 그것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적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지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까?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 33828 판결은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고 더욱이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언론기관은 보통 대등한 취재능력 및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므로 위 판례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개인이 다른 개인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개인 사이에 취재능력이나 사회

적 영향력에 차이가 없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더 나아가 언론기관이 개인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인용하거나)에는 언론기관의 주의의무가 더 크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개인이 언론기관이 작성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4. 소결

요약하자면, 명예훼손적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수정하거나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였는지 등을 참작하여, 퍼온 글을 읽는 자나 링크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자가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한 자가 그 주장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한다는 의미에서 명예훼손적인 원문에 대한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퍼오거나 링크한 자가 원문 작성자와는 별개의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 하지만 표면상 ‘핼’ 이나 ‘링크’ 가 원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원문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은 잘 알면서 그를 비방할 의도로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였고, 그로 인해 원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명예훼손 정도가 당초보다 현저히 확대 또는 심화되었다면, 또는 ‘핼’ 이나 ‘링크’ 에 의하여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은 원문의 신빙성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으로 규율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적시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VI. 끝맺으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게 정보발신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적 원문이 전파되는 경우 정보 발신에 대한 탈통제성 및 그 신속성으로 인하여 폐해가 심각하고 더욱이 개인이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를 보유함으로써 문제점은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그 명예훼손적 원문의 전파는 종래의 1대1적인 방법이 아니라 ‘펼침’이나 ‘링크’(또는 무차별적 이메일발송)와 같은 대량적·무차별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으로는 이를 종래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법률요건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출처를 밝혀 원문을 복사함으로써 퍼온 원문을 읽기 위해 별도의 마우스 클릭이나 첨부파일 열기가 필요없는 ‘펼침’의 경우는 종래의 ‘인용’과 유사하고 퍼온 원문을 읽기 위해 별도의 마우스 클릭이나 첨부파일 열기가 필요한 ‘펼침’은 링크된 웹사이트나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별도의 마우스 클릭을 거쳐야 하는 링크와 유사하다. 그리고 원문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인용한다는 측면과 원문 내용을 사실적시한다는 측면의 양 끝을 가진 스펙트럼에서 ‘인용’이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펼침’의 경우는 사실적시 측면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펼침’이나 ‘링크’는 인용의 측면에 더 근접하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리적으로는 링크 중에서도 단순링크가 내부링크보다 더 인용의 측면에 더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규범적 판단에서 그 차이는 본질적이지 못하다고 보인다. 쟁점은 명예훼손적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수정하거나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였는지 등을 참작하여, 퍼온 원문을 읽거나 링크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자가 원문을 퍼오거나 링크한 자가 명예훼손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가 읽힌다는 인상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다면 ‘펼침’이나 ‘링크’와 같은 일종의 전파도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라고 보아 법적인 틀에 포섭시킬 수 있어 원문 작성자와는 별개의 명예훼손 책임을 지을 수 있다. 또한 ‘펼침’이나 ‘링크’가 표면상으로는 원문을 인용·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그 원문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은 잘 알면서 그를 비방할 의도로 그 글을 퍼오거나 링크하였고, 또는 원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명예훼손의 정도가 당초보다 현저히 확대 또는 심화되었다면, 또는 명예훼손적 원문의 신빙성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라고 보아 명예훼손 책임(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언론보도 분쟁의 재판 외 해결절차로서의 언론중재

조 수 정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I. 서 론

1.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및 변천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 3. 31. 언론기본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¹⁾되어 언론관련 분쟁 중 정정보도청구사건 만을 심의하였는데, 1987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의 제정·시행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 하게 됨에 따라²⁾, 정정보도청구 외에도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까지 다루게 되었다.

2005. 1. 27.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이 같은 해 7. 28.부터 시행되었는데,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³⁾으로 한

다.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분쟁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단일법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실질적인 중재기능을 도입하고, 인터넷신문도 조정대상 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언론보도로 인한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대상으로 추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존의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청구 사건 외에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까지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2. 언론중재절차의 특성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법적 분쟁(이하 '언론분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언론중재절차(이하 줄여서 '언론중재절차'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성이 있다.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

1) 언론기본법 제50조, 언론기본법(법률 제3347호)은 1980. 12. 31.제정되었다가 1987. 11. 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는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위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하.

3) 언론중재법 제1조.

송의 대상으로 법원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언론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정이나 중재⁴⁾라는 재판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법원에 의한 민사조정절차⁵⁾, 민간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절차가 있는데, 언론중재절차는 특별법⁶⁾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며, 언론분쟁만을 대상으로 한다.

언론중재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절차가 마련된 기본취지와 언론중재절차의 특성, 즉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라는 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점, 언론분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

II.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일반론

1. 민사소송제도의 한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절차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이며, 언론분쟁과 같이 사

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절차는 민사소송제도⁷⁾이다.

민사소송은 적정, 공평, 신속과 경제라는 이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규를 만들고 운영한다.

적정(適正)은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 즉 권리 있는 자는 승소하고 권리 없는 자나 의무 있는 자는 패소하게 하는 것으로 올바른 재판을 하려면, 즉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려면 법원은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법률을 타당하게 적용하여야만 한다.

공평(公平)은 소송의 심리에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신속(迅速)은 권리자의 권리보호가 실효성이 있도록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經濟)는 당사자와 법원의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자는 것으로 당사자가 소송에 들이는 노력·비용과 비교하여 소송의 결과 얻게 되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커야만 당사자가 소송을 할 의미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이러한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이념 상호간에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적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신중

4)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의 언론중재는 표현은 중재이었으나 그 법적인 성격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이었다. 언론중재법은 이전의 조정에 해당하는 '언론중재'('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라는 표현을 '조정'으로 바로 잡는 한편(언론중재법 제3장 제2절 제18조 이하) 중재도 도입하여 이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3장 제3절 제24, 25조).

5) 법원에 의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로는 민사조정, 가사조정 외에 재판상 화해도 있다.

6) 언론중재위원회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ADR 담당 위원회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7) 민사소송은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법권을 독점하고 원칙적인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마련한 제도이다(호문혁(2006), 「민사소송법」 제5판, 서울: 법문사, p. 4).

하게 심리하여 결론을 내야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신속과 경제를 기하기 어렵다.

한편 민사판결은 과거에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권리 또는 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이기고 상대방이 지는 이분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만족시키는 융통성 있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절차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라는 이념을 동시에 모두 실현하는 것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많다. 또 재판은 당사자 일방의 승패만을 결정할 뿐 당사자 쌍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분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화해나 중재, 조정과 같이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재판 외의 분쟁해결절차의 장·단점

대표적인 재판 외의 분쟁해결절차로는 화해, 조정과 중재가 있다.

화해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일정한 선에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특히 재판상 화해는 그 결과를 법원에서 진술하여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결시킨다.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협상에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⁸⁾

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이 법원이 아닌 제3자, 즉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일단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상 당사자들은 중재자의 판정에 승복하여야만 하며 중재절차에서 판정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새로이 제정·시행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언론중재절차에서는 언론분쟁에 대해 조정뿐 아니라 중재도 가능하다.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는 복잡하고 엄격한 민사소송에 비하여 더 융통성 있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판결에 의한 일도양단식의 해결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한 진정한 의미의 분쟁해결이 된다는 장점⁹⁾이 있다.

그러나 반면 당사자들의 합의 내지 양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리자는 그 권리를 완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의무자는 그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이러한 절차에 의하면 법의 내용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즉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¹⁰⁾이 있다.

언뜻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 그 순기능이나 존재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 대부분은 민사소송의 문제점 내지 폐해에 대

8)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외의 경우에도, 분쟁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야만 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9) 호문혁(2006), 앞의 책, p. 6.

10) 호문혁(2006), 앞의 책, p. 6.

한 지적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더 나아가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대체수단인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연구와 활성화방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민사소송제도가 무익하거나 존재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만약 그러한 취지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더라도 공정한 절차진행의 결과 법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적절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제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이에 갈음하는 다른 분쟁해결방안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법치주의 하에서 진정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들이 언제나 적절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하고, 판결의 내용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분쟁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당사자가 신속이나 경제를 더 중요시 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재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의 일부를 양보하고 그 대신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재판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양보하는 대신 재판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사항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선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비용이나 절차의 지연, 노력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절차가 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3.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바람직한 운영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분쟁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서는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부 양보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이나 가능성을 제시·검토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당사자 쌍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분쟁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쟁의 특성과 당사자 쌍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상호간의 win-win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노력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이라는 미명아래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고 권리의 포기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만 한다.

그러려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법에 보장된 권리의 일부를 포기할 것인지, 포기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에게 진정한 의사에 기한 자율적인 선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절차의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이 확보

되어야만 한다.

첫째,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은 정도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간이하고 덜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규의 내용을 파악·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예상되는 민사재판의 결과와 사건의 내용, 당사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선택 가능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복수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그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신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 즉 양보하는 것과 그 대신 얻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조정을 비롯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는 운영기관에 법원과 같은 강제권이 없고 당사자에게 제시한 분쟁해결방안을 선택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¹¹⁾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분쟁해결이 불가능하다.¹²⁾ 따라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려면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와 같은 운영주체와 구성과 절차운영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Ⅲ.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언론중재 절차의 바람직한 운영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일반에 대한 앞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면 언론중재절차를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중재부는 개별적인 언론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실체를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론보도와 그로 인한 분쟁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인정

언론중재절차의 대상이 되는 언론 분쟁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정보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 입은 경우의 반론보도,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공표되었으나 후에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의 추후보도청구,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이러한 언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통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신청인에게 반론의 기회가 보장되고 보도에 반영되었는지, 추후보도의 경우에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 및 손해배상

11) 직권조정결정의 경우도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게 되고, 중재의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12) 이런 의미에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역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여러 요소¹³⁾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언론중재절차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수적인 언론피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은 엄격한 절차에 의한 철저한 증거조사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실인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중재부가 당사자에게 분쟁해결 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제시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에 승복할 가능성이 낮아 결국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하다.

언론중재법은 중재부가 언론분쟁의 조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조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에 의한 증거조사제도를 채택하고 있고¹⁴⁾ 이러한 증거조사는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¹⁵⁾

언론중재법의 시행 이후 중재부에 의해서 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한 증거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외에 문서송부촉탁, 녹화테이프제출 촉탁,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CCTV 녹화물에 대한 재생·검증 등이 실시되었다.¹⁶⁾ 중재부가 증거조사를 시행한 사건은 전체의 10%정도로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증거조사가 시행된 경우¹⁷⁾ 이는 사건의 효율적인 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¹⁸⁾

언론중재부에 의한 증거조사결과 분쟁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진실여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중재부로서도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타당성을 가진 방향으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쌍방에게 제시할 조정안도 힘을 가질 수 있고, 당사자도 분쟁의 종국적인 결론을 예상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협상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승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조정신청 사건의 처리기한 내에 마칠 수 있는 증거조사에 의하여 언론보도의 진실여부에 관해 보다 명확한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13) 언론보도의 내용, 피해자 측 사정, 가해자 측 사정,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참작 사유로는 ① 보도의 크기, 위치, 경위와 목적, 진실성의 유무,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신속성의 정도(일간, 주간, 월간 등), 보도의 사회적 영향과 같은 언론보도의 내용, ②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의 지속성과 회복곤란성,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정도, 신분, 사회적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와 같은 피해자 측 사정, ③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재산·재정상태, 보호 이후의 태도와 같은 가해자 측 사정 ④ 언론이 기사를 정정·취소하였는지 여부, 원상회복처분을 함께 명하는 경우 여부와 같은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을 들 수 있다.

14) 언론중재법 제20조.

15)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7조 제2항.

16) 박정호(2006), 『증거조사 실시의 현황과 과제』, 2006년도 언론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논문 참조.

17) 피해자 측의 유산시술, 수사기관에서의 발언 여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수사기관에의 사실조회결과 보도가 허위임을 확인한 사건에서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된 사례: 관련 기관간의 협의유무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협의가 있었음이 밝혀져 조정이 성립된 사례: 감사원이 신청인 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감사원 직원으로부터의 진술청취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정정보도를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례 등(박정호(2006), 앞의 발표내용 중).

18) 박정호(2006), 앞의 발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언론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¹⁹⁾는 타당하다.

다만 언론중재법은 증거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기한이라는 제한²⁰⁾ 때문에 증거조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인 중재위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나. 중재부가 언론보도와 그로 인한 분쟁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이나 배경, 즉 언론사가 분쟁대상이 된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언론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었다고 하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인이 원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상반된 신청인과 언론의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일방의 양보가 아니라 쌍방에 모두 도움이 되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분쟁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이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특히 언론에 종사한 경험과 학식이 필수적이므로 언론전문가가 중재위원으로 참여하는 현재의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언론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해서²¹⁾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법률 및 언론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들이 심리과정에서 각각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상호 협력하여야만 가능하다.

2. 승-승(Win-Win)하는 합의안 제시

언론중재절차에서 신청인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아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가 합의한 사건,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 기타 처리결과 중에서 정정 또는 반론 등이 보도된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²⁾

이러한 피해구제사례에서 최종적인 분쟁해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신청인이 신속하고 간이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 일부를 포기하고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 신청인 입장에서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권리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포기한 권리에 갈음하여 다른 내용으로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정신청을 한 사회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언론사로서는 사실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언론보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으면서 분쟁이나 책임을 면하는 경우²³⁾로 나누어 생각

19) 박정호(2006), 앞의 발표.

20)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다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고(언론중재법 제19조 제2항),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21) 언론중재법 제19조 제5항.

22)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가 합의한 사건,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 기타 처리결과 중에서 정정 또는 반론 등이 보도된 사건의 경우, 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해구제율을 산출하였는데, 2005년 1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조정신청사건은 모두 883건이었고 그 중 530건은 신청인이 신청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신청인의 피해구제율은 62.4%라고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2005 연간보고서' 30면 이하 참조.

23) 정정이나 반론청구사건의 경우 형식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보도를 통해 분쟁대상 보도에서 잘못 전달된 내용을 사실상 바로 잡거나, 신청인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 또는 보도, 신문의 오피니언란이나 독자투고란에 신청인의 글을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또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당한 신용과 같은 영업상의 이익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기회를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해 볼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승-승하는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속이나 경제 등을 이유로, 특히 언론분쟁의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의 대가로 사실상 법이 보장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절차로 될 위험성이 높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언론보도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구제조치가 매우 중요하며 언론중재절차를 이용하였던 신청인들 중 상당부분이 신속한 피해구제, 즉 시간절약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정신청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²⁴⁾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즉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신청인들로서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위험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중재부로서는 조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분쟁의 실체와 신청인의 요구를 파악한 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효성 있는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진정한 선택권의 보장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경우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구제수단은 그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한데, 언론중재절차에서

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21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

언론보도의 영향력이나 위력은 매우 강력한 반면 법원이 잘못된 언론피해에 대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로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보다는 정정이나 반론,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구제를 선호하게 된다.

언론조정사건에서 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²⁵⁾ 신청인이 청구한 내용과 조정내용 등을 비교해 보면, 신청인의 청구내용이 모두 수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구한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게 되거나 정정보도를 구하였으나 반론보도로 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경우 등이 대부분²⁶⁾이다. 또 신청인의 청구내용이 모두 인용된 경우에도 신청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상 언론분쟁과 관련된 신청인의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언론사와 그 관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고소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보도피해의 특성상 신속한 구제, 정정이나 반론 등 언론의 보도를 통한 구제가 더 실효적인데 언론사와의 합의가 없으면 언론보도를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언론사와의 합의 도출을 위해서 신청인이 양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은 당사자 간의 합

24) 2003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연구, p. 65, p. 88; 2005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연구 p. 53.

25)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의 확정, 기타 처리결과 중에서 현실적으로 정정 또는 반론 등이 보도된 경우를 말한다.

26) 신청인의 신청 중 일부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하기로 한다.

의를 전제하며, 이를 위해서 당사자 쌍방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속하게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언론중재절차에서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가능한 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법률관계, 즉 신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중재부의 판단은 예상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최대한 근접하여야만 한다.

중재부는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당사자들에게 절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분쟁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기초로 하되, 조정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의하게 되는 경우 예상되는 판결내용과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절차의 진행, 특히 소요시간, 비용, 입증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함께 설명하여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설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재부는 특히 신청인이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를 받기 위해 너무 많은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에 관련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4.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합의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추후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둠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기존에 인정되던 정정·반론보도만으로는 구제되지 못하는 피해를 좀 더 손쉽게 손해배

상의 형태로 보상하게 하고, 절차적으로는 언론중재 절차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모든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 언론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한 대부분 사건의 조정과정에 있어, 언론사에 대하여는 정정·반론보도에 응하도록 하고, 반면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정정·반론보도를 수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향후 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기자나 편집업무담당자와 같이 그 보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응하도록 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 경우 신청인이 향후 언론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조정기일조서 또는 조정합의서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05년까지의 손해배상 관련 청구 사건의 처리현황, 특히 손해배상과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가 병합된 정정·반론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합의 성립율은 48.6%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사건 자체에 있어서 합의가 성립된 것은 0.9%,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더라도 2.8%, 합계 3.7%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합의가 성립된 나머지 경우, 즉 언론사가 병합사건인 정정이나 반론보도사건에서 이를 수용하거나 후속보도 등을 하고 그 결과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한 것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에 정정이나 반론, 또는 다른 형태의 합의(후속보도나 오피니언란에 신청인 기고 게재 등)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의 경우에는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된 반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에는 이미 신청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의 합의가 성립되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 시행을 앞두고, 손해배상까지도 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삼은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심리에는 실체법인 민법상의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사소송법의 기본구조 및 소송의 실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법률적인 내용'을 '언론에 관한' 사건으로 특화한 중재위원회에 맡김으로써 앞으로 중재위원회의 실무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과제인 까닭에 이에 관한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자칫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조정에 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부분만을 불성립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는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마무리 짓도록 분리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라는 우려²⁷⁾도 있었다. 그러나 2005년 까지의 운영결과에 의하면 언론중재절차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대체로 정정·반론보도청구의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예방적인 기능 또

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서 배상을 명하는 손해액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도 그러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 언론중재절차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를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고유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정·반론보도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며, 정정·반론보도로 구제되지 않는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의 과다는 차치하더라도 분쟁대상 보도가 있는 후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액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설명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라도 언론중재절차 내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IV. 독립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언론중재절차

1.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로 법률과 언론 전문가로서 일정한 자격²⁸⁾을 갖춘 자중에서 문화관광부

27) 양삼승(2005). 『중재절차의 변화와 효과적인 운영방안』, 2005 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논문.

28)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자,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

장관이 위촉한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²⁹⁾ 중재위원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고³⁰⁾ 형법 등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³¹⁾

언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³²⁾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관과 같이 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³³⁾

언론중재위원회를 행정부 산하 조정위원회로 보아 언론중재절차를 행정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의한 행정형 ADR로 이해하는 견해³⁴⁾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구성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언론중재위원회를 행정부 소속 기관의 하나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특별법에 근거한 여러 조정위원회를 행정부 산하 소속위원회로 파악하는 위 견해는 이러한 행정형 ADR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법원이 아닌 행정부가 분쟁해결의 주체가 되어 권력분립주의를 왜곡할 여지가 있으며, 그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 분쟁해결의 실효성

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내지 권력분립주의를 중시할 것인가가 문제된다고 한다. 특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해석론적 측면에서 행정부 산하 각종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기관력을 배제하고 집행력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입법론적 측면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아닌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즉 계약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³⁵⁾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이므로 언론중재절차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2. 중재위원 상호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법률전문가와 언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중재부의 장은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당사자 일방의 승패로만 결정하는 재판과 달리 각종 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에 있어서는 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합의안에 의한 분쟁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각종 조정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특히 변호사나 법관 등 실무가가 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³⁶⁾도 있다.

29) 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 제3항.

30) 언론중재법 제8조 제1항.

31) 언론중재법 제13조.

32) 언론중재법 제9조 제1항.

33) 언론중재법 제10조.

34) 강수미(2006).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발표내용.

35) 강수미(2006), 앞의 발표내용.

3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토론내용.

그러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증거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정확한 법률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의 관여는 필수적이며 조정결과에 대하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언론중재절차에 있어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중재부가 제시한 조정안의 내용이 판결에 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언론조정사건의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언론전문가가 조정심리에 관여하여 언론보도의 어려움과 한계, 언론종사자의 애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론사를 설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승패가 아닌 효율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현재와 같이 법률전문가와 언론전문가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언론중재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언론분쟁을 대상으로 한 전문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언론중재절차

1. 언론분쟁의 특성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언론보도는 보도 자체만으로도 보도에 접한 모든 사람이 그 진실성을 신뢰하며, 보도 즉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매우 강력하며, 이에 비례해서 진실에 반하거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특성상 언론보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손해배상에 구제 외에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의한 정정보다나 반론보도에 의한 구제가 중요하다.

2. 신속한 조정처리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구제 수단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추후보도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정은 신청접수일부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재신청 접수일부부터 21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³⁷⁾

이와 같은 조정처리기간은 충실한 심리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신속한 피해구제가 중요한 언론분쟁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70%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언론중재절차를 선택하도록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VI. 결 론

1. 이용자들의 언론중재절차에 대한 평가

2005년 1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조정신청사건은 모두 883건³⁸⁾이었는데, 그 중 530건은 신청인이 신청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신청인의 피

37) 언론중재법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

38) 언론중재위원회 2005 연간 보고서.

해구제율³⁹⁾은 62.4%에 이르고 있어 언론분쟁의 상당 부분이 언론중재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가 2004. 7.부터 2005. 9.까지 언론중재절차를 이용했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모두 언론중재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언론보도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다시 이용하겠다는 신청인이 75.2%, 다른 사람에게도 언론중재위원회를 추천하겠다는 신청인이 87.3%로 대부분의 신청인이 언론중재절차를 통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의 58.3%가 신청인의 언론피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중재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언론중재절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언론중재절차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로서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 즉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여야만 조정이라는 형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조정·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를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당사자가 포기한 권리의 일부가 다른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여 적정한 판결에서 인정받을 권리에 수렴하는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9) 신청인의 피해구제율은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가 합의한 사건,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 기타 처리결과 중에서 정정 또는 반론 등이 보도된 사건의 경우, 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산출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2005 연간보고서’ 30면 이하 참조.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석 희 태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경기대 법대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21일 경기 수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석희태 위원(경기 중재위원, 경기대 법대 교수)이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경기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근 위원(변호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언론피해 조정·중재제도의 기능

언론의 자유·언론의 사명과 국익·공익·사익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영원한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민사법·형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으로 약칭함) 등의 현행법이 고안해서 설정해 놓은 여러 충돌 해결방안들은 바로 이러한 난제에 대한 깊은 배려의 소산이 아닌가 한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에 관한 조정과 중재, 시정권고 결정이라는 제도는 사법부에 의한 전통적인 소송절차제도에 비해 상당한 특징과 장점을 지닌 것으로서,

매우 성과 있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래에서 요약적으로 열거되는 이 제도의 특징 내지 장점¹⁾은, 언론중재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지지하고 제고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① 공정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는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결 합의에 의하여 결론이 내려지므로 판단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신속성

1) 관점에 따라서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인식되는 요소도 있음.

주제논문

조정 및 중재가 당사자의 신청일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향 내지 협조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분쟁이 결말지어 질 수 있다.

③ 해결방안의 다양성(합리성)

분쟁해결의 방안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적절한 정보도·반론보도 등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구체적 상황에 적응하는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

④ 경제성

조정신청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그 액수는 소송비용에 비하면 현저히 저렴할 것이므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전문성

소송에서 법관의 전문성을 의심하기는 곤란하겠는데, 언론 조정·중재 절차는 법관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참여하여 합의제로 운영하므로 더 높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⑥ 화해성

조정절차에서 중재위원회는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

· 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권유하게 되는데, 이는 소송 절차에서와 같은 단순한 직권적·일방적 판단·평가에서보다 훨씬 유연한 당사자의 자세와 상호이해 및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결국 쌍방의 완전한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

⑦ 편의성

조정·중재신청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조정과정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방식보다 더욱 편리하다.

⑧ 비공개성

조정·중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비밀과 명예를 보전하는 방법이 된다.

2. 언론중재 관련법의 연혁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사실은 '반론보도청구권')이 도입되었으며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5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며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통합되었다.

3.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언론의 자유와 책무의 명확화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언론중재법에 명정되어 있으며, 특히 인격권(사망자의 인격권 포함) 보호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2) 적용대상 범위의 다양화

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뿐 아니라 인터넷 신문으로까지 다양화하고 있다.

(3) 자율적 예방활동의 강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4)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등 보장

언론피해 조정·중재 등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그 국가·사회적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독립 설치한다.

(5) 피해구제 절차(형식)의 다양화

언론피해구제의 형식인 절차가 언론사에 대한 직접 청구 절차와 더불어 조정·중재·소송·시정권고로 다양화되어 있다.

① 조정

조정은 중재부에서 중재위원이 쌍방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자율 평가와 의사결단을 위해 조언하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스스로 피해구제방안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절차는 피해자 또는 언론사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조정결과 합의, 합의 간주, 이의 없는 직권조정결정이 성립하면,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② 중재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미리 합의하여 중재부가 정하는 중구적 해결방안에 복종하기로 하고, 그 방안 제시 즉, 중재를 중재부에 신청한 경우, 중재부가 행하는 분쟁해결 절차이다. 중재는 당사자의 사전합의에 기초를 두는 것인 만큼, 그 결론은 강제력을 갖는다. 또한 이 절차는 당연히 단심제로 된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③ 소송

피해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법원에 소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한다. 그리고 이 소송은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고의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한편 피해자는 법

주제논문

원에 손해배상, 인격권 침해의 정지 및 침해예방, 인격권 침해 관련물의 폐기 등을 소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법원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소구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행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

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문제의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 권고의 절차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개시된다. 본법의 이 규정은 중재위원회 자신의 직권적 결정에 의해서도 심의 개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 피해구제 방안(내용)의 다양화

① 정정보도

정정보도는 언론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음, 즉 허위인 경우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도록 고쳐서 다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의 이 요건 입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해자'(언론사에 대하여는 청구인, 중재위에 대해서는 신청인, 소송상 법원에 대해서는 원고로 지칭됨)는 언론사에 대하여 먼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언론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 또는

언론사에 대한 청구없이 바로 정정보도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반론보도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반론보도청구에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입증이 필요없다. 반론보도와 관련한 청구·신청·제소에 관해서도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추후보도

추후보도는 언론에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되었으나, 그 후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그와 같은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결과 사실을 후속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후속 보도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후보도와 관련한 청구·신청·제소에 관해서도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30조 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에 대하여 중재위원

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18조 2항, 제24조 1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2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손해배상청구에는, 당연하지만 일반론에서와 같이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요구된다(언론중재법 제30조 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손해배상청구는 정정보도청구 등과 별도로 또는 병합하여 행할 수 있다. 법원은 언론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는데, 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인격권 침해 정지 및 침해예방, 관련물 폐기

언론의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고 권리침해의 우려가 명백한 자에게 침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기타 필요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⑥ 명예회복처분

명예회복처분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사과광고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용태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이를 재판을 통해 명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1조, 민법 제764조). 이러한 처분 중 정정보도 방식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⑦ 시정권고

시정권고는 언론보도 내용이 옳지 못한 것 혹은 잘못된 것, 즉 국익·공익·사익을 침해한 것을 심의하여 고쳐 바로잡을 것, 즉 시정할 것을 권함을 말한다. 심의결과와 권고처분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는 말 그대로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어떤 강제성도 갖지 않는 처분이다. 그러므로 시정 여부는 당해 언론사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다.

4. 현행법의 쟁점

(1) 타당성 및 합헌성 논쟁

현행법은 그 제정예고 내지 법안 공표 당시부터 매우 격렬한 시비논쟁의 표적이 되었다. 제도의 다양한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소에 관한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내부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논쟁은 급기야 언론사 측의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발전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 관건

① 무과실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책임의 시비

언론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즉 허위보도 내지 오보인 경우에 피해자는 그 정정보도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

주제논문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언론사의 고의·과실과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른바 「무과실 오보」에 대해 언론사가 정정보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언론관과 형평관념 및 인권의식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ㄱ. 언론관의 문제 : 언론매체에 대한 존재인식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언론의 사명」에 중점을 두는가의 문제이다.

ㄴ. 형평성의 문제 : 언론보도에 의해 산출되는 사회적 손익의 계산에서 언제나 이익이 손실을 압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론의 존재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익의 최대화와 손실의 최소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진실에 반하는 보도의 경우는 언론의 존재의의마저 의심하게 할 만큼 그 타산이 심각해지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즉, 오보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 당사자의 불이익과 사회적 불이익의 크기, 오보를 통해 거두려고 의도했던 사회적 이익의 크기는 윤리적·정의관념적 평가를 떠나서도 깊이 교량해 봐야할 요소이며, 오보로 인한 결과적 이익의 중대성 인정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오보와 그 방치에 의해 야기되는 손실의 중대함(이익의 근소함)과 정정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중대함(손실의 근소함)을 각각 인정할 만하다고 본다.

ㄷ. 인권의식의 문제 : 언론의 기능, 사회적 손

익의 교량을 떠나 피해 당사자 개인의 관점에 입각할 때, 오보와 그 방치가 초래할 인권침해는 심각해질 수 있다. 개인의 헌법적 기본 인권으로서의 명예권·행복추구권은 언론에 의해서도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소별·관점별 판단을 종합할 때, 결론은 정정보도의 당위적 필요성이 언론사의 유책성 위법성 유무와는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②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중재 권한의 시비

불법행위 성립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범위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능력이 중재부에 있을까라는 문제는 그 논의를 차치하고, 전반적으로 중재위원회제도의 본질과 장점에 비추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이다.

즉, 손해배상 여부와 그 액수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고, 절차상 그 결정이 신속·경제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배상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위로 내지 사과의 방편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제도는 언론사와 피해당사자 양측에게 공히 불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시정권고권한의 시비

시정권고 제도의 당부는 본질론적 허용성 유무, 실제적 이익의 유무, 입법방식의 적법타당성 유무(법률유보, 행정법규위임의 한계 문제) 등에 의

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언론피해 조정·중재 제도는 언론기능의 정상화, 언론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나아가 화합적, 건설적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도모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이유는 지난 25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근거로 살펴 볼 때 충분히 살려졌다고 평가한다. 다만 그 역할을 더욱 크게 하고 국가사회의 유익한 제도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높이기 위한 성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라 사료한다.

위원회는 공익·사익과 사회가치를 수호하는 시대 양식의 대변자라는 책무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그 취지구현에 미흡한 부분의 조속한 개선, 언론중재 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심판과 훈육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추구하는 공공서비스기관이라는 자기정체성 인식을 더욱 새로이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심판이 아니라 화해교섭의 전문가로서 더욱 진지한 사명감과 열린 지성으로서 직무에 임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 중재부의 조정업무 공간도 상호이해와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의 장이므로 그 분위기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토 론

사 회 조 정 근
변 호 사

홍정표(경인일보 사회부장) :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느낀 점은 중재위원들이 언론사를 강자, 신청인을 약자로 인식하고 언론사에 무조건적 양보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언론사를 피고인 다루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몇몇 위원이 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커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상제고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제도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송경호(인천일보 제2사회부장) :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언론 소비자의 권익은 강화된 반면 언론 생산자는 그만큼 책임이 커지고 부담도 커졌다.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중재위원회의 책임도 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 론

다. 특히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즉 필터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다.

박흥식(수원시 공보관) :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법조문 구성을 살펴보면 기능이 강화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즉 법조항 제21조는 조정불성립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조항 제22조는 조정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결정은 위원회의 적극적 결정은, 조정불성립결정은 위원회의 소극적 결정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언론으로 인한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법조문도 조정결정을 규정한 조항이 불성립결정 조항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민용(경기일보 부국장) :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명칭에 ‘피해구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언론사를 범죄 집단시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 새 법 시행 이후 조정심리 때문에 중재위원회에 출석하면 위원들로부터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라는 강한 요구를 받는다. 조정신청 건수의 증가는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이란 측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언론의 통로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도가 되면 무조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겠다는 억지주장을 거를 수 있는 제어기제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

들어야 한다.

박숙현(용인신문 발행인) : 언론중재법은 대상매체를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마구잡이로 신문 기사를 퍼 나르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오보인 경우 그 파장은 원 보도에 비해 막대함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정충모(경기신문 발행인) : 조선, 동아 등의 언론이 위헌심사를 제기한 사안 가운데 시정권고조항은 그 법 취지조차 의심스러운 독소적인 조항이다. 위원회는 권고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정권고의 절차와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32조의 각항을 들여다보면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 신청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

고영규(경기일보 사회부 기자) :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일선 취재현장의 기자들로부터 취재시 위축감을 많이 느낀다는 항변을 자주 듣는다. 새 언론중재법이 그만큼 취재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도 한 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결정과 관련해 과연 위원회는 민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하여 이를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결정시 반영하는지 궁금하다.

성폭력 보도와 인격권

김 덕 모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머리말

최근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현재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 중 하나다. 이에 우리 언론은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의 성폭력 보도가 선정적으로 흐르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흥밋거리로 다루거나 선정적으로 접근한 보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근절 방안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하기보다는 성폭력 범죄의 양상이나 당시 상황 등만을 상

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담아내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호기심을 이끌어 내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치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의 주장을 수긍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는 보도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보도 과정에서 기사 작성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나 주변 인물의 신상이 필요 이상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발생해 피해

자와 그 가족을 이중의 고통으로 내모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고 동일 사안의 재발을 막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인권을 또 한 번 철저히 짓밟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성폭력 보도와 인격권'에서는 우리 언론의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보도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침해되는 인격권의 유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인은 무

엇이며, 성폭력 범죄 보도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하는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언론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며 산다. 지난해 8월 육영재단 국토 순례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올해 발생했던 초등학교 성폭행 살해 사건, 전국을 무대로 자행된 연쇄 성폭행 및 살인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교정시설에서의 성추행 사건, 국회의원들의 성추행 사건 등 성범죄 관련 보도가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한 나머지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희생자인 피해자의 인권 측면의 보도가 소홀하고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선정적으로 묘사되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언론보도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2중의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성범죄 예방 대안 제시 보다는
선정적 보도 등으로
2중의 피해를 안긴다는 지적 있어**

모든 뉴스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는 그 이상으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 문제가 걸려 있는 사건인데다가 폭행 내용의 구체적 묘사가 ‘포르노그래피’화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언론이 성과 관련된 성범죄 관련 기사를 어떻게 취재, 보도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자.

(1)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성범죄 보도를 묘사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심어주고 피해자를 선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보도

즉 성범죄 기사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 문제가 여럿 지적됐다. 성기를 “은밀한 곳”, “치부” 등으로 표현하거나 “성고문”, “성학대”, “성노리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고 성폭력 피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주입한다는 지적이다. “10대 소녀”, “여중생”, “여고생” 등의 용어로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을 강조하는 것도,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선정적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2) 성폭력 규정을 회피하거나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성인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청소년 성폭력

보도의 전형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육영재단 국토 순례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조선일보>는 『“성희롱? 딸들이 애라도 뵈냐”』(2005년 8월 6일자)라는 제목과 ‘육영재단 박근영 이사장 발언 파문 / 국토 순례단 간부 성희롱 의혹 관련’이라는 부제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우회는 “정치인들의 공방에서 사용되는 ‘의혹’, ‘파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박 이사장의 발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용어를 사용할 경우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없는 사건으로 재구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피해자의 주체성을 왜곡하는 보도

성폭력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몰래 가해자와 합의한 것을 거부하고 고소를 택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도 언론의 가부장적인 시각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빠는 합의해줬지만...“난 절대 용서 못해” 성폭행 피해 여중생』(조선일보 2005년 3월 4일자)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해 직접 고소를 할 수 있

는 권리가 있음에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해’라고 표현해, 아빠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성숙한 판단으로, 피해자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미성숙한 판단으로 간주하는 인상을 준다(정하경주, 2006).

(4) 선정적 묘사와 피해자 고통 외면한 흥미위주 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묘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고생, 조폭 영화 찍듯...』(조선일보 2005년 4월 22일자) 기사는 가해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초래했는가 보다는 ‘치부를 쑤셔대고’, ‘별 거숭이’, ‘비명을 삼켜야했다’ 등의 자극적이고 구체적 표현을 남발해, 가해 학생들이 저지른 폭력을 자극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바바리맨’ 딱 걸렸어』(한겨레 2005년 6월 25일자) 등의 일부 보도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거나 사건 자체를 흥밋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시각적 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행위를 ‘음란행위’, ‘변태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성기노출을 성

폭력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만 다루었다는 것이다(정하경주, 2006).

(5) 본말 전도에 의한 왜곡보도

‘진실은 알 수 없다’ 식으로 성폭력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나,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서술방식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히 그간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부분이다.

지난해 성폭행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국토순례단 보도, 유명농구선수 성폭행 사건 보도 사례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 국토순례단 보도

「정모(56) 단장은 “부적절한 총대장을 선임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식사나 잠자리 등은 부족한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어느 국토순례단보다 나았다”고 말했다. 총대장직에서 물러난 황모(43) 씨는 성희롱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총대

장직을 맡았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05년 8월 2일자). : 가해자 측의 인터뷰를 강조한 기사쓰기로 사건의 본말을 희석하고 있다.

- 유명 농구선수 성폭행 사건 보도

「권 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A선수 팬클럽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 12월 “2003년 7월 승용차 뒤쪽 좌석에서 A선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A선수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선수는 “서로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중앙일보 2005년 7월 27일자).

: 이러한 기사들이 ‘억울하다’,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다’와 같은 가해자의 말로 끝맺고 있어 마치 “본질 자체가 성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가해자의 입장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앙일보>와 같은 사건을 다룬 아래 <서울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피해자 측 변호사의 요구사항과 문제제기

로 결론지음으로써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검증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분석이 있었다.

「유명 프로농구 선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불러 각종 상황을 재연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폭

성폭력 피해자들이 언론의 부주의로 인해 격지 않아도 될 2차 폭력에 시달리는 상황 반성해야

행 사건에서 고소인을 현장검증에 참여시키거나 피의자와 대질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좀체 실시되지 않는다. (중략) B양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강지원(전 청소년보호위원장) 변호사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성폭행이나 성행위 장면을 일일이 직접 재연토록 한 것은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수사검사 교체 및 문책을 요구했다(서울신문 2005년 7월 27일자).

(6) 사건의 원인을 사회분위기나 피해 여성 등에 돌리는 듯한 보도

대전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연쇄 강간범 속칭 ‘발바리 사건’의 원인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주장을 인터뷰하여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마치 그의 범행이 모멸감을 준 여성취객이나 열등감의 표출 등으로 묘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일보>는 『택시 운전 때 여성취객의 모멸이 성폭행, 연쇄범행 불러』(2006년 1월 20일자 보도)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아예 이 씨의 과립치한 범행이 “모멸감을 준 여성취객”탓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일보>는 한 술 더 떠 『“억눌린 열등감 폭발 ... 죄의식 상실”- 심리학자가 본 ‘발바리’』라는 제하의 기사(2006년 1월 21일자 보도)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여성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거나 낮선 사람을 쉽게 집안으로 들어

오게 하는 등 범행기회를 제공한 것도 사건을 유발시킨 원인”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한 분풀이’, ‘범인의 열등감’, ‘약한 자에 대한 공격성’ 등을 지적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말은 실명으로 인용했으면 서도 ‘여성들이 범행기회를 제공했다’는 말만 유독 ‘전문가들’이라고 적고 있다.

(7) 언론 보도에 의한 신원 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

2004년 12월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던 ‘밀양 사건’ 관련 언론보도 사례가 대표적이다. 밀양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언론의 부주의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2차 폭력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을 요한다. 밀양 사건 보도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는 피해자 신원 노출의 문제였다. 언론이 피해자와 직접 인터뷰를 해야만 뉴스 가치가 있다는 언론계의 오랜 관행 때문에 무리한 인터뷰가 이어지고,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2중, 3중

의 고통을 겪는 것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일부 언론들이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원을 직·간접으로 노출함으로써 2중의 고통을 안겨 주었다. ‘00광역시’, ‘00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O양 자매’로 소개하고, 뒷모습을 보여 주는가 하면 음성 변조없이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이들 피해 학생들은 언론 보도 후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일가족은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권수현, 2006).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피해자의 주거지, 나이, 성(姓) 등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8) 인권 문제인 성폭력 문제를 성윤리와 도덕 문제로 다루어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

성폭행 문제를 ‘성문란’ 내지는 ‘성윤리 의식의 부재’로 몰고 나감으로써 성폭행 문제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폭력의 결과를 낙태나 자살 같은 사회문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폭력이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성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도 문제이지만 최근 ‘모 국회의원 성추행 몰래카메라’ 사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사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몰래카메라에 의해 만들어진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단 유통되거나 배포됨으로써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Ⅲ. 성폭력 보도 개선방안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 해 동안

하루 39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특성상 신고된 건수가 그 정도이니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추정하면 대략 연간 25만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자체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받는 2차 피해나 세심하지 않은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 등 인격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4년 40여 명의 고등학생에 의해 무려 1년 가량이나 성폭행을 당했던 밀양중학생 사건의 2차 피해와 관련, 언론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인권보호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근본원인 분석이나 대안마련에는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여성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성폭력 사건을 단순히 피해자의 심경을 듣고 성폭력 피해 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단순하고 표피적인 보도에 그친다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우리 언론에 성폭력 보도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성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악행이라는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성폭력보도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해

**성범죄 관련 내용을 다루는 언론은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취재·보도에 임해야**

볼 수 있다.

첫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언론의 성폭력 보도 내지는 성범죄 보도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치 언론이 선거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지향하는 것처럼 성폭력 관련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피해자의 신분 노출이나 초상권 침해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도내용과 방식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마치 수용자 주권시대에 미디어 액세스권이 부여되는 것처럼 피해자가 성폭력 보도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보도 과정에서의 권리'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도 과정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보도과정에서의 권리

- *사건 보도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인터뷰 전, 보도 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제기할 권리.
- *보도과정에서 무기력하고 나약한 피해자로 보여지지 않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

- 을 가진 생존자로 보여 질 권리.
- *남성중심적 통념에 근거한 인터뷰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이나 멘트로 대상화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권리.
- *성폭력 사건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받고 존중받을 권리.
- *단지 취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도내용과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 *취재와 인터뷰에 응할 권리.
-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권리.
- *동의없이 인터뷰 당하지 않을 권리.
- *인터뷰는 동의하였으나 언론보도를 거절할 권리.
-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 비교되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도과정 가이드

- *피해자의 이름, 얼굴, 직업, 주거지역 등 피해자임을 짐작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영상 사용에 주의하기.
- *직접적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드러 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피해자가 드러날 요소들이 있는지 살피기.
-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주변

- 인의 인격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영상을 보도하지 않기.
- *성폭력 범죄를 취재함에 있어 피해자의 경황없음을 이용하여 사전 동의없이 녹음 또는 촬영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제3자로서의 객관적인 입장이란 남성중심적, 가해자 중심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기.
- *성폭력 범죄를 피해자, 가해자간의 사적인 일이 아닌 사회구조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 접근하여 취재하기.
- *가해행위에 대한 지나친 묘사로 피해자를 대상화시키지 않기.
- *인터뷰를 할 때에는 어떤 내용으로 취재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 구하기.
- *방송 전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알리기.
- *사건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문제를 함께 다루기.
- *이미 취재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보도를 원치 않을 경우 기사화하지 않기.
- *인터뷰의 편집은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피해자의 답변을 왜곡 보도하지 않기.
- *방송 전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알리기.
- 둘째, 취재기자들의 전문화 교

육 강화이다. 취재기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함께 성폭력 관련 가해자들의 심리, 관련법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취재방식 등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남성중심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언론사내의 조직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즉 여성 인력들의 언론계 진출이 확대되어야 하고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이 요청된다.

넷째,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재기구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언론보도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보도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범죄와 관련된 통신 기사에는 '요주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특히 몰래카메라에 의한 성관련 동영상이나 악성 댓글, 익명성에 의존한 각종 음해성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 엄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

성이 있다.

어쩌면 성범죄를 다루는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 전반의 성의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언론보도의 역할은 중대하다고 하겠다. 언론은 보도태도에 따라 상수도 될 수 있고 하수도도 될 수 있는데 독자의 건강을 위해서 언론은 마실 수 있는 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상수도가 되어야 할 언론이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하수만 쏟아내서는 안 될 것이며, 성범죄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도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에 임해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

〈참고문헌〉

김선남. 『사회문제 아닌 개인적 성윤리로 규정』. 「신문과 방송」. 1996. 9.
 권수현. 『시청률 경쟁에 가린 피해자 인권』. 「신문과 방송」. 2001. 1.
 박용진. 『성적 표현의 잠재적 유해성에 관한 최신연구』. 「방송영상진흥원」. 2005. 10.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 경인문화사. 1998.
 정하경주. 『불안감만 부추기는 성폭력 보도』. 「신문과 방송」. 2006. 4.
 지광준. 『성범죄』. 경인문화사. 1998.
 지광준. 『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엔비. 2001.
 최진봉. 『미디어 성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프로그램텍스트」 6호. 2002.
 동아일보. 『성범죄 보도와 인권』. 독

자인권위원회 좌담. 2006. 2. 23.
 미디어 오늘. 『성범죄 보도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2006. 2. 23.
 미디어 오늘. 『기자들, 성폭력 보도 앞서 교육부터 받아야』. 2006. 3. 1.
 세계일보. 『청소년 성폭력 보도 신중해야』. 2006. 1. 25.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한국언론재단
<http://www.kpf.or.kr/>
<http://www.kinds.or.kr/>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노컷뉴스, 쿠키 등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 EBS.

중재위원회의 또 다른 기능, 감정의 해우소

권혁남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살펴보던 노벨의 얼굴은 파랗게 질리고 만다. 자신이 나이 들어 은퇴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자신의 부고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이다. 멀쩡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도 억울한데, 부고기사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노벨이라는 대(大)기업가는 살아생전에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하여 커다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니 더욱 기가 막힐 일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난리를 폼을 것이다. 그러나 노벨은 달랐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서 자신에 대해 한참 동안을 반성하더니 마침내 오늘날의 노벨상 창설을 결심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은 산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막강하며 그 힘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언론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자유는 아닌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여타의 인격권이나 기본권과 상충될 때 그 무게를 비교衡量하여 때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 언론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경우가 그렇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은 언론사가 자신에 대해 거짓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정보를 보도하였다 할지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1964년의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설리반 사건이란 미국의 남부 앨라배마에서 시민운동 데모가 있었을 때 주 관리가 흑인들을 물리적으로 학대하자 『뉴욕 타임스』가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고 이에 주 관리가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인의 명예훼손은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죄"라고 선고하였다.

여기서 실질적인 악의란 관리의 평판을 손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무시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사실 재판정에서 뉴스보도가 권력 남용을 폭로할 목적이 아니라 악의에 의해 동기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설리반 사건 이후 40여 년 동안 어떤 정부 관리도 언론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다.

공인이야 그렇다 치자. 그러나 일반인들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더욱더 황당하고 막막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본 사람 약 3명 중 2명(66.7%)은 우선적으로 언론사에 항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힘없는 일반인들의 항의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005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의 항의 또는 반론 요구에 대해 언론사의 44.6%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27.2%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응답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는 겨우 6.5%로 나타나 언론사에 항의한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자신의 항의, 반론에 대해 언론사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하였다.

언론사로부터 목살을 당한 일반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쌓인 채 심각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그리고 중재위원회에서 이겨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가본들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해 망설이게 된다.

지난해 전북중재부로 들어 온 사례가 그랬다. 신청인의 사연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의 말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이 병원의 여직원과 눈이 맞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딴 살림을 차려놓고 이혼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신청인인 부인이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신문사 기자를 찾아가 "부인이 딴 남자와 바람이 나 자신의 재산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사실무근의 고발장을 보여주고 이를 기사화하도록 부탁했다. 기자는 사실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남편의 고발장만을 가지고 보도했고 신청인은 동네와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등 커다란 피해를 보고 말았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자식의 앞날을 위해 이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론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것조차 주저하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야 중재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결국 중재부에서는 해당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신도록 조정 결과를 내놓았지만 이 정정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실추된 명예가 과연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필자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중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힘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갖기도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중재위원회를 찾는 신청인들 중 상당수는 분노감, 배신감, 불안감, 때로는 수치심을 갖는다. 신청인들은 가슴속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해당 언론사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모두 토해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중재위원들이 이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신청인들의 감정도 많이 누그러지게 마련인데, 이 때 피신청인이 사과를 하면 신청인의 분노는 더욱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사회적으로 바쁜 생활을 하는 중재위원들이 빨리 조정을 끝내고 돌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심을 발휘해준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억울하게 당한 힘없는 일반인들에게 아주 좋은 감정의 해우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조정뿐만 아니라 심적 조정까지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정이 아니겠는가? □

**미국 언론의 소송 승소율 상승
2005년도 배상액은 과거 20년보다 낮아져**

- 미 MLRC, 연차보고서 통해 발표 -

미국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소송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보도기관의 손해배상금액은 과거 20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손해배상금액에서 차지하는 징벌적 배상액의 비율도 과거 25년을 통틀어 최저인 3.5%로 나타났다고 미국 미디어법 자료센터(MLRC)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25년과 비교해서 지난 2005년의 소송 건수는 감소되었고 보도기관 측의 승소는 증가했다. 2005년의 보도기관 측 승소와 패소는 똑같이 각각 7건이었으며 배상액의 증가 경향도 주춤해졌다.

MLRC는 1980년부터 명예훼손소송 조사를 시작했다으며, 이번 보고서는 8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31건의 소송을 분석한 자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도기관의 승소율은 1980년대 36.3%, 90년대 40.2%,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은 53.8%로 점차 높아졌으며, 지난 25년간 전체를 보면 약 40.3%에 해당하는 214건에서 보도기관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소심에 한정하면, 80년대 이후 보도기관 측이 배상을 명령받은 것은 5건 중 1건 이하(18.7%)의 낮은 비율이다.

2005년의 배상액 평균은 36만 9,000달러(약 3억 7,000만 원)이나 보도기관이 패소한 7건의 배상액 평균은 7만 5,000달러(약 7,500만 원)다. 과거 25년간의 배상액 평균은 80년대의 150만 달러(약 15억 원)에서 90년대에는 500만 달러(약

50억 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10년간의 배상액 평균은 280만 달러(약 28억 원)였다. 평균액 상승의 요인은 다우·존스사에 대해 2억 2,270만 달러(약 2,300억 원)라는 고액의 배상청구가 인정된 데 있다.

과거 10년간의 손해배상 가운데 92.7%가 징벌적 배상이 아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나타났으며 80년대에는 징벌적 배상이 약 60%였다.

(『신문협회보』 2006년 4월 4일자) □

**외설장면 방영한 CBS에
최대 규모의 벌금 부과**

- 미 FCC -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3월 15일, 미국의 CBS 텔레비전과 관련 100개 이상의 계열국에 360만 달러(약 3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FCC는 CBS가 지난 2004년 12월에 방송한 범죄드라마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 등의 '외설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했기 때문이라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벌금 총액은 외설을 이유로 부과한 것으로는 최대 규모. FCC는 지난 2005년 1년간은 방송국에 대한 벌금명령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케빈 마틴 위원장 취임 이후 미디어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세는 명확하게 보여 왔다.

한편 FCC는 2004년 슈퍼볼 경기 중간 행사에서 인기가수 자넷 잭슨의 가슴 노출을 그대로 방영했다는 이유로, CBS 측에 총액 55만 달러(5억 5,000만 원)의 벌금 지불을 명령한 바 있다.

(『신문협회보』 2006년 4월 4일자) □

같은 법원 재판부가 「취재원 비닉」에 대한 상반된 판단 내려 논란

- 신문협회·민방련은 긴급 공동성명 통해 반발 -

미국의 건강식품회사가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촉탁증인신문에서, 일본의 관련 3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원에 관한 증언 거부의 당부(當否)를 둘러싸고, 도쿄 지방법원 민사 제39부는 「취재원 비닉(秘匿)」에 대해 언론사 별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에 취재원 비닉을 부정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본신문협회와 민간방송연맹이 지난 3월 17일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언론기관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소송은 1997년 10월 10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 조간과 교도(共同)통신, NHK 등이 미국 건강식품회사 일본법인의 소득 은폐가 미·일 양국세당국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되었다. 식품회사는 기사에 의해 신용이 실추되었으며 “일본 당국에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미 정부에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식품회사 소송의 촉탁증인신문에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교도 통신, NHK의 기자들 모두가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했다.

3개 법원의 판결과 신문협회·민방련의 긴급 공동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쿄 지법 민사 제39부는 지난 3월 14일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기자가 공무원 등으로부터 수비(守秘) 의무 위반이 되는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재원의 비닉은 인정될 수 없다”고 신문사의 질문 항목 태반에 대해 증언거부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촉탁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 21개 항목 중 ‘기사의 정보원은 누구인가’ 등 7개의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는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 직원의 어느 누가 기사의 정보원인가’ 등 14개의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재원이 민사소송법상의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기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취재에서 그 수비 의무에 저촉되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며, 그 경우 “취재원의 공개를 명령하면 그 이후 같은 취재원으로부터의 협력을 얻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예상되나, 그것은 형벌법령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판시했다.

▲ 이와는 반대로 도쿄 고법 제9민사부는 지난 3월 17일 식품회사 측의 신청을 각하한 니이가타 지법의 결정을 지지,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취재원에 관해 증언을 강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식품회사 측의 즉시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기관의 취재활동을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에 불가결한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보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적인 활동”이라고 인정하고, 취재원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비닉하기 위한 증언 거절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취재에 대해서는 1978년 5월의 최고재판소 결정을 답습했다.

▲ 한편 교도 통신사 기자의 취재원에 관한 증언 거부의 당부(當否)를 둘러싼 공판에서 도쿄 지방법원 민사 제39부는 요미우리 신문 기자의 경우와는 달리 증언 거부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취재원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증언 거절은 직접 취재원 자체를 묻는 질문에 한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취재원의 특정(特定)에 결부되는 질문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41건의 질문 가운데 취재원의 인원수 등을 신문한 10건에 대해서는 증언 거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도 통신 기자와 식품회사는 모두 즉시 항고를 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1978년의 외무성 비밀전문 입수를 둘러싼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기자가 공무원으로부터 수비(守秘) 의무위반이 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취재원의 비닉(秘匿)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相當)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신문협회 · 민방련 성명요지

취재와 보도의 손발을 묶는 결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결정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취재원(정보원)의 비닉」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할 저널리즘의 철칙이다. 숨겨진 사실·진실은 기자와 정보제공자간에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신뢰관계가 있음으로서 밝혀낼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을 기자 측에서 어기는 것은 정보제공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며 용기와 양식을 갖고 있는 정보제공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보도기관에 공권력에 대한 '취재·보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최저필요조건이다. 취재원 비닉을 부정하는 이번 결정은 1978년의 최고재판소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6년 3월 21일자, 5월 2일자)□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 판결

- 손해배상 및 공표 금지 가처분 판결 내려 -

재규어 포물러원(F1)팀의 전 대표였던 토니 퍼넬이 『비즈니스 F1』 잡지와 이 잡지의 편집장인 톰 루비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퍼넬은 『비즈니스 F1』이 자신이 기자를 매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직후, 잡지사와의 해당 편집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웠었다.

이번 사건의 담당 판사인 에이디 판사는 잡지사와 편집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퍼넬에게 손해배상 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에이디 판사는 『비즈니스 F1』 측이 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 없도록 해당 내용에 대한 공표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퍼넬의 변호인인 스틸스 법률사무소의 도미닉 크로슬리는 "에이디 판사는 『비즈니스 F1』에 보도된 주장들을 잡지사와 편집장이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퍼넬은 『비즈니스 F1』이 보도한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ress Gazette 2006년 3월 24일자) □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져야**

- 영국 법원 판결 -

영국 법원의 블랙번 판사는 자신의 사적인 기록을 기사에 인용한 것은 사생활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찰스 왕자가 ‘메일 온 선데이’(Mail on Sunday, 이하 Mo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담당 재판관인 블랙번 판사는 “찰스 왕자가 지난 1997년 7월, 영국의 홍콩반환 뒤 쓴 개인 저널의 일부분을 기사에 인용한 것은 찰스 왕자의 저작권과 사적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블랙번 판사는 MoS에서 입수한 찰스 왕자의 7개의 또 다른 저널들을 기사에 인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심의를 열어 MoS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상대로 개인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승리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블랙번 판사는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지난 1998년의 인권법령 중 두 가지 조항, 즉 8번 조항(사생활)과 10번 조항(표현의 자유)을 놓고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랙번 판사는 “피고인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소중히 여겨져야 하는 것은 10번 조항에 쓰여 있듯 매우 중요하며 현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역할이 중요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10

번 조항은 자유를 누리려면 그의 대한 책임을 저야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은밀하게 받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oS는 “찰스 왕자의 기록은 결코 ‘은밀하게 입수한 사적인 정보’가 아니”며 “왕자의 공적 생활을 다룬 내용이므로 대중의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MoS는 익명의 소스를 통해 “왕자의 사무실에서는 비밀로 여기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블랙번 판사는 “개인 기록 공개의 목적이 정치적 영향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개인 기록에 ‘사적인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고 해당 기록 수취인의 숫자(75명)는 해당 기록이 비밀로 남겨져야 함을 증명할 만큼 적은 인원”이라고 밝혔다. 또 블랙번 판사는 찰스 왕자의 기록이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MoS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행위나 위선적 행동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다른 7개의 기록 역시 찰스 왕자가 사적으로 남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랙번 판사는 “다른 7개의 기록이 보도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결 직후, MoS 측은 항소할 방침을 내비쳤고 다른 7개의 기록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S는 “왕자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가 하는 일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홍콩반환 후 쓴 기록 관련 항소심은 신문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다른 7개의 기록에 대한 재판에서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6년 3월 24일자) □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단체에 소속된 대안 공간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아트 인 컬처

종 재 부 : 서울제5종재부

접 수 일 : 2006. 1. 3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아트 인 컬처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호 148면
~155면)

내 용 : (전략)

양조위 : 한동안 ‘대안공간 작가군’이라고 라벨을
붙이다시피해서는 대안공간들끼리 돌러가면서 전시하
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안공간 작가군’과
대안공간들간의 집단적 사랑의 시기가 끝나고, 대안

공간들이 기업에 러브콜을 던지는 시기가 왔나 봐요.
□□와 △△△△의 염문설에 이어, ▲은 신한은행과,
◇◇◇◇는 현대백화점이랑 뭔가를 모색 중이라면서
요? 뭐 잘되면 좋지요.

장동건 :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대안공간 네트워
크에 이런 규약이 있대요. “대안공간에서 전시를 한
작가는 1년 안에 ‘대공네트워크’에 소속된 다른 대안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 규약이 말
뿐인 것 같아서 실제로 따져봤는데, 실제로도 그렇더
라고요. 물론 규약이 작동한 결과라기보다는 작가들
이 1년에 두 번이나 개인전을 여는 일 자체가 드물어
서 그렇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소위 ‘대안공
간 작가들’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떠나버린 마당에,
뒤늦게 합류한 젊은 작가들에게만 그런 규약을 들이
밀다니 불공정해요. 자기네들은 좋은 거 다 해놓고
말야. (중략)

하워드 스텐 : 전 대안공간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조직하곤 했던 친목단체 같은 집단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끼리끼리 놀고, 때 되면 그냥 모여서 전
시하고.

폴라 압들 : 할아버지 세대들의 ‘OO회’ 들은 회원
개념이라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피아가 명확히 나뉘
잖아요. 헛갈리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대안공간 작가
군은 그 경계선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게다가 전시

공간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도 여기저기서 먼저 타 내니 더욱 문제지요. 이젠 완전히 압력단체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중략)

데이비드 핫셀호프 : 전시홍보물에 보면 ‘후원: (주) △△△△산업개발’ 이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나저나, 갤러리는 작가 대접을 잘 해야죠. 오프닝에서 보니까 갤러리 측의 감독·지원이 부족한 덕분인지 작품 설치를 마치지 못한 작가도 있던군요. 화가 너무나 나머지 지옥불처럼 타오르던 모 작가의 눈빛.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류승범 : □□가 공적자금을 끌어다 쓰는 대안공간으로 남건, 상업화방으로 변신을 하건, 앞으로의 운영 목표와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중략)

홍록기 : ▲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 집행에 관련해 연간 결산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해본 적이 없어요. 기금을 꽤 받은 해에도 대관전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꽤 후안무치했다고나 할까요. 기금사용 내역은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중략)

고현정 : ◇◇◇◇는 운영위원회제가 좀 흔들리면서 이상해졌어요. 윤○○ 전 이사장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균형이 안 맞는 달까요. 모 큐레이터의 사직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죠. 이사장의 이름이 분명히 입구 유리문에 붙어있었는데, 하나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젠 싹 사라지고 없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월호 라운드 테이블면에 『불타는 라운드 테이블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안 공간 네트워크(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에 이런 규약이 있대요. ‘대안 공간에서 전시를 한 작가는 1년 안에 대공네트

워크에 소속된 다른 대안 공간에서 전시할 수 없다’(후략)”라고 적시하고 “대안 공간들이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던지는 시기가 왔나 봐요. (중략) 대안 공간 ‘▲’ 이 신한은행과 (후략)”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안 공간 네트워크에는 보도에서 언급된 규약이란 것 자체가 없고 정관에도 작가의 전시를 제약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안 공간 ‘▲’ 은 신한은행과 일체의 지원 요청이나 후원에 대한 활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1월호 라운드 테이블면에 『불타는 라운드 테이블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안 공간들이 ‘끼리끼리’ 모여 활동하고 압력단체화 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적시하고 대안 공간 네트워크 소속 □□가 제대로 감독 지원을 하지 못해 모 작가의 작품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못했으며 □□가 상업 갤러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안 공간 ‘▲’의 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예산 사용에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대안 공간 ‘프로젝트스페이스 ◇◇◇◇다방’의 현관문에 붙어 있던 이사진 명단이 별다른 설명 없이 철거돼 의문이며 ‘프로젝트스페이스 ◇◇◇◇다방’의 전 이사장에게 집중된 힘의 불균형에서 운영위원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큐레이터 사직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안 공간 네트워크 측은 국내 대안 공간들이 공적 기금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양산하는 압력단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대안 공간 ‘□□’에서 있었던 모 작가의 작품 설치 실패 사건은

작가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고 '□□'가 상업 갤러리를 지향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대안 공간 '▲'은 법인으로서의 회계기준에 맞춰 세무사로부터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안 공간 '프로젝트스페이스 ◇◇◇다방'의 현관문에 붙어 있던 이사진 명단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주인에 의해 철거된 것이며 '프로젝트스페이스 ◇◇◇다방'의 전 이사장에게 힘이 집중됐다는 보도는 오보이며 운영위원 제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권고 사직된 큐레이터의 경우는 해당 큐레이터의 중대 과오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2006년 1월호 라운드테이블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라는 기사 중 사단법인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대안공간 네트워크)와 그 회원에 관한 내용에서, 익명 대담자의 발언 형식을 빌어, 첫째 대안공간 네트워크는, 대안공간에서 전시한 작가의 1년 이내 재전시를 제한하는 규약이 있으며, 기금을 위한 압력단체로 변하는 것 같고, 둘째 대안공간 □□는, 갤러리 전시중 감독 지원 부족으로 작가가 작품설치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상업화량으로 진화하는 것 같고, 셋째 대안공간 ▲은, 후원을 받기위해 신한은행과 뭔가를 모색 중이며, 예산집행과 관련해 연간 결산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고, 넷째 ◇◇◇다방은, 운영위원제도가 흔들리면서 윤○○ 전 이사장의 힘이 너무 강력해 균형을 잃었고, 모 큐레이터 사직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으며, 입구 유리문에 붙어있던 이

사진의 명단도 사라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첫째 대안공간 네트워크는, 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도 작가의 전시를 1년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는 대안공간 네트워크로 활동하다가 2005. 10.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대안적으로 공공의 이념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둘째 대안공간 □□는, 갤러리 전시에서 감독지원 소홀로 작가의 작품설치에 지장을 준 경우가 없으며, 지금까지 비영리 갤러리로서 상업행위를 한 적이 없고, 셋째 대안공간 ▲은, 전문예술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해 왔고, 기획대관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신한은행은 주거래 은행일 뿐, 넷째 신한은행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다방은, 어느 한 사람이 전횡할 수 없게 공동운영위원회로 운영되어 왔고, 윤○○ 전 이사장도 내규에 따라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였으며, 모 큐레이터의 사직은 공식적 절차를 거친 징계조치에 따른 것이고, 이사진의 명단 철거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아트 인 컬처 “라운드 테이블”(원탁좌담) 우측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보도의 제목(“불타는 라운드 테이블”)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2006년 3월호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트 인 컬처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호 16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부처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책 광고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처장 김 창 호)

피신청인 : 경기일보

증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경기일보 : 『국정홍보처의 ‘정책광고’ 간섭, 부당하다』
제하의 사설 (2006년 1월 26일자 19면)

내 용 : (전략)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유료 정책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내용과 시기·예산·매체 운용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토록 한 것은 (중략)

협의 과정에서 개별 매체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TV·신문·라디오·잡지·인터넷 등 홍보 매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략)

하지만 광고배정 ‘창구’를 홍보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홍보처의 ‘입맛’에 따라 광고가 배정될 것은 불문가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1월 26일자 19면 『국정홍보처의 ‘정책광고’ 간섭, 부당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유료 정책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시기·내용·예산·매체운용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토록 했다”

고 적시하고 “TV·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 등 홍보 매체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하며 “광고배정 ‘창구’를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공동명의로 광고를 시행할 경우에 내용·시기·예산·매체운용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하는 것이며 산하기관 독자 광고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홍보매체 선택시 TV·신문·인터넷·잡지·라디오 중 어느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매체가 효율적인지 협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며 광고배정 역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창구를 국정홍보처로 일원화 한 것은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정정보도

•내 용 : 본보 1월 26일자 『국정홍보처의 정책광고 간섭, 부당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광고배정 창구를 홍보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광고배정은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창구를 홍보처로 일원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유료 정책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내용과 시기·예산·매체운용계획 등을 국정홍보처와 협의토록 했다’는 부분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공동명의로 광고를 시행하려면’으로 바로잡습니다. 산하기관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TV·신문·라디오·잡지·인터넷 등 홍보매체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기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를 해야 한다’로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에 합의 후 7일 이내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20급으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의 식당이 주택용도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밤 늦도록 영업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13

처리결과 : 합 의(정정)

취 하(손배)

보도내용

한겨레 : 『주택 용도 건물서 버젓이 술장사』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4일자 호남지역 배포판 14면)

내 용 : 전남 여수시 소호동 김아무개(54)씨 등 주민 27명은 23일 “주택가에 들어선 ㅄ식당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둔갑시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ㅄ식당은 2000년 5월 여수시 소호동 기존 건물 1층 식당(29평) 옆에 10평 규모의 목조건물을 신축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기존 건물은 전통 찻집으로 운영하고, 새 목조건물은 서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ㅄ식당은 2000년 9월까지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략)

주민들은 “ㅄ식당이 주택가에 일반음식점(식당)으로 허가를 받아 술집과 식당을 겸업하면서,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며 “목조건물의 심야영업 때문에 주차난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ㅄ식당은 식사를 취급하면서 부분적으로 술을 곁들여 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24일자 호남판 14면 『주택 용도 건물서 버젓이 술장사』 제하의 기사에서 ㅄ식당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식당으로 둔갑시켜 술집과 식당을 겸업하면서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주차난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ㅄ식당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근린주택 2종지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간단한 주류와 식사를 제공하는 건전한 업소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트식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6년 1월 24일자 호남판 “주택가에서 버젓이 술장사”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트식당>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여 왔으며, 심야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2월 2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고 호남지역에 배포되는 한겨레 13면 또는 14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 제목 ‘여수 소호동 주민 집단민원’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박스 기사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을 취하하고,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의 동의 없이 <트식당>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트식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8일자 호남지역 배포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부처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과학기술부 (장관 김 우 식)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과기부 “참여 포기”』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3일자 1면)

내 용 : 미국이 이달 들어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한 ‘원자력 독과점 체제’ (범 카르텔)에서 한국이 빠지게 생겼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미·일본·프랑스 등 9개국이 지난해 서명한 ‘차세대 원자로(GenIV) 개발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는 14~16일 일본 후쿠이현에서 열리는 ‘나트륨 냉각 고속원자로(SFR) 개발 프로젝트’ 서명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략)

(2)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해, 한국, 사업 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4일자 2면)

과학기술부는 14~16일 일본 후쿠이현에서 열리는 차세대 원자로(GenIV) 개발 서명식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할 때 추후 서명할지도 모른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가 이 약속을 이번 서명식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SFR)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과기부는 1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지시해 과기부 원자력국장과 함께 ‘GenIV사업’의 한국 공동대표인 원자력연구소 장문호 박사 명의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에 ‘서명식 불참’을 알리는 e-메일을 보

냈다. 여기에는 ‘불참하겠다’는 문구만 들어있을 뿐 나중에 언제 서명하겠다는 일정 등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는 이를 ‘앞으로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13일자 1면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과기부 “참여 포기”』 제하의 기사와 2월 14일 2면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 해… 한국, 사업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차세대원자로(GenⅣ)’ 개발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고 “우리 정부가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개발 프로젝트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세대 원자로(GenⅣ)’ 개발 서명식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할 때 추후 서명할지도 모른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 나트륨 냉각 고속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차세대 원자로(GenⅣ)’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나트륨 냉각 고속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서명하지 않기로 한다고 한 것은 금번 일본 후쿠이에서 있는 Gen-Ⅳ 국제포럼 정책그룹회의의 나트륨 냉각 고속로 시스템 약정 서명식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이는 참여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나트륨냉각고속로 시스템 약정 추후 가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과학기술부는 2월 13일자 1면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개발 과기부 참여포기』, 2월 14일자 2면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 해… 한국, 사업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보도와 관련, 차세대 원자로 개발 6개 시스템 중 하나인 나트륨냉각고속로(SFR)와 관련된 시스템 약정 서명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고, 나트륨냉각고속로를 포함한 차세대원자로개발계획 참여포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추후 참여 결정시 서명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6년 3월 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제목은 고딕체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탈북자 구호 활동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합 의(정정)

취 하(손배)

보도내용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2006년 1월 21일 22:55)

내 용 : (전략)

▷기자 : “임씨 씨는 모 탈북자인권단체 보호국장입니다. 우리는 그가 진실로 중국의 탈북자들을 구원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탈북자 한OO(본명 김OO) 인터뷰〉

▷기자 : “한OO 씨는 지금도 그때 당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철을 모집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자 : “한OO 씨는 임씨에게 동생을 데려다 달라고 1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북송되었고 사망했습니다. 임씨는 그런데도 한OO에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자 김△△ 변호사의 중개로 500만 원은 돌려받고 200만 원은 손실처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 “원래 한OO 씨 여동생은 중국에 잠깐 와 한국에 간 오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김□□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 탈북자인권단체 사무처장 송OO 목사 인터뷰〉

▷기자 : “임씨는 본부로부터 탈북자구출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원을 받았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았습니다.” (중략)

▷기자 :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이 임씨의 말을 믿고 친인척을 탈중국시켜 달라고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 “임씨의 일을 했다는 조선족 브로커는 탈북자 한명당 70-100만 원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탈북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삿

속으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인터뷰〉

▷기자 : “이 탈북자는 스스로 북경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는데 100달러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탈북자들이 탈중국에 드는 비용은 그렇게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성탈북자 이OO (본명 김▲▲) 인터뷰〉

▷기자 : “임씨는 이OO 씨의 언니를 구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되었고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임OO이 구출해준 남자 탈북자 인터뷰〉

“임씨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2006년 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탈북 인권 단체의 희생자였다”는 제목으로 탈북자인권단체 간부인 임모 씨가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악용해 단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탈북자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임모 씨는 중국에 나와있는 탈북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금횡령이나 사기,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사고로 인한 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도 없고 약 1,000여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왔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1월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우리는 탈북인권단체의 희생자였다” 방송에 대한 모 탈북자인권단체 전 간부 임OO 씨의 반론보도문입니다.

방송에서 임씨가 중국의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북한 주민을 강압적으로 탈북시켰으며,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OO 씨는 많은 애로를 극복하면서 1,000여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2006년 3월 11일자 프로그램 말미에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여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2006년 3월 11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울시가 건교부와의 합의를 깨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이명박)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2.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1)『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강남 집값 또 들썩』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1면)

내 용 :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헛갈리는 주택정책으로 연초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 가격 불안정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보조를 약속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현안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용적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하는 등 모처럼만에 한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한달도 지나지 않아 깨졌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재건축 기본계획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재건축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건교부도 서울시가 여러차례 송파 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 놓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는 4일 공식적으로 송파 신도시 개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강남·북 균형개발을 막고 투기 바람만 불러오고 있다는 이유를 달고 있지

만, 건교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불만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사업의 빛이 바랄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2) 『대책완비돼 적기 용적률완화 왜 지금하나 선거용 선심행정』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3면)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하면서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8·31부동산대책'에 묶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쟁점을 정리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서울신문은 지난 2006년 1월 5일자 1면에 『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강남 집값 또 들쭉』이란 제목으로, 건교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현안 사항이 일어날 때 마다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은 깨졌으며, 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담은 재건축 기본계획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재건축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고 보도했으며, 같은 신문 3면에는 『용적률 완화 왜 지금하나, 선거용 선심행정』이란 제목으로 용적률 완화로 인하여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건교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합의한 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 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여 평균 15층 이하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추진하되, 평균층수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이며, 서울시에서 작성하여 공람 공고한 재건축 기본계획의 계획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기존 2종 12층 및 3종지역)의 경우 210%로 계획하였으나, 공람공고 및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기존 2종 12층 지역에서 3종으로 변경된 지역과 기존 3종 지역의 계획 용적률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기반시설이 양호한 기존 3종 지역의 경우 계획 용적률을 230%로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항으로, 재건축 기본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계획 용적률을 210%로 하든 230%로 하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50%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건교부와 합의 사항을 깬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가 건교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불허 약속을 어기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줌으로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재건축 기본계획과 관련이 없는 지방선거를 연계시켜 선거용 선심행정이라는 과장 보도를 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보도문
- 제목 : 바로잡습니다
- 본문 : 서울신문은 1월 5일자 1면 『서울시·건교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강남 집값 또 들쭉』이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건교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사항은 ①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250%, 3종 주거지

역은 250%→30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개정과
② 2중 주거지역의 층수를 평균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건교부와 합의를 깨고 3중 주거지역 내 강남권 10개 단지의 용적률을 230%로 상향조정하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서울신문 2006년 3월 11일자 1단 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11일자 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언론인 주택조합 모집 책임자로 나서 동료 직원들을 가입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10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3. 3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시사저널 : 『기자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으니...』

제하의 기사 (2006년 3월 28일자 40~42면)

내 용 : (전략)

기자가 이 사건을 입체 추적한 결과 김○○ 씨가 주도한 한남동 주택조합 사기 피해 조합원 가운데 언론인은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 등에 소속된 기자·PD·아나운서 등 51명이었다. 그 가운데 모 방송사의 기자·아나운서·PD가 17명으로 가장 많다. 조합원 모집 책임은 모 방송사 박 아무개 아나운서가 맡았다. 박씨는 당시 모집책임이 되어 주로 후배 기자와 PD 등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했는데, 그의 권유로 조합원이 된 이들은 그동안 김○○ 씨의 사기 행각을 눈치채지 못한 채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3천여 만 원에 이르기까지 조합 분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 분야 모집 총책임 박 아나운서는 지금까지 조합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가 낸 돈은 조합 운영비 3백 90만 원이 전부. 초기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조합이었지만 그나마 조합원 자격조차 가질 수 없었던 박씨가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이다. 현재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박 아나운서는 그동안 주요 조합 행사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중요한 조합 관련 서류에 자기 직인을 찍음으로서 책임자 역할을 해왔다.

자기는 조합 분담금 한 푼 안 내고 후배 직원들에게는 돈을 밀어넣게 한 뒤 지금까지 조합비상대책위원을 맡은 데 대해 박 아나운서는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자까지 쳐서 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래 언론인 조합 대표였던 같은 회사 이 아무개 PD로부터 부탁 받고 후배들을 조합원에 끌어들이었는데 그가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언론인 대표를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중략)

김○○ 씨와 오○○ 씨가 주도한 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모집 대표들은 자금 지원까지 받았다고

한다. 한남동 주택조합장 오OO 씨는 “언론과 국방부 모집책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OO 씨를 구속한 뒤 오OO 조합장을 업무 방해 따위 혐의로 기소한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초 한남동 주택조합 사업이 김OO 씨의 사기극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박 아나운서의 권유에 따라 조합원이 된 일부 모 방송사 기자들은 지난해 들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28일자 제857호 40~42면 『기자들도 감쪽같이 속아넘어갔으니...』 제하의 기사에서 한남동 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해 모 방송사 박 모 아나운서가 당시 한남동 언론인 주택조합 모집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가입을 적극 권유했으며 한남동 연합 주택 조합장 오모 씨가 “언론과 국방부 모집책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박 모 아나운서가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시 주택조합 언론인 모집 책임자는 박 모 아나운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주택조합에 가입한 박 모 아나운서의 동료들은 박 모 아나운서의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합에 가입했던 것이며 연합주택조합장 오모 씨가 언급한 2억 원은 언론과 국방부 모집책이 아닌 주택조합원 모집 전문 용역회사인 (주)OO시티에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1일자 제857호에서, 한남동주택조합 사기피해자들 중 모 방송사 조합원 17명의 모집책을 모 방송사 박 아나운서가 맡았는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일부 모집 대표들은 자금지원까지 받았고, 연합주택조합장이 “언론 분야와 국방부 분야 모집책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 아나운서는 당시 언론 분야 조합원 모집책은 자신이 아니었고, 연합주택조합장이 말했다는 용역비 2억 원은 조합원모집 용역회사인 (주)OO시티에 지급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시사저널 5월 1일자까지 판권표시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5월 2일자 8면)

내 용 : 지난 3월 21일자 제857호 ‘한남동주택조합 사기피해’ 기사에서 모 방송사 조합원 17명 모집책을 모 방송사 박 아무개씨가 맡았는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조합대표는 자금지원을 받았고, 연합주택조합장이 “언론과 국방부 분야 모집책에게 용역비로 2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당시 언론 분야 모집책은 자신이 아니었고, 연합주택조합장이 거론한 용역비 2억 원은 조합원 모집 용역회사인 (주)OO시티에 지급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교회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자 판결(2005가합1895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김제○○교회(이하 원고 교회)와 이 교회 담임목사 김○○ 목사(이하 원고 목사)가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인터넷 신문)와 교회 신도인 문○○ 부자(父子)(이하 피고 신도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는 피고들이 특정 교회나 특정 목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종교, 특히 교회가 차지하는 기능 및 중요성에 비추어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문제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이 사건 기사를 보

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사(修辭)적인 과장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표현방법 또한 모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관련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교회와 원고 목사는 피고 신도가 피고 인터넷 신문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목사 연봉이 124,200,000원입니다’ 라는 내용을 제보하고 이에 피고 인터넷 신문사가 2005년 1월 20일자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 원?』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원고 목사의 역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원고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 교회 신도들이 원고 교회와 원고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 목사의 연봉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피고 인터넷 신문에 제보했고 피고 인터넷 신문은 원고 교회가 내분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 교회와 원고 목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듯한 내용의 보도를 하는 등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판 결 문

- 사 건 : 2005가합18950 손해배상(기)
- 원 고 : 1.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교회
대표자 김 ○ ○
2.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배
- 피 고 : 1.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대표이사 오 연 호
2. 조 ○ ○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3. 문 ○ ○
4. 문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 태 진, 차 현 환

- 변 론 종 결 : 2006. 4. 7.
- 판 결 선 고 : 2006. 4. 21.
-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교회에게 금60,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은 1999. 7.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를 관리·경영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조○○은 피고 신문사의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편집·게재한 사람이고, 피고 문○○은 원고 교회의 시무장로인 사람이며, 피고 문□□은 피고 문○○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및 그 내용

피고 신문사는 2005. 1. 20.에 발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에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 원?>이라는 대체목 및 <전북 J교회 담임목사의 연봉 내역을 공개합니다>, <교회 예산 20% 담임목사가 차지... 청소원 연봉은 1천 만 원대 20배 차이>, <미국자

너 학비 지원 중단해야 - 계속 줘야... 미 시민권 포기 논란도)라는 중제목으로 담임목사의 역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한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다. 피고 문□□의 제보

피고 문□□은 “오마이뉴스”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목사 연봉이 124,200,000원입니다’라는 제목을 온라인 통신으로 송부하고, 피고 조○○의 전화취재에 응하면서 팩스로 원고 교회의 2004년 및 2005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툴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문○○은 원고 김○○의 교회 운영 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원고 교회의 내분을 야기한 자로서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 교회의 내부 문서인 세입세출예산서를 절취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문□□에게 전달하고 피고 문□□과 공모하여 담임목사의 연봉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피고 조○○에게 제보하였으며, 피고 신문사와 그 소속기자인 피고 조○○은 원고 교회가 내분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 김○○이 소도시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이나 쟁기는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원고 교회도 그러한 부도덕한 목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피고 문○○은 이 사건 보도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전북 J교회’, ‘담임목사 김 아무개’라고만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설사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 재정에 관한 비평의 일환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에 기초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문○○의 개입 여부

먼저, 피고 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문○○이 원고 교회의 내부자료를 절취하고 피고 문□□과 공모하여 피고 신문사, 피고 조○○에게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사에서 비록 원고들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원고 교회를 ‘전북 J교회’, 원고 김○○을 “담임목사 김아무개” 또는 “김 담임목사” 등으로 지칭하였으나, 그 기사내용이 미국 시

민권을 가지고 있던 김 목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에 부임하여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는 등의 취지이고 원고 교회의 전면부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 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기사에서 말하는 “김 목사”가 원고 김○○을 지목하는 것이고 “지방소도시 교회”가 원고 교회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위법성조각여부

살피건대,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은 이 사건 기사에 연이어 “목사연봉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라는 제목 하에 서울 “높은 뜻 승의 교회”의 목회자의 적정연봉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사례와 기독교방송의 목사 연봉에 관한 설문조사사례, 시

민종교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 관계자의 의견 등을 취재하여 별지 제2목록 기사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피고들이 특정 교회나 특정 목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종교 특히 교회가 차지하는 기능 및 중요성에 비추어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문제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3,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 증인 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은 피고 문□□을 통하여 원고 교회의 2004년 및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라는 구체적인 문건을 입수하고 원고 교회의 장로 및 권사들로부터 원고 교회의 재정운용상황 등을 취재하고 원고 김○○과도 전화통화를 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원고 교회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

출예산서'에는 세입예산총액이 1,058,000,000원으로 이 전부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여 조성되는데(헌금 이외의 기타 수입은 40,000원에 불과하다), 세출예산 중에 담임목사(원목)의 생활비 54,400,000원, 목회비 6,000,000원, 연구비 6,000,000원, 도서비 4,800,000원, 여비 3,600,000원, 수양비 1,200,000원, 자녀학비보조비 49,200,000원(특별 30,000,000원, 원목 19,2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위 예산서상 교육목사의 교육비(연봉)는 13,200,000원, 교육전도사의 교육비(연봉)는 18,000,000원 또는 8,400,000원, 사무직원의 생활비는 16,000,000원, 차량기사의 생활비는 21,440,000원 또는 17,600,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청소원에게는 급여로서 연 10,000,000원 정도가 지급되는 사실, 예산서상 행정관리비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접대비 10,000,000원, 축조위비 7,000,000원, 정보통신비 5,000,000원도 사실상 담임목사가 그 용도에 따라 지출하고, 예산서상 원고 교회 보유 차량, 시설, 사택 등에 대한 재산관리비로서 121,48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고 교회는 담임목사인 원고 김○○에게 그랜저XG 승용차 1대와 30평대 사택을 제공하면서 그 유지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위 재산관리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 온 사실, 2005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004년도의 그것보다 감소되었지만 목사생활비, 교역자 연구비, 교역자 도서비 등은 오히려 증액 편성된 사실(세부적으로는 부목사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것이다), 원고 교회는 2003년부터 재산운용방법(중학교 인수 문제 등) 등을 둘러싸고 내부의 갈등을 빚어오다가 2004. 10.경에는 원고 교회의 장로 10여 명이 원고 김○○의 미국 시민권 포기 약속위반, 독단적인 부서 임원 임명, 처리권(징계권) 남용 등의 이유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역노회에 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피고 조○○의 이 사건 기사 취재경위, 원고 교회의 공식적인 예산서에 기재된 예산편성내용, 원고 교회의 담당위원회가 재미 유학 중인 원고 김○○의 자녀교육비로서 연간 30,000,000원(15,000,000원 씩 2회)을 4년 동안(대학졸업시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한 시점이 2001년 초경(갑 제4호증)임에 비추어 2005년도에는 통상적인 대학 수업연한을 초과하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적시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교회의 경우 교인들의 헌금으로만 운영되는 교회인데 담임목사인 원고 김○○ 개인의 생활 및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원고 김○○이 미국 시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문제 등이 원고 교회의 내부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그 문맥 중에 '연봉 2억원', '총예산 중 20%를 담임목사가 가져간다', '청소원의 연봉은 담임목사와 20배 차이' 등 수사(修辭)적인 과장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표현방법 또한 모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관

련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섭
판사 황인경
판사 이영남

□

판결 2

언론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자 판결(2005가합2611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국내 대학생들을 송출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T사가 SBS(이하 피고 방송사)와 T사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이하 피고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의 경우,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우며 원고회사를 문제있는 업체로 묘사하였다는 주장 역시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턴십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최근 청년실업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해외 인턴십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등을 다룬 것으로서 그 보도목적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가, 피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가해업체가 원고회사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방송사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방송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 방송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 경위가 어떠한 피고 학생들이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의 본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게 미국에서 주로 허드렛일만을 하고 돌아온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 학생들이 이메일과 전화로 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한 행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행위 등은 타인에게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내용과 피해사례를 호소한 것이거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피고 학생들이 피고 방송사와 몰래 원고회사를 취재한 행위 및 피고 방송사에게 자신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경우 피고 방송사가 몰래 취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 따라서 피고 방송사가 명예훼손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와 피고 학생들이 2005. 2. 1.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 ‘우리는 노예였어요’ 제하의 보도에서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하여 피고 학생들과 원고 회사의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편집·방송하고 원고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피고 학생들은 원고회사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수차례 원고회사를 비방하면서 원고회사가 주선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고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

지의 비방전화를 하였으며 피고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 방송사와 공모하여 원고회사를 몰래 취재하는 등 원고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 사 건 : 2005가합26111 손해배상(기)등
원 고 : T 사(대표자 이사 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
Ⅲ 고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센터
 대표이사 안 국 정
 2. 김 ○ ○
 서울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센터
 보도국 뉴스추적팀
 3. 윤 ○ ○
 4. 서 ○ ○
 5. 송 ○ ○
 6. 윤 ○ ○
 7. 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변 론 종 결 : 2005. 12. 23.

판 결 선 고 : 2006. 1. 20.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20:50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과 '[우리는 노예였어요]의 보도비리에 관하여'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이 판결 확정 후 15일 이내에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회사는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국내 대학생들을 송출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는 'SBS 뉴스추적'이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방송사이며, 피고 김○○는 피고 방송사 소속 기자이고, 피고 윤○○, 피고 서○○, 피고 송○○, 피고 윤○○, 피고 박○○(이하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은 국내 대학에서 호텔경영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현재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참여

(1) 피고 학생들은 미국에 소재한 호텔, 리조트 등이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2003. 10.경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알선 대행료로 약 480만 원 상당을 각 지불하고 원고회사에 미국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절차와 수속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회사의 해외 담당직원 소○○는 2003. 11.경 피고 학생들에게 미국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 알선업체가 보내 온 미국 뉴멕시코주 Ranton 소재 버매조 파크 랜치(Vermejo Park Ranch)의 고용제안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5, J-1 Trainee Program Offer Of Employment) 및 버매조 파크 랜치의 트레이닝 플랜(갑 제2호증의 1 내지 5, Training at Vermejo Ranch)을 각 제시하면서, 피고 학생들에게 '위 버매조 파크 랜치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고급리조트이고, 비록 기간은 기본 12개월보다 짧은 8개월이지만, 프론트 데스크, 고객센터에 관련된 부서, 식음료부서, 하우스키퍼 부서, 소매업 관련 부서 등 여러 부서를 순환근무하면서 리조트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익힐 수 있고, 유급으로 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주었다.

(3) 이에 피고 학생들은 원고회사가 알선한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4. 3. 25.경 미국 현지에 도착하여 같은 달 30.경부터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피고 학생들에게는 잔디관리나 쓰레기처리, 접시 닦기, 주방청소 등과 같은 업무만이 맡겨졌고, 프론트 데스크나 식음료 부서 등으로의 업무순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 학생들은 버매조 파크 랜치의 담당자로부터 위 고용제안서나 트레이닝 플랜의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 학생들이 다른 부서로 순환 배치되어 손님 접대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2004. 6.경

원고회사에게 비자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순환이 가능한 다른 인턴십 업체를 알선하여 주거나, 알선비 중 일부를 환불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5) 원고회사는 피고 학생들에게 다른 인턴십 업체를 소개하여 주었으나, 피고 학생들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하여 다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결국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 학생들이 알선비 중 일부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 방송사의 이 사건 방송 및 그 내용

(1) 피고 학생들은 2005. 1.경 원고회사를 찾아가 피고 학생들이 버매쥬 파크 랜치에서 업무순환 없이 허드렛일만을 하다가 돌아 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알선비 중 일부를 환불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회사의 담당직원 소○ ○는 ‘피고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리한 내용이었고, 부서의 배치전환은 현지 업체인 버매쥬 파크 랜치의 고유권한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오○○ 역시 피고 학생들이 요구한 미국 비자의 연장을 통한 다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환불 등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피고 방송사 소속 성명불상의 기자는 피고 학생들의 친척이라고 자신을 거짓 소개한 후 원고회사 측과 피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내용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 방송사는 2005. 2. 1. ‘SBS 뉴스추적’을 통해 “우리는 노예였어요”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해외 인턴십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

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김정은(가명)이 유치원교사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로 갔으나, 실제로는 유치원교사가 아니라 보모로 일하였다는 피해사례 및 피고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호텔관광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으나, 실제로는 잔디관리, 주방보조업무 등 허드렛일만 하고 돌아왔다는 피해사례(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를 각 소개하는 내용

② 김정은의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국내 인력양성업체가 김정은 씨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호주의 현지 알선 업체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내용

③ 노동부에서는 등록된 업체인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나, 현행법상 직업소개업과 노동부 등록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고, 해외 인턴십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노동부 등록업체도 등록이 어렵지 않음을 이용하여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어 등록된 업체라고 해서 신뢰하기 어렵고, 더욱이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여 여권을 위조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

④ 해외 인턴십의 성공사례로서 서강대학교과 무역협회의 인턴십 프로그램 내용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해외 인턴십에 성공하려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5 내지 10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는 원고회사를 정당하게 취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하여 피고 학생들과 원고회사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편집·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회사가 환불도 해주지 아니한 채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묘사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원고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학생들은 원고회사가 업무순환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처럼 자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버매조 파크 랜치의 고용제안서 및 트레이닝 플랜에 인턴 학생들의 업무순환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피고 서○○은 2004. 7.경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 레스토랑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업무순환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다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실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업무 순환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학생들은, ① 피고 학생들에 뒤이어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수차례 원고회사를 비방하면서 원고회사가 주선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고, ② 그밖에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비방전화를 하였으며, ④ 피고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 방송사와 공모하여 원고회사를 몰래 취재하는 등 원고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방송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들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과 원고회사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취재한 사실,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내용 및 일부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의 경우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가며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회사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피고 학생들이 원고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의 경우, 원고회사의 건물외경, 사무실 입구 등 원고회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원고회사 직원의 얼굴 등은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되었고, 원고회사 직원의 음성 역시 변조되어 방영된 사실은 원고회사도 다투지 않고 있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 시청자들이 위 방송 부분을 보고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여겨

진다.

더욱이 원고회사는 이 사건 방송이 원고회사를 환불도 해주지 아니한 채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 있는 업체로 묘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은 김정은(가명)의 피해사례와 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차례로 소개한 다음, 그 중 김정은의 피해사례를 특정하여 김정은을 알선한 국내 업체가 그 피해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점, 곧이어 일부 노동부 등록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턴십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그 순서,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말하는 이름만 바꾸어 가며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인다.

(2) 나아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방송은 최근 청년실업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해외 인턴십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등을 다룬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우리는 노예였어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학생들이 그 경위가 어떠한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 및 피고 학생들이 출국에 앞서 원고회사로부터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미국 현지 업체에서 주로 허드렛일만을 하다가 돌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 서○○이 2004. 7.경 레스토랑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 학생들이 주로 허드렛일만을 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이 사건 방송 중 일부 노동부 등록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분의 진실성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가 피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가해업체가 원고회사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과 원고회사 직원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방송사가 위와 같이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학생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가 어떠한 피고 학생들이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의 본

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게 미국에서 주로 허드렛 일만을 하고 돌아온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 학생들이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터넷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위 인터넷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한 행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행위 등은 타인에게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내용과 피해사례를 호소한 것이거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이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의 생활을 수기의 형태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 것일 뿐, 원고회사를 비방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서○○은 위 수기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회사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서○○이 위법하게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 학생들이 원고회

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 학생들이 피고 방송사와 몰래 원고회사를 취재한 행위 및 피고 방송사에게 자신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방송사가 몰래 취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 따라서 피고 방송사가 명예훼손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 학생들에 대한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판결 3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로 그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6. 2. 15. 자 판결(2005가합18545)

사실개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

사)는 부산 모 병원장이자 정신과 의사인 박○○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총국 취재부 소속 강○○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지난 2005년 7월 7일 KBS 2 텔레비전 「뉴스타임」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술 깨보니 정신병원』 제하의 방송과 같은 날 KBS 1 텔레비전 「뉴스 9」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 『어느 40대의 잃어버린 4년』 제하의 방송을 통해 원고 병원이 김○○(이 사건의 제보자)을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예를 훼손해 재산적·정신적 손해 및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비용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방송은 그 제보자인 김○○의 사례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구청, 경찰서)의 관리가 소홀하며, 위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방송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물론 피고들이, 원고 병원에서의 김○○에 대한 입원치료가 정신보건법령 및 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김○○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취재하고서도 이 사건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바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는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취재된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취재된 원고 병원의 사정을 이 사건 보도 내용

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권 : 2005가합18545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Ⅲ 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연주

2. 강 ○ ○

부산 수영구 남천동 63

KBS부산방송총국(소속 취재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신

변 론 종 결 : 2006. 2. 1.

판 결 선 고 : 2006. 2. 15.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558,9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병원(이하 같은 병원 또는

원고를 포함한 같은 병원의 구성원들을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방송의 실시와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이며, 피고 강○○는 피고 방송사의 소속 취재부 기자로서 다음 나.항 기재 방송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취재하여 보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방송 및 그 내용

(1) 피고 방송사는 2005. 7. 7. KBS 2TV “뉴스타임”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약 1분 32초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술깨보니 정신병원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한 40대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이 40대는 그 동안 눈이 거의 실명지경에 이르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고 강○○(화면 아래쪽에 “1999년 4월 김○○ 씨 술 취해 쓰러진 뒤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인계”라는 자막 표시) : 48살 김○○ 씨는 지난 99년 4월 24일 밤 9시 반쯤, 부산 연산동의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김 씨가 눈을 뜬 곳은 부산 △△동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당황한 김 씨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원고 병원 관계자(화면 아래쪽에 “병원관계자 (입원동의는)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아래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라는 자막 표시) :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하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피고 강○○ : 보호자는 없지만 직업과 거주자가 있다는 김 씨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화면 아래쪽에 “4년 동안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자막 표시) : 보호자 없는 사람은 길에서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오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는 곳이 정신병원인지, 세계 어떤 나라가... 있는지...

•피고 강○○ : 구청은 매달 80만 원 가량의 병원비만 지불했을 뿐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뿐 아니라 감독행정기관으로부터도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려환자는 일단 시립의료원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지침을 어긴 경찰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계자(화면 아래쪽에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됐습니다”라는 자막 표시) :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되었습니다.

•피고 강○○ : 건설근로자였던 김 씨는 4년 동안의 정신병동 생활 이후 말초신경 장애와 실명으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KBS뉴스 강○○입니다.

(2) 그리고 피고 방송사는 같은 날 KBS 1TV “뉴스 9”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다음의 앵커의 소개를 제외하고는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다음날 KBS 1TV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어느 40대의 잃어버린 4년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 강제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2, 12,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병원이 김○○을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손해 및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비용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위와 같은 손해액 합계 411,558,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병원이 김○○을 인계한 경위

(가) 김○○은 건설근로자로서 특별한 신체적 장애 없이 1998. 8.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였고, 그의 형 김△△가 사망한 이후에는 “김△△”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나) 김○○은 1999. 4. 24. 21:00경 부산 연제구 ○○동 ○○한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관할 연제경찰서 연산2파출소에 의해 행려환자로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고, 원고 병원은 관할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다) 위 인계 당시 김○○에게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연제경찰서가 작성한 김○○에 대한 “행려환자 인계서 송부”문서에는, 김○○의 성명란에 “자칭(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직업, 본적, 주소란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견일시 및 당시 개황란에는 “행려환자로 보이고 연고도 이름도 몰라 인계한 것임”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 병원의 김○○에 대한 입원치료 경과

(가) 김○○은 원고 병원에 인계된 후 1999. 4. 25. 07:20경에 깨어나 그곳이 원고 병원인 것을 알고, 원고 병원 간호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로 그가 왜 병원에 있다고 하며, 병원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였고, 1999. 4. 26.에는 원고 병원에 “내 이름은 김△△가 아니라 김○○이고요, 43세입니다. 누나 집에 지금 연락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나) 김○○은 원고 병원에서 부산 부산진구 ○○동 거주한다는 그의 큰누나의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냈으나, 그의 큰누나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집에 급한 사정이 있다며 올 형편이 안 되니 혼자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면회를 오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 병원은 김○○에게 알코올 남용,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김○○에 대해 알코올 금단증상에 대한 치료와 만성알코올 의존환자에게서 주로 동반되는 반사회적 성격 및 편집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 병원은 김○○의 입원 후 매 6개월 마다 그의 잔존증상 치료를 위해 계속 입원 치료 심사를 부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그곳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2005. 4. 18.까지 김○○을 입원 치료시켰으나, 그 사이 김○○은 말초신경장애와 시력장애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다.

(라) 위 입원 기간 중 원고 병원은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계속 입원 치료 심사 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병원에 인계될 당시 “행려환자 인계서 송부”문서에 기재된 이름인 “김△△”와 연제구청에서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임의로 지정하는 관리번호 등을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였다.

(마) 김○○은 위 입원 기간 중이던 2001. 7.말경부터 다리 마비감을 호소하며 보행장애를 보여, 2002. 1.경부터는 부산의료원 등에 외진을 받은 바

있고, 2002. 2. 15.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말소신경 장애와 시력장애로 부산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04. 4. 초순경에는 원고 병원에서 외출을 나간 바 있고, 같은 달 7.경부터는 시력장애로 인해 부산의료원 등에서 외진을 받은 바 있으나, 위 2004. 4. 초순경의 외출 이외에는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 병원을 나갈 수 없었다.

(3) 피고 강○○의 취재경위 및 보도 후의 정황

(가) 김○○은 원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2005. 6. 30. 피고 방송사 부산방송총국에서 피고 강○○를 만나, 그가 1999. 4. 24. 21:00경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으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정신병원이었고, 그의 이름도 아닌 엉터리 이름으로 4년 동안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강제 입원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 강○○는 원고 병원, 관할 경찰서, 김○○이 위 입원 전 거주하던 집 주인 박○○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를 하였는바, 그 취재과정에서 원고 병원에서 김○○의 진료를 담당한 서○○ 의사는 피고 강○○에게 김○○이 행려(무연고)환자로서 원고 병원에 인계된 경위와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행려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병원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하였다.

(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7. 5. 환자의 장기·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경주지역의 모(謀) 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관할 자치단체에게 철저한 관리·감독 마련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후 2005. 7. 8. 김○○의 원고 병원으로의 인계 과정, 원고 병원에서의

신원확인절차 등에서 문제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문제들에 관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행 정신보건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마) 김○○은 이 사건 방송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감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05. 10. 10. 원고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2, 갑 10, 11, 13,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6, 갑 16호증의 1 내지 8, 을 2, 3(갑 12호증과 같다)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18, 20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부산고등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일부, 증인 서○○,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방송이 원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은 정신보건 법령에 따라 경찰서로부터 인계되어 응급 입원된

김○○에 대해 알코올 남용,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 하였으나, 그에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확정적 자료도 없고, 달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도 없어, 구청장의 동의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밟아 계속 입원치료 해 주면서 편의상 최초 경찰서로부터 인계 당시 서류에 기재된 “김△△”라는 이름과 의료보험급여를 위해 연제구청에서 부여한 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김○○을 관리해 왔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 강○○ 역시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원고 병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 병원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설명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병원(이 사건 방송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송에서의 “부산 △△동의 한 정신병원”이 원고 병원임을 능히 특정할 수 있다)에 김○○이 “4년 동안 강제 입원”되었다거나 원고 병원이 그를 “엥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은 원고 병원의 주관적 명예감정 뿐 아니라 원고 병원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러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이고, 방송 보도에 있어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등 다소 과장을 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방송이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기로 한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내용과 피고 강○○의 취재경위 및 보도 후의 정황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제보자인 김○○의 사례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구청, 경찰서)의 관리가 소홀하며, 위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방송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김○○은 1999. 4. 24. 밤 그의 의사에 반해 원고 병원에 입원되어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2004. 4. 초순경 외출을 할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병원에 의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원고 병원에서는 김○○의 진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김△△”라는 이름과 연제구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그를 관리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물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원고 병원에서의 김○○에 대한 입원치료가 정신보건법령 및 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한 것이었고, 또 원고 병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름과 관리번호로 김○○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취재하고서도 이 사건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취재된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취재된 원고 병원의 사정을 이 사건 보도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러므로 원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방송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근 수
판사 최 우 진
판사 류 종 명



외국의 언론관계 판결

미국 판결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피고의 보도가 원고 거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원고 거주지에서의 재판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

원 고 : Vincent E. "Bo" JACKSON and Ellen Coleman

피 고 : The CALIFORNIA NEWSPAPERS PARTNERSHIP, Medianews Group, Inc., Medianews Group Interactive, Inc., Jim Mohr, Steve Lambert, and Robert Balzer, Defendant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2005년 10월 26일 선고.

쟁 점 - 미국의 여러 주에 관련된 사건(diversity)에 대한 연방 제1심법원(일리노이 주 소재)의 인적 관할 준비

배 경 -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원고가 출판물(인터넷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고의적인 감정적 고통의 부과를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신문발행인,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자회사 그리고 발행인의 피고용인에 대하여 일리노이주에 있는 연방 제1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 각하를 구했다.

결 론 - Moran 연방 제1심법원 판사는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인적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피고들의 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디어 내용의 규제

(1) 명예훼손 - 본안 전 절차 - 일반 관할 (§11.1203)

캘리포니아 주 온타리오 부근에 사는 주민들을 독자로 하는 피고들의 뉴스 웹사이트는 "모 영양학자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운동 선수인 원고가 엉덩이를 잃게 된 것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원고는 위 기사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의도적인 감정적 고통의 부과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일리노이 주에 있는 연방 제1심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일반 관할(general jurisdiction)을 가진다는 점을 논증하는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 주의 웹 서버들이 자유

롭게 위 기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위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할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위 법원에 일반적인 관할을 허용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계속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2) 명예훼손 - 본안 전 절차 - 특별 관할 (§11.1203)

원고는 또한 일리노이 주에 있는 연방 제1심법원이 특별 관할(specific jurisdiction)을 갖는다는 점을 논증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왜냐하면 피고들은 일리노이 주의 정보 소스에 접촉하지도 않았고, 일리노이 주에 대한 이야기나 일리노이 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리노이 주에 산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들 신문의 인쇄판 구독자 65,000명 중 1명만이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고, 인터넷판 구독자는 단 한 명도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의 훼손된 명예는 전국적인 규모의 것인데 반해, 피고들의 웹사이트는 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이외의 주민들과는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명예훼손 기사가 일리노이 주까지 전달되리라는 것도 예견하기 어렵다. 또한 일리노이 주민이 피고들의 웹사이트에서 일리노이 주의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웹사이트가 아닌 별도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게 되는데, 사용자들이 지역적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국적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을 때에는 전국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표시해 놓는 것만으로 웹사이트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인적 관할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일리노이 주에서 재판을 하여야만 하는 이익도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Moran, J. 연방 제1심법원 판사

원고 Vincent “Bo” Jackson은 The California Newspapers Partnership, MediaNews Group Inc., MediaNews Group Interactive, Inc., Jim Mohr, Steve Lambert, Robert G. Balzery를 피고로 하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고의적인 감정적 고통의 부과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인적 관할의 결여와 부적절한 토지 관할을 이유로 이 소를 각하하거나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했다.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인다.

1. 배경

미국 영양학회의 회원이자 스포츠, 심장혈관 및 건강에 관한 식이요법 실무연구회 회원인 Ellen Coleman은 2005. 3. 24. California 주 Riverside 에서 열린 포럼에서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의 위험에 대한 발표를 했다. Inland Valley Daily Bulletin 신문의 스포츠면 편집자인 Mohr는 그 포럼에 참석한 후 “(위) 포럼이 스테로이드 사용의 위험을 강조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 기사는 “Coleman은 ‘Bo Jackson이 그의 엉덩이를 잃은 것은 신진대사 약물의 오용 때문이었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2005. 3. 24. 저녁 인터넷 웹사이트 ‘www.dailybulletin.com’에 게시되고, 다음날 Inland Valley Daily Bulletin 신문에 실렸다.

위 웹사이트에 게시한 기사 내용이 이 소송의 쟁점이다.

Coleman은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통하여, 자신은 위 포럼에서 식이요법과 스테로이드에 관해 발표했고 그 후 Mohr와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녀

는 또한 자신의 발표나 Mohr와의 인터뷰에서 Bo Jackson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기사에 실린 것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Jackson은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California Newspapers Partnership은 Inland Valley Daily Bulletin을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고, MediaNews Group Interactive, Inc.는 MediaNews Group, Inc.의 자회사로서 www.daily-bulletin.com을 보조하고 지원한다. Jim Mohr는 스포츠면 편집자이고, Steve Lambert는 편집자이며, Robert G. Balzer는 Inland Valley Daily Bulletin의 발행인이자 CEO이다.

II. 검토

피고들은 연방민사소송법(Fed.R.Civ.P.) 12(b)(2)에 의한 인적 관할 결여를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신청한다. 그 신청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리한 Coleman의 선서 진술서를 반박할 만한 다른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견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Transcraft Corp. v. Doonan Trailer Corp., 1997 WL 733905, *1 (N.D.Ill.1997). 원고는 먼저 인적 관할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RAR, Inc. v. Turner Diesel, Ltd., 107 F.3d 1272, 1276 (7th Cir.1997).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우리는 원고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관할에 있어서, 연방 제1심법원은 일리노이 주법원이 비거주자인 피고에 대해 관할을 가질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적 관할을 갖는다. Global Relief v. New York Times Co., 2002 WL 31045394, *5 (N.D.Ill.2002). 비거주자는 연방 및 주의 적법 절차 원칙과 일리노이

주의 long-arm법(어떤 자의 행위가 특정 지역에 손해를 끼치거나 특정 지역 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주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당해 주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법 - 번역자 註)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리노이 주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Transcraft Corp., 1997 WL 733905 at *2. 일리노이 주의 long-arm법은 일리노이 주 헌법과 미연방헌법(735 ILCS 5/2-209(c): Id.)에 의해 허용되는 근거에 기해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고들에 대한 인적 관할이 적법 절차 관념에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피고들이 일리노이 주와 최소한의 관련성(minimum contacts) - “그 주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페어플레이(fair play)와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관련성” - 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야만 한다. Int'l Shoe Co. v. State of Wash., Office of Unemployment Comp. and Placement, 326 U.S. 310, 316 (1945).

법원은 International Shoe 사건을, “피고의 재판지에 관련된 행동과 연관성은, 그가 그곳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444 U.S. 286, 297, 100 S.Ct.559, 62 L.Ed.2d 490 (1980).

[1] 원고는 이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일반 관할 및 특별 관할 모두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일반 관할은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거나 일리노이 주와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피고들에 대하여 인정된다. Helicopteros Nacionales de Colombia, S.A. v. Hall, 466 U.S. 408, 104 S.Ct. 1868, 80 L.Ed.2d 404 (1984); Euromarket Designs, Inc. v. Crate & Barrel Ltd., 96 F.Supp.2d 824, 833 (N.D.Ill.2000) 참조. 원고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이제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사업의 궁극적인 형태를 이룩했고”, 일리노

이 주의 웹서퍼들이 피고들의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원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 관할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단순한 유지만으로는 일반 관할이 생기기에는 부족하고 (Euromarket Designs, Inc., 96 F.Supp.2d at 833),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행동이 이 법원에 일반 관할이 생기게 할 만큼 실질적이고 계속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이 피고들에 대해서 특별 관할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특별 관할은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생긴 피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야 인정된다. *Burger King Corp. v. Rudzewicz*, 471 U.S. 462, 471, 105 S.Ct. 2174, 85 L.Ed.2d 528 (1985). 특별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과 일리노이 주 사이에 “임의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매우 희박한” 관련성만 있어서는 아니고, 그 이상의 ‘최소한의 관련성(minimum contacts)’이 있어야만 한다. *Burger King Corp.*, 471 U.S. at 475, 105 S.Ct. 2174,*896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서의 인적 관할은 *Calder v. Jones* 사건에서 확립되고 *Zippo Manufacturing Co. v. Zippo Dot Com, Inc.*, 952 F.Supp. 1119 (W.D.Pa.1997) 사건에서 강조되었던 명예훼손의 “결과(effect)”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Calder* 사건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해서는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원고는 *Calder* 사건이 단지 피고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일리노이 주에 사는 원고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터넷 기사가 일리노이 주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리노이 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Calder* 사건에 비추어 봐도 관할을 인정하기 어렵

다고 주장한다.

Calder 사건에서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은 플로리다 주 피고들에 대하여 인적 관할을 갖는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캘리포니아에 주거 및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이너인 원고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소한의 관련성(minimum contacts)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 재판지 그리고 소송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Calder*, 465 U.S. at 788, 104 S.Ct. 1482. 따라서 우리는 피고들, 그들과 일리노이 주와의 관계 그리고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일리노이 주의 이해관계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Calder* 사건과 다르다. *Calder* 사건에서 그 기사는 캘리포니아 정보 소스에서 나왔고, 원고의 감정적 고통과 직업적 명성에 대한 침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다. 요약하면 캘리포니아가 그 기사와 피해의 중심에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일리노이 주 정보 소스에 접촉하지 않았고 일리노이 주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일리노이 주에 산다는 것도 몰랐고, 어떠한 사건도 일리노이 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Calder*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주간 신문 500만 부 중 60만 부가 캘리포니아 주에 배포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6만 5천 명의 인쇄된 신문 구독자 중 1명만이 일리노이 주에 살았을 뿐이고 인터넷 신문 구독자는 단 한명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Calder* 사건의 원고 및 이 사건의 원고 모두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Calder* 사건에서는 그 침해의 결과가 이 사건에서보다 훨씬 크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했다. *Calder*가 속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캘리포니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심한 피해를 경험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명

성에 대한 침해는 전국적이다 - 그의 스포츠, 비즈니스 그리고 직업적 명성은 진정 전국적 범위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피해자는 그의 거주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추정하고 있지만(Rice v. Nova Biomedical Corp., 38 F.3d 909, 916 (7th Cir.1994); Schaefer v. Nash, 149 F.R.D. 583, 585 n. 4 (N.D.Ill.1993) 참조) 그러한 추정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경우에도 그의 거주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Reynolds v. Int'l Amateur Athletic Fed., 23 F.3d 1110, 1120 (6th Cir.1994) 참조 (피고가 세계적인 운동선수로서 그 직업적 명성이 오하이오 주에 중점을 두지 않았고, 오하이오 주가 그 언론 보도의 중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판시).

제7순회재판소는 Indianapolis Colts, Inc. v. Metropolitan Baltimore Football Club Ltd. P' ship, 34 F.3d 410 (7th Cir.1994) 사건과 Janmark, Inc. v. Reidy, 132 F.3d 1200, 1202 (7th Cir.1997) 사건에서 Calder 법리를 넓게 해석했다. Indianapolis Colts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가 인디애나 주에서 주로 발생했고 피고들과 인디애나 주의 유일한 관련성이 게임과 케이블 TV가 전국적으로 방송되었다는 점인 경우, 캐나다 국적의 피고들은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인디애나 주의 관할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가 TV 방송을 통하여 인디애나 주에 "들어갔다(entered, 혹은 인디애나 주와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번역자 註)"고 판시했으나, 그 "부가요건(addition, 피고가 TV 방송을 통하여 인디애나 주와 관련성을 갖게 된 점, 번역자 註)가 필수적인지"에 관해서는 명백히 결론 내리지 않았다. Indianapolis Colts, 34 F.3d at 412. 같은 맥락에서 법원은 Janmark 사건을 통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뉴저지 주 고객으로

하여금 원고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만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피고에 대한 관할이 생긴다고 판시했다. 그 침해 - 장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 가 일리노이 주에서 발생했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일리노이 주에서 재판관을 받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Janmark, 132 F.3d 1200. Calder 법리를 넓게 해석하는 제7순회재판소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Indianapolis Colts 와 Janmark 사건에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가 없다. 위 사례들에서는 피고들이 명백히 그 재판지를 향해서 불법행위를 했고, 따라서 그 피해가 인디애나 주 혹은 일리노이 주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 Indianapolis Colts 사건에서 "Colts"란 상표에 대한 침해는 인디애나 주에서만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었다. 왜냐하면 "Colts"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회사가 인디애나 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Janmark 사건에서 피고는 일리노이 주에서 구매한 물품을 취소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뉴저지 주에 사는 소비자에게 접촉했다. 유일한 잠재적 피해가 일리노이 주에서만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그 재판지를 향해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 두 사건의 피고들은 그 피해가 인디애나 주나 일리노이 주에서 발생할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설령 원고가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적 관할이 인정되려면, 피고들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피고들의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일리노이 주에서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피고들이 그들의 웹사이트가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Jennings v. AC Hydraulic A/S, 383 F.3d

546 (7th Cir.2004) 사건에 관한 제7순회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며 적절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은 인적 관할을 분석함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환경을 제공한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수동적으로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이 생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Jennings 사건에서 법원은, “재판지에서 피고와 소비자 사이에 일정 수준의 상호작용(interactivity)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웹사이트의 유지만으로 인적 관할을 인정한다면, 거의 전 세계적인 인적 관할을 창설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웹사이트에의 접근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될 경우, ‘기술적 발전이 인적 관할 분석에 변화를 주더라도, 그것이 비거주자인 피고들에 대한 주법원의 관할에 관한 헌법적 제한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된다”. 383 F.3d at 550. Jennings 사건을 되돌아 볼 때,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재판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웹사이트 문제에 있어서 그 ‘다른 요건’이란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고, 이는 Zippo, 952 F.Supp. 1119 사건에서 명백히 정의되고 있다.

Zippo 사건에서 법원은 “인적 관할이 헌법에 합치되게 행사될 가능성은 어떤 주체가 인터넷을 통하여 행하는 상업적 활동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인터넷 관련 사건들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첫째, 피고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판매를 하는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interactive websites)의 경우 인적 관할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에게 어떠한 상호작용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수동적인 웹사이트(passive websites)의 경우 인적 관할을 인정하기에 곤란하다. 셋째, 사용자가 호스트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의 경우 인적 관할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Euromarket

Designs, Inc., 96 F.Supp.2d at 838-39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www.dailybulletin.com이 “매우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웹사이트가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사용자들과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고, 위 웹사이트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www.dailybulletin.com 웹사이트는 캘리포니아 주민, 특히 온타리오 부근에 사는 주민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웹사이트의 모든 연락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909로 되어 있는데 반해, 장거리에서 전화하는 사람을 위한 1-800 번호 선택 옵션이 전혀 없다. 게재된 뉴스는 지역적인 것이거나 AP 통신사를 통하여 선택된 것뿐이다. 홈페이지의 날씨도 지역적인 것이고, 아무도 다른 곳의 날씨를 클릭할 수 없다. 사용자들은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인쇄된 신문이나 무료 전자신문을 구독신청 할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일리노이 주민도 현재 이를 신청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일리노이 주까지 전달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Zippo, 952 F.Supp. at 1126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의 회원가입 신청을 수락하고 그들에게 패스워드를 부여했으며, 이러한 계약의 결과가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에게 전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파일들의 전달은 전적으로 피고의 통제 하에 있었다. 따라서 인적 관할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누군가가 피고들의 웹사이트에서 일리노이 주에 있는 일거리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밖의 일거리에 대해 검색할 경우 사용자는 www.careersite.com이라는 별개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아니 된다. 전국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hyperlink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www.daily-bulletin.com의 소유자와 관리자들에 대한 인적 관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Jung v. Assoc. of American Med. Colleges*, 300 F.Supp.2d 119, 132, n. 5 (D.D.C.2005) 참조(제3자의 웹사이트가 이용되는 상황에서 재판지로 접근할 수 있거나 그곳으로 직접 인도하는 피고 스스로의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인적 관할을 인정할 만한 사례); *Bensusan Rest. Corp. v. King*, 126 F.3d 25, 29 (2d Cir.1997) (원고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뉴욕주의 long-arm 관할법의 의미에 따른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

따라서 이 사건 웹사이트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적일지라도,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들로서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전국적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www.dailybulletin.com 사이트를 통하여 접속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적법 절차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예견 가능성은, 피고의 재판지에서의 행동과 연관성이 그 가 그곳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Burger King Corp.*, 471 U.S. at 474, 105 S.Ct. 2174. 따라서 캘리포니아 지역 웹사이트에 게시된, 그 지역에서 개최된 포럼에 관한 기사에 근거하여 피고를 일리노이 주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적법 절차 관념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소송에 관한 일리노이 주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World-Wide Volkswagen*, 444 U.S. at 292, 100 S.Ct. 559. 참조. 일리노이 주로서는 그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주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편리하게 일

리노이 주에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을 가지지만(*Burger King Corp.*, 471 U.S. at 473, 105 S.Ct. 2174), 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들의 웹사이트가 일리노이 주민들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는 다른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발생할 지도 모를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이익이 크지 않은 것이다. *Allan R. Stein*, *Personal Jurisdiction and the Internet* 참조 : 적법 절차를 규제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98 NW. UL.REV. 411 *899 (주의 관할에 관한 사전적인 규제의 이익을 판단할 때는 주의 사후적인 손해배상의 이익보다 인적 관할에서의 적법 절차 분석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의 손해배상에 대한 이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국적인 명성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로서는 일리노이 주에서의 명성에 대한 침해만 주장하는 경우에 비해서 관할을 가질 이익이 더 적다.

이 사건을 *Calder* 사건의 침해결과 기준(effect test)과 *Zippo* 사건의 단계적 분류 기준(sliding scale) 그리고 관할에 관한 주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검토해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인적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페어플레이(fair play)와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우리는 인적 관할 결여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인다.

III. 결 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인적 관할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인다.

출 처 : Media Law Report Vol.34. No.6, pp.1173~1178

번 역 : 박재우(이정부지방법원 판사)



일본 판결1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자의 범행양태와 경력 등을
기재한 기사를 실명과 유사한 가명을 사용하여
주간지에 게재한데 대해 명예·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항 소 인 : 주식회사 문예춘추(文藝春秋)·동사 대표이사 白石 勝

피항소인 : 甲野春男(구성(旧姓)乙澤)

나고야(名古屋)고법 2003(ネ) 제275호,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2004. 5. 12 민사 제2부 판결

원 심 : 나고야(名古屋)지법 1997(ワ) 제5034호, 1999. 6. 3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항소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전항의 부분에서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의 총비용은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당사자가 구하는 재판

1. 항소인 : 주문과 같은 취지
2. 피항소인 : (1)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 전후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소송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항소인이 항소인에 대해, 항소인이 발행한 주간지 「週聞文春」에 2회 게재된 기사에 의해 피

항소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으로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이라고 주장하는 1997년 7월 2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 사안이다.

제1심은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두 번째 기사에 대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 손해배상금 3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에서 피항소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외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항소인이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는 것과 함께 피항소인도 부대(附帶) 항소하여 항소인에 대해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했으나, 환송 전 제2심은 항소인의 항소 및 피항소인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에 항소인이 상고했다.

상고심이 상기의 기사는 피항소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기사의 게재에 의해 항소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피침해 이익별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며, 더욱이 이러한 심리를 다하기 위해

환송 전 제2심의 판결 중 항소인의 항소부분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 법원에 환송한 사안이다.

본건은 미성년시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X(본건 기사 게재 당시는 성인)가, Y 발행 주간지에서 용이주도하게 X로 추지(推知)될 수 있는 가명 X'을 사용하여 그 범행양태, 비행력(歷), 교우관계 등을 기재하고, 또 X가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사(2건의 기사 중 가명보도를 한 본건 기사만이 본건의 대상)가 게재되어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당 법원은 피항소인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본건 기사가 피항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내용인데, 본건 기사의 게재에 의해 항소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는 피침해 이익별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경우,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때, 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당해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는 측의 그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측의 공표이유를 비교 형량하

여, 후자가 전자에 우월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기사가 본건 주간지에 게재된 당시의 피항소인의 연령, 사회적 지위, 당해 범죄행위의 내용 등이 공표됨으로써 피항소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정보가 전달되는 범위와 피항소인이 입는 구체적 피해의 정도, 본건 기사의 목적이나 의의, 공표시의 사회적 상황, 본건 기사에서의 당해(當該)정보 공표의 필요성 등 그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유에 관한 제반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검토한다.

2.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1) 공공성 및 공익목적

① 본건 기사는 범죄(특히 본건은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흉악하고 잔악한 중대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에 관한 내용이고 일반 사회에서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 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점에 관하여, 피항소인은 범죄사실 그 자체를 보도한 부분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나, 범인을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범행시 소년이었다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년법 61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민이 알 필요가 있는 정당한 관심사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란, 그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 이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로 삼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본건과 같이 흉악,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사실 및 이와 관련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므로, 바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고 해

야 할 것이며 범인 특정 정보에 관해서도 범인이 범행 시에 소년이었다는 점을 들어, 바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항소인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③ 또 피항소인은, 본건 기사는 피항소인에 대한 인격공격을 했으며, 실명과 유사한 가명을 사용하여 피항소인을 특정 또는 추지케 하는 보도를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익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기사의 구성 및 내용으로 보아, 집필태도에 현저하게 진지성이 결여되었다든가 사원(私怨)을 풍다든가 사리사욕을 추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본건 기사는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④ 또한 피항소인은 본건 기사의 참된 보도목적이 정확한 사실보도에 있지 않고, 단지 중대한 소년 사건을 선정적으로 취급하여 가해소년을 비난하고, 범죄자에 대한 편견, 차별의식, 처벌감정을 갖기 쉬운 일반 독자에게 영합하여 그 관심을 유발, 주간지의 매상을 올리려는 영리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증언에 의하면, 본건 기사의 주요목적은, 소년법의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여 소년범죄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사회에 널리 전하는데 있고, 법정을 방청한 피해자 양친의 수기를 중심으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내용에 가해자 소년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흉악, 잔학한 중대범죄에 대한 출판사의 논평으로 시인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건 기사가 오로지 영리목적을 위해 게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진실성 및 상당성에 대해

①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본건 기사 중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든가 혹은 항소인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건 기사에는 범죄사실 뿐 아니라 공판정에서

의 피항소인의 태도 등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필자도 방청했다”, “...휴정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재등장, 주역을 자처” 등의 기술도 보이는데, 증언에 의하면 집필자는 한 번도 법정을 방청한 일이 없고, 통상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도 갖게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본건 기사의 주요목적은 감안할 때, 위의 부분이 본건 기사의 주요사실에 대해 허위를 기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또한 본건 기사 중에는 피항소인의 지적과 같이 “범인 소년은 전혀 반성이 없다”, “N2 씨는 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증거의 일례로, 소년 K로부터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는 기재부분도 보인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항소인을 포함한 피고인 등 3명은 1995년의 형사재판 제2회 공판에서 살의(殺意),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피해자의 양친은 소년 K의 경우와는 달리 피항소인으로부터 사죄의 편지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의 양친이 법정에서 피항소인을 봤을 때는 주역인 체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감정을 집필자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기 기사의 기재내용은 진실이든가, 항소인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이상에 의하면 항소인의 피항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1) 본건 기사에 의해 피항소인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전달되는 범위와 피항소인의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피항소인의 사회적 지위, 연령이나 본건 범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프라이버시의 전달범위는 주로 출생·성장한 지역의 지인, 친구, 소년원 등에서

알게 된 자, 폭력단 관계자 등으로 생각되어 그 범위는 한정적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본건 범죄는 흉악, 잔학한 중대 범죄이고 본건 기사 공표 시에 이미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피항소인이 앞으로 단기간 내에 사회에 복귀하리라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항소인의 연령이 본건 범행 시 18세, 본건 기사 게재 시 21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건 기사에 의해 피항소인이 입는 구체적인 피해는 통상의 일반 사회인에 비해 작은 것으로 추인(推認)된다.

(2) 본건 기사의 목적, 의의

증거에 의하면, 본건 기사는 소년법 개정의 논의가 시작된 상황 하에서 흉악, 잔악한 중대 사건을 공표하여 소년범죄의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널리 사회에 알렸고, 동시에 범죄소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된다.

(3) 공표시의 사회적 상황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본건 기사 공표 당시, 본건 사건 전에 발생한 山形マツト(매트)살인사건, 본건 사건 후에 발생한 神戸市 須磨구의 살인사건 등에 의해 소년범죄의 흉악화와 저연령화가 사회문제화 되어 소년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었다.

더욱이 본건 기사 공표 후인 2000년 12월에는 소년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분이 가능한 연령이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내려왔을 뿐 아니라 16세 이상의 소년이 고의적인 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토록 했으며, 기소 후에는 소년이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공개적인 형사재판을 받도록 했다.

(4) 본건 기사 공표의 필요성

본건 기사 중 범죄와 관련있는 부분은, 소년에 의한 흉악, 잔악한 중대 범죄이며 그 범죄 내용은 사회 일반의 관심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될 사항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건 범죄 행위 및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물론 범인의 경력 등도 포함하여 이를 모두 공표하는데

사회적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피항소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 내지는 논평의 한 자료로서, 피항소인은 이러한 범죄사실 등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受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따라서 본건 기사의 공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5)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유에 관한 사정

이상과 같이 본건 기사가 피항소인에 관한 것으로 추지되는 프라이버시 정보로 전달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전달에 의한 피항소인의 구체적 피해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추인되고, 본건 범죄 행위의 내용이 극히 흉악, 잔인하고, 본건 기사는 주로 소년 범죄 피해자의 양친의 심정을 기재하고 있고, 본건 기사 공표시의 사회적 상황도 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았고, 본건 기사가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인 동시에 그 목적, 의의에 합리성이 있어 공표의 필요성이 시인될 수 있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피항소인에 대해서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표하는 이유가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에 우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6) 따라서 항소인의 피항소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피항소인은 당심에서 성장발달권의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은 1997년 12월 27일 소가 제기된 이래 3회의 구두변론을 거쳐 1999년 6월 30일 제1심 판결 언도, 동년 7월 13일 항소인의 항소, 2000년 1월 11일 피항소인의 부대항소, 3회의 구두변론을 거친 후 동년 6월 29일 환송 전 제2심 판결 언도, 동년 7월 11일 항소인이 상고를 제기하고 13일에는 상고수리신청을 했으며, 2002년 12월 20일 상고사건은 기각결정이 내

려졌다.

하지만 2003년 3월 14일 상고수리사건에 대해서는 환송 전 제2심판결 중 항소인의 패소부분이 파기되어 동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고야(名古屋) 고법에 환송 취지의 판결이 있어, 당심에 계속(係屬)된 것인데, 이상과 같은 심리과정에서 피항소인은 환송 전 제2심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성장발달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었음이 기록상 밝혀졌고, 동 주장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157조 1항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기(時機)를 놓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제4. 결론

이상과 같이 원판결중 항소인의 패소부분에 관련된 피항소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 하며, 동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198호 pp. 220~229.

번 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일본 판결2

보도에서 원고 등이 「은폐」공작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주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사죄문 게재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뉴스의 내용은 원고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으나 공공성, 공익목적이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진실성의 증명도 있어 청구가 기각된 사례

원고 : 甲野太郎, 乙山次郎
피고 : 일본방송협회(NHK), 상기대표자회장 橋本元一
고후(甲府) 지법2003(ㄱ) 제567호, 위자료청구사건
2005. 7. 5 민사부 판결, 기각·확정

주 문

1.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해 별지 기재의 사죄문을 교부하라.
2. 피고는 원고 甲野太郎에 대해 일금 2,000만 엔, 원고 乙山次郎에 대해 일금 1,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3년 12월 2일 이후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각 금액을 지불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가집행선언

제2.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고 NHK 종합텔레비전이 ○○현내(縣内) 뉴스를 통해 ○○현 치과 의사회 회원인 치과의사(이하 'A 치과의사'라 한다)가 벌인 진료 보수 부정 청구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 치과 의사회의 간부였던 원고 등이 진료 보수 부정 청구 사실을 감독관청에서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은폐공작을 피한 것처럼 보도하는 등 왜곡된 인상을 일반 시청자에게 주어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 등이 상기 제1의 내용과 같은 청구를 한 사안이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1. 다툼이 없는 사실과 증거 및 변론의 취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XX방송국의 NHK 종합텔레비전의 ○○현내 뉴스에서, 2003년 6월 5일 낮뉴스로 방송부분 1을, 저녁뉴스로 방송부분 2를, 그 후 저녁과 밤 2회에 걸쳐 방송부분 2와 동일한 뉴스를 각각 보도했다(방송부분3, 4).

방송부분 1에서는 2002년 7월 XX시의 치과의사가 가공의 진료 보수 청구를 한 것이 발각된 것과 관련, 본건 부정 청구 사건이 매스컴에 발각된 직후에 열린 현 치과 의사회의 임시총회에서 '당시의 간부'가 "부정 청구의 발각에 대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책무라고 인식하여, 사회보험사무국 등의 행정기관에 여러 번 대응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유감스럽게 됐다"고 발언한 내용을 다루면서 "문제의 은폐를 노리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고, 이어 '당시의 간부'의 발언이 "사실 자체를 얼버무리려는 것이 아니고, 업계의 책임하에 어떻게 하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을가를 노려 사회보험사무국과 상담하여 대처했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방송부분 2에서는 본건 부정 청구 사건의 발각과 관련, 당시의 치과 의사회 간부가 임시총회 석상에서 "부정청구가 알려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대응했는데 아쉽게 되었다"고 발언했다며 "문제의 은폐를 도모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본건 방송 당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 치과 의사회의 丙川 회장이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본래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은폐(隱蔽)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발언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 사실과 "부정 청구 등 의사의 윤리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방지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 본건 방송에 의한 원고 등의 특정에 대하여

<쟁점 (1)>

(1) 텔레비전 방송에 의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본건 방송에서는 현 치과 의사회의 '당시의 간부'의 발언으로 그 내용을 보도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회장직을 포함하여 임원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2) 그러나 본건 방송을 시청해 보면, ○○현의 치과 의사회라는 한정된 지역의 직업집단에 속하는 자이고, 당시 간부로 있었던 자가 의사회 총회라는 한

정된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과 부정 청구 사건에 대한 대응발언 등을 보도내용으로 했음은 분명하다.

또 본건 방송이 ○○현 전 지역에 낮과 밤의 톱뉴스로 방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간부’로 보도된 당사자가 2002년 당시의 회장인 원고 甲野나 의료보험담당이사인 원고 乙山이라는 것을 치과 의사회 회원이나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시청자가 추지하기에 충분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고 등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방송이 ‘당시의 간부’라고만 보도했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원고라고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면 본건방송의 주요한 전달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원고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3. 본건 방송의 주요한 전달사실에 대하여

〈쟁점 (2)〉

(1) 「은폐」에 관하여

① 방송부분 1- ① 및 동 2 - ①은 2002년 당시의 간부가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방송부분 2 - ② 및 ③은 丙川 회장이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부정 청구 사건을 둘러싼 치과 의사의 증전의 대응과 신체제에서의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어떤 단체의 간부가 공식석상에서 스스로 은폐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새로 회장이 된 사람은 같은 공식석상에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었다면,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실제로 은폐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본건 방송에서는 아나운서의 발언에 덧붙여 “은폐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든가 “은폐 의혹 문제로 유감의 뜻” 등이 텔롭(telop)에 표시되어 한층 더 ‘은

폐’가 강조되어 있었으므로, 일반 시청자가 본건 방송을 시청했을 경우 현 치과 의사회의 간부가 은폐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는데 그치지 않고, 치과 의사회의 대응조치에 있어 동 간부가 본건 부정 청구 사건과 관련, 어떤 ‘은폐’를 도모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② 또한 본건 방송의 구성을 보면, 부정 청구 사건의 발각을 보도하면서 당시의 간부의 대응을 취급했는데, 아나운서의 발언내용은 당시의 간부가 “부정 청구의 발각에 대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책무라고 인식, 사회보험사무국 등 행정 기관에 여러 번 대응했다”, “부정 청구의 사실 자체를 얼버무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업계의 책임 하에 어떻게 하면 사실이 공개되지 않고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사회보험사무국과 상담하면서 대응을 취했다”(방송부분 1)든가 “부정청구가 알려지지 않도록 행정 기관에 대응했다”(방송부분 2)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정 청구 사건의 발각을 전제로 한 뉴스의 구성이나 ‘행정기관에 대응’이라는 아나운서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응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당시의 간부’가 행정기관에 대해 부정 청구의 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은폐’를 도모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결국 본건 방송은 2002년 당시의 간부가 본건 부정 청구 사건을 매스컴이나 일반 국민에게 ‘은폐’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응한 것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더욱이 ‘은폐’란 일반적으로 ‘숨기는 것, 은닉(隱匿)’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 의미에서의 ‘은폐’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증거 등에 의해 명백히 할 수 있는 사실로 해석된다.

④ 따라서 본건 방송이 시청자를 향해 보도한 주요 전달 사실은 치과 의사회의 2002년 당시의 간부나 丙

川 신임회장의 상기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발언의 배경에 본건 부정 청구 사건을 둘러싸고 당시 간부의 대응에 '은폐'를 도모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여 보도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원고 등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대하여<쟁점 (3)>

(1) 이상을 전제로 본건 방송에 의해 원고 등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상기와 같이 방송부분 1 - ① 및 동 2 - ①은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관한 '문제의 은폐를 시사' 및 실제로 '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발언이나 행동이 치과 의사회 간부의 입장에 있는 자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적절하다고 말하기 어려움으로, 이것이 공개적으로 적시됨으로서 사회통념상 원고 등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초래했음은 용이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丙川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부분 2 - ② 및 ③에 대해서도 그 범위에서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5. 본건 방송의 공익성과 공익목적에 대하여 <쟁점 (4)>

(1)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보도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 그 보도내용의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되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우선 본건 방송이 보도한 부정 청구 사건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며, 치과 의사회는 의료 종사자들의 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 기대되

는 공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관한 치과 의사회의 대응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만 한다.

(3) 다음은 본건 방송의 목적인데, 본건 방송은 뉴스로서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으로, 상기와 같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오로지 널리 국민에게 알린다는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다.

6. 본건 방송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쟁점 (5)>

(1) 방송부분 1 - ① 및 동 2 - ①에 보도된 원고 甲野의 발언은 2002년 7월에 개최된 현 치과 의사회 임시총회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방송내용과 임시총회의 의사록(乙3)을 조회해 본 결과 내용면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2) 방송부분 2 - ② 및 ③에서의 丙川 회장의 발언 내용은 정례이사회 의사록(乙4)과 대조해 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3) '은폐'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① 원고 甲野가 현 치과 의사회 2002년 임시총회에서의 회장 인사를 통해 "업계로서 미연에 마스크이나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인식"하여 원고 乙山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보험사무소 등에 대응하여 미연에 방제한 것으로 생각했다", "혹시 회원 중의 어느 누구로부터 누설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역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찌하여 2년 전의 일이 지금에야 나오는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는 것(乙4), 원고 乙山이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대해 마스크에 누설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대응한 것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원고 乙山 본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A치과 의사에 대한 개별지도, 감사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대해 널리 마스크이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대응했다는 사실이 명백하

게 인정된다.

② 따라서 현 치과 의사회의 당시의 간부였던 원고들이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대해 매스컴이나 국민에게 사실을 숨기려고 대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은폐'라고 평하는 것은 지당하며 결국 '은폐'의 사실에 대해서도 진실성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와 같이 피고의 본건 방송 중에는 원고들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면서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오로지 공익목적으로 보도했을 뿐 아니라 당해 적시 사실의 진실임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쟁점을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00호 pp. 243~253.

번 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영국 사례 1

**중대한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의 경우
전적으로 사적인 정보가 아닌 한 반드시
익명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다**

PCC는 폴라 맥매너스가 「더 선데이 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2004년 9월 12일과 2005년 1월 16일에 「더 선데이 타임즈」가 보도한 『벨파스트 도청장치가 IRA 최고 지도자들을 노렸다』와 『MI5 지휘자가 신페인 본부 도청을 인정했다』 제하의 두 기사가 PCC 강령 세 번째 조항(사생활 침해)과 첫 번째 조항(정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이 제기된 두 기사 중 첫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집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장치가 IRA 본부에서도 발견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두 기사 모두 불

만신청인의 이름을 어떠한 동기도 구하지 않고 밝히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첫 번째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이 IRA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으며 불만신청인이 연루된 수사 작업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사로 인해 자신이 위협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익명보도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신페인을 위해 일했고 신페인 측은 도청장치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고 싶어했다. 신문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불만

신청인의 이름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자는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불만신청인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신페인을 찾았지만 불만신청인이 할 말이 없다며 만나길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사는 불만신청인이 IRA 모임 장소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고 주소 또한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국(security service)에서 불만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마틴 린치와 바비 스토리가 만났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신문사는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이 아파트 수색을 도왔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신문사는 수사 작업의 유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PCC는 먼저 불만신청인의 신원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PCC 강령 세 번째 조항 위반 여부를 검토했

다. PCC는 익명으로 남고 싶고 신원이 밝혀지면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불만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기사에 나온 불만신청인에 대한 정보가 PCC 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의 이름과 일했던 곳의 명칭이 공개되는 것은 PCC의 관점에서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PCC가 사적인 정보라 판단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개인 연락처, 건강정보, 사적인 공간에서 찍힌 사진 등은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불만신청인이 중대한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때 신문사는 불만신청인의 신원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PCC는 판단했다. 이와 같은 경우 PCC 강령은 개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PCC는 기사가 불만신청인이 잘못된 것이 없고 아무 의심도 받지 않는다고 보도한 것을 참작했다.

한편 PCC 강령 첫 번째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 PCC는 첫 번째 기사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의심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고 불만신청인이 IRA에게 아파트를 빌려주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단지 마틴 린치가 바비 스토리를 불만신청인

의 아파트에서 만났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진 않았다. 비록 기사는 도청장치의 발견이 우

연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불만신청인이 수색작업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

영국사례 2

언론으로 인한 보도 피해는 직접적 당사자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영국 PCC는 미스 마리나 팔롬 바가 『호텔에서의 죽음의 투신』이라는 제목으로 「더 선」이 지난 2006년 1월 4일자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좋지 않은 일로 슬픔에 잠겨 있는 이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등 PCC 강령 중 5번째 조항인 “슬픔과 충격에 부정적인 개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다음날 보도된 『변호사 투신자살』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PCC에 판단을 요청했다.

불만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기사는 캐서린 워드로 신분이 확인된 여성의 호텔 투신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마침 현장에 사진기자가 있었고 「더 선」은 워드가 호텔 가장자리에 서 있는 모습과 떨어지는 도중의 모

습을 담은 두 장의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사진은 워드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기 전, 신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게재됐다.

사망한 워드의 친구인 불만신청인은 워드가 투신자살하는 사진을 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사진과 기사가 매우 불쾌하고 괴로웠으며 관음적인 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 선」은 사망한 워드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애도를 표현하고 기사가 그들에게 주었을 괴로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더 선」은 원로 간부들이 매우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인 만큼 사진을 게재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더 선」은 투신자살 사건이 공공 장소에서 일어났고 지나가던 많

은 사람들에게 의해 목격됐으며 제목과 내용을 포함한 사진의 공개 방법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 선」은 기사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사실만 다뤘을 뿐 죽음을 사소하게 다루거나 언짢은 세부 사항들을 추잡하게 파고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더 선」은 두 사진은 모두 흑백으로 매우 작게 인쇄되었고 자신들은 워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으며 첫 번째 기사에서 워드를 ‘미국인 방문객’으로 표현했으므로 독자들은 워드를 관광객으로 생각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더 선」은 보도가치가 있는 사건을 책임감 있고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다루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PCC는 사진의 공개가 사망한 워드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슬픔을 안겨 주었을 것이며 불만신청인의 주장대로 사진이 불쾌했으며 게재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했다.

그러나 PCC는 이 기사가 강령을 위반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사가 맘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불만신청인을 포함해 고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관심 이상임은 인정되나 기사의 주제가 되거나 언론의 활동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강령이 존재하며 강령을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 편집장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고 PCC는 밝혔다. 다만 PCC는 기사의 사진이 일반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참고했다.

PCC는 강령을 토대로 슬픔과 충격이 큰 시기에 신문사가 해당 기사를 “신중하게 다루었는지”를 판단했다. 비록 PCC 강령에는 상세히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PCC는 이 사건의 경우 뉴스가 고인의 사망 소식을 직계 가족들에게 최초로 알리게 된 것인지 여부도 고려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PCC는 먼저 「더 선」이 PCC 강령 중 5번째 조항인 “슬픔과 충격에 부정적인 개입”을 위반하지 않고 기사를 신중하게 보도했는지 확인했다. PCC는 신문사의 편집진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PCC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의 사진을 담는다고 해서 신중한 접근이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을 늦추는 것은 언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판단

했다. PCC는 이번 사안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사망 사건이므로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신문사가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을 가볍게 표현하거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등 격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만일 신문사가 그렇게 했다면 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고인의 죽음을 사소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사진과 글 역시 불필요하게 선정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PCC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PCC 강령 다섯 번째 조항에 대한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PCC는 두 번째로 고인의 사망 소식을 직계 가족이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PCC는 해당 기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이유로 PCC는 당시 해외에 있었던 가족들이 신문을 통해 사망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것을 밝혀줄 단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PCC는 기사에 실린 사진이 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크거나 뚜렷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사가 고인의 몇몇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사망 소식을 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PCC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직계 가족이 사망소식을 기사나 뉴스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지만 고인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다만 PCC는 고인의 가족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가족원의 사

망소식을 처음 접하게 하지 않도록 편집장이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가능하다면 보도 전에 가족들이 가족원의 사망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는 것과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2년 동안 거의 매일” 의사가 집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자가 매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자가 “거짓말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굉장한 기사를 만들어내려고”했고,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신문에 기재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전체적으로 기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신청인은 해당 기사들이 “보도 자료는 항상 정확성, 공정성,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신문평의회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만신청인은 6월 12일자 신문에 자신이 시니어 A급 선수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오uckland 테니스 협회의 C급과 동급인 S7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6월 12일자 기사의 제목이 “백만장자, ‘거의 매일’ 의사를 만났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3일에 한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본 것이므로 해당 기사의 제목은 부정확한 것이며 기자와 신문이 그의 건강상태를 기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신문이 전(前) 아내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다고

뉴질랜드 사례

기사의 일부 내용을 독자가 오도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자신에 대한 기사가 사생활을 침해했고 불공평하며 편협하다는 이유로 제프 페이지가 「헤럴드 온 선데이」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에 대해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불만신청자는 「선데이 스타 타임즈」가 지난 2004년 9월 26일에 보도한 기사와 「헤럴드 온 선데이」가 지난 2005년 3월 20일과 6월 12일에 각각 보도한 세 개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신청했다(앞의 두 개 기사는 불만신청 기간을 초과했지만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기간이 지난 두 기사를 불만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2005년 6월 12일자 기사의 배경 기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ACC로부터 매주 640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억만장자 땅부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사업소득과 테니스 치는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전 법률에 따라 ACC로부터 매주 640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두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더욱 많은 액수의 일시불 형태의 보상을 받기 위해 AC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다루고 있는데 ACC가 1974년도에 보수를 주기로 한 중재 계약을 어겼다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매주 640달러를 받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헤럴드 온 선데이」의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편집장은 “기사는 충분히 ‘정당한 대중의 관심거리’였으며 특히 이 일은 많은 양의 세금이 관련된 것이고 3월 20일자 기사와 6월 12일자 기사는 다른 신문에서 취재가 이미 되었던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집장은 기사의 균형과 공정성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불만신청인의 견해를 물었었고 기사에도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불만신청인이 편집장에게 쓴 두 장의 편지도 함께 보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편집인은 불만신청인의 세부 불만에 대해 첫째, 기사가 오클랜드 테니스 협회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한 결과 불만신청인을 “같은 연령의 다른 클럽 회원들과 비교했을 때 A급의 실력을 갖춘 시니어 플레이어”라고 설명했고 현재의 순위를 봤을 때도 불만신청인이 신문평의회에 밝힌 것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기사에 실었다고 해명했다. 둘째로 “백만장자, ‘거의 매일’ 의사를 만났다”라는 기사를 쓴 까닭은 불만신청인이 법정 반대 심문 때 “몇 년간 매일, 혹은 자주” 의사를 만났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기 때

문이며 기자가 법정서류 검토 차 불만신청인과 통화를 했을 때도 의사를 만난 횟수에 대해선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의 건강 기록을 기사에 신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나온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공공적인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편집장은 전(前) 아내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사가 ACC 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한 두 개의 기사는 ACC의 원칙과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처음 두 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보상 지급이 결정된 시기의 법률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ACC 대변인의 말을 포함시켰으므로 양쪽의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봤다. 또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이 제기된 6월 12일자 기사에 대해 불만신청자인 전(前)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재판 서류를 참고하여 보조금을 받고 협력하는 의사와 그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부유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모든 기사가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불만신청인의 의견과 관점을 담기 위해 불만신청인과 접촉한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불공정성과 불균형적 태도를 포함한 일반적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세부적인 불만사항으로 거론했던 내용 중 “백만장자는 의사를 거의 매일 만났다”는 제목은 약간의 과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불만신청인이 법정에서 만남의 빈도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고, 기자가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거의 매일’이라는 구어적인 표현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부수적이고 미미한 부분으로 판단,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시니어 A급’ 선수라고 잘못 표기한 것과 관련한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반박한 편집장의 최초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확인 결과, 불만신청인은 활발하고 역량

이 있는 선수인지 모르지만 '시니어 A급' 선수가 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였으므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취미로 테니스를 즐기는 정도의 선수라는 불만신청인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사가 언론 윤리를 크게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기사의 일부 내용에 불만신청인을 오도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으며 ACC의 보조금이 불만신청인의 건강상태나 수입에 대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공정성과 불균형적인 보도에 대한 일반적 불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부 사항 중 몇 가지에 대한 불만은 인정했다.

이번 불만신청을 판결한 신문평의회 임원들은 위원장 Barry Paterson을 포함해서 Lynn Scott, Aroha Puaton, Denis McLean, Terry Snow, Keith Less, Clive Lind 이고 John Gardner는 이번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기사를 뒷받침하는 미국 언론의 기사를 호주신문평의회에 제출했다. 불만신청인은 이집트 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이집트 신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답변에 대해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집트 신문의 편집장인 사미에르 하바시 씨는 호주신문평의회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이후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호주신문평의회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신속하게 정정보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집트 신문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하였다.

호주신문평의회는 호주는 다수의 민족 언론사가 공존하는 복수문화적인 나라이며 이들의 논쟁은 대부분 격렬하고 논란성이 짙다고 평가하고 토론은 당연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대신 언론사들이 사실에 의거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주길 당부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새로운 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기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거듭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문사의 책임이며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호주 사례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호주신문평의회는 호주 이슬람 복지회를 대표해 파텐 엘-다나 씨가 아랍어로 발행되는 콥트인들을 위한 지역 신문 이집트 뉴스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이집트 뉴스가 지난 2005년 1월 18일 『미국 뉴저지에서 이슬람식으로 콥트 가족들을 죽이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슬람 인들이 콥트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그곳에는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로 구성된(현재

활동 중이 아닌) 이슬람 조직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출처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단지 이슬람 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은 2005년 3월 6일 또 다른 이집트 신문인 「알-아람」은 살인이 이슬람인들과는 무관하고 뉴저지 경찰이 미국인인 에드워드 맥도널드와 해밀턴 산체스를 용의자로 검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알-아람」의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제이유그룹, 인터넷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제이유 그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신문 '폴리뉴스' 운영사인 (주) e-원컴의 김능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폴리뉴스는 지난 17일자로 "JU 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 로비'"라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제이유 그룹은 이 뉴스에 대해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그룹은 보도자료에서 "폴리뉴스의

기사는 지금까지 제이유를 향해 퍼부어진 흑색선전의 결정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의 폭로 비방성 기사를 확인 과 정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도한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보도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과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기사의 작성을 사주한 배후 세력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폴리뉴스'는 제이유 그룹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법적 조사를 통해 그룹의 명예 회복을 기대한다는

의미다.

제이유 그룹은 '폴리뉴스' 기사에서 언급한 검찰과 경찰, 공정위에 대한 로비는 단 1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직접 판매 기업은 미확인된 언론보도에 무척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온갖 억측과 음해성 공격을 견뎌온 제이유 그룹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마무리했다.

머니투데이 2006년 4월 18일

변양호 대표, 김재록 씨 보도관련 MBC 고소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 대표가 김재록 씨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화방송(MBC)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고위 관료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0일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된 김재록 씨 관련 의혹 기사에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해당기자와 보도국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

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30일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를 이른바 경제실세들과 연결시켜준 고리가 김재록 씨가 아니냐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김재록 씨가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맡았던 재정경제부 국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스티븐 리(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 대표 측은 이 같은 MBC의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 MBC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재록 씨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맡았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라고 보도함으로써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변 대표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 측은 그러나 "몇몇 일간지와 방송들도 31일자 신문을 통해 이와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지만 가장 먼저 보도한 MBC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판단해 고소를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2006년 4월 3일

이 총리 "윤상림과 골프친 적 없다" 명예훼손 1억 소송

이해찬 국무총리가 7일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와 자신이 '긴밀한 관계'라고 보도한 주간지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총리는 소장에서 "지난 1월 4일자 일요신문 1, 2, 3면에 윤상림이 구속 직전까지 나와 함께 골프를 치

고 총리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구속직전까지 함께 라운딩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됐다"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취임한 뒤 윤상림과 골프를 친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총리공관을 드나들었다는 증언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심하게 손상된 데다 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운영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6년 3월 8일

“허위보도자료 배포자가 명예훼손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에 근거해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고, 이 때문에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배상책임은 자료 배포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영화배우 배용준 씨 등 ‘한류스타’ 사진집을 출간한 일본 출판사 ‘문예춘추’가 “허위 보도자료를 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진작가 조세현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는 문예춘추 측에 2천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 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예춘추가 당초 약정보다 많은 한류스타 사진을 게재한 사진집을 혐의도 없이 기일을 앞당겨 출간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조 씨가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료가 보도되면서 문예춘추는 일방적으로 사진집 출간을 강행한 것처럼 오인 받아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으므로 조 씨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보도자료에 나타난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정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06년 5월 8일

‘과자의 공포’ 2탄 파장 예고 KBS “유해 중금속” VS 제과업계 “300억 손배소”

KBS ‘추적60분-과자의 공포’ 2편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유명 과자 속에 든 중금속의 위해성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제2의 과문을 예고하고 있다. 제과업계 측은 “중금속이 아니라 미네랄 성분”이라고 주장하며 KBS에 300억 원 가량의 ‘초대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 ‘추적60분’ 팀 “아토피보다 더 심각한 문제”

‘과자의 공포’ 편을 제작한 KBS 이후락 PD는 2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힘들다면서도 “1편에 다뤘던 과자의 아토피 유발 및 심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과자 속 물질을 다룰 계획”이라며 다음달 초 방송을 예고했다.

‘추적60분’은 지난달 8일 방송에서 과자의 식품첨가물이 아이들의 아토피 증세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 및 소비자들은 “비양심적인 가공식품 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후속보도를 요청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PD는 “2편 역시 위해성 실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과자 속 트랜스지방, 당노 유발 문제, 시청자 제보 등을 다루는 후속편 방송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PD는 이어 “과자의 공포’라는 소재명은 그대로 유지

할 것”이라며 “제과업계에서 300억 원 가량의 손배소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지만 국민 건강과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널리스트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PD는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해성이 없는 천연 첨가물을 사용해 안전한 과자를 만드는 업체들도 있다”며 “2편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과업계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소명에서 ‘방송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제과업계 “중금속 아니라 미네랄 성분…언론사 상대로는 최대 규모 손배소 계획”

2탄 방송 결정이 알려지자 제과업계는 ‘폭풍 전야’에 대비하고 있다. 크라운 해태 롯데 오리온 등 국내 대형 제과사 4곳은 언론사 상대로는 최대 규모인 300억 원 대의 손배소를 예고했다.

크라온제과의 한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의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결과에 상관없이 손배소를 추진한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 손배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적 60분’ 팀의 터무니없는 실험결과로 방송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추적60분’ 팀이 지적한 특정 중금속은 소비자들도 잘 알고 있는 미네랄 성분”이라며 “쌀 같은 유기물에도 이 성분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 ‘추적60분’ 팀이 문제 삼은 중금속이 포함된 과자를 3군데의 연구소에 보내 함량 검사를 했다”며 “그 결과 ‘추적60분’ 팀 자체 실험을 통해 보내온 함량의 10분의 1밖에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과업계 측은 연구소 3곳 실험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지만 ‘추적60분’ 팀은 한 연구소 실험 결과만을 제시했다”며 “이런 제과업계 실험 결과도 ‘추적60분’ 팀은 기업 측이 제시한 결과라는 이유로 믿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손배소에 동참한 제과업계 측은 “각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월 15% 가량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이는 매월 30~40억 가량의 매출액 손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자의 공포’ 추가 보도로 인한 매출액 손실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2006년 4월 18일

주병진 손배소 패소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 씨가 지난해 11월 국가와 문체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13일 주 씨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제기예 앞서 성추문 사건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공에 이익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씨는 2000년 서울 한남동 모 호텔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7)씨를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공소 기간에 따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향신문 2006년 4월 14일

MBC 최문순·엄기영 씨, 월간조선 상대 소송

문화방송과 문화방송 최문순 대표, 엄기영 이사는 15일 월간조선과 이 잡지사 우모 기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 총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월간조선은 2005년 10월호에 우 기자가 작성한 ‘최문순 MBC 6개월의 난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초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확인 불가능한 전언에 의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문화방송 사장 선출 과정이 청와대 등 권력층과 그에 부합하는 노조 등에 의해 음모적으로 진행됐고, 최 대표가 현 권력층과 특정 세력의 배후를 업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사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이어 “피고들은 이 기사에서 엄 이사가 사장이 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층에 공을 들였으나 친노 성향의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사장 출마를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내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2006년 2월 15일

조선일보, ‘제이유 보도’ 시사저널에 명예훼손 손배소 ‘이코노미 플러스’ 발행은 계속하기로

제이유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관·언 로비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언론사와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사회사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비판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시사저널 의혹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내겠다고 9일 밝혔다.

시사저널은 지난 8일 발매된 864호 〈언론은 ‘돌’ 던질 자격 없다?〉 기사에서 “우리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단계 판매 시장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며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일보생활미디어가 2004년 11월부터 제이유로부터 매월 2억 원을 받고 제작해 온 경제 월간지 ‘이코노미 플러스’의 사례를 들었다.

시사저널은 제이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간 직전에 조선일보 최고위 인사가 시내 한 호텔에서 주수도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안다. 그 다음부터 이코노미 플러스 발행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됐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 계열사인 월간조선이 “최근 제이유네트워킹을 해부하는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사화하지 않았다”며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면이 있어서 기사를 내보내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조선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생활미디어 이창의 대표는 “이코노미 플러스를 제작해주고 돈을 받은 것은 조선일보생활미디어의 외주 사업일 뿐인데, 시사저널이 범 조선일보로 확대해 마치 이런 관계 때문에 비판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동아가 보도하기 훨씬 전인 지난 4월 본지에 제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당시 만났다는 조선일보사 최고위 인사는 본사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며 “조선일보사와 생활미디어, 월간조선 등 3사가 10일 시사저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 이운삼 편집장은 “조선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아니어서 일단 내용이 도착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월간조선이 제이유그룹에 대한 해부 기사를 준비했다가 기사화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미디어는 제이유그룹이 지난 4일 이코노미 플러스에 대해 폐간신청하자 같은 이름으로 등록 신청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잡지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창의 대표는 “제이유 쪽에서 발행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등록 신청을 했다”며 “정기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폐간할 이유가 없고, 제호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6년 05월 10일

“조선일보 만평이 명예훼손” 노 대통령, 정정보도 청구 소(訴)

신문 만평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지난해 8월 8일 기자간

담회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회견 중 테이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며 “다음 날 조선일보 만평 ‘거짓말 금세 들통’에서

는 내가 마치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2006년 2월 17일

대법원, 사상 첫 언론사 고발 인터넷 신문 ‘판사가 금품수수’ 보도… “사법부 명예훼손”

대법원은 20일 ‘법원 간부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수천 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폴리뉴스’ 운영자 김모 씨와 취재팀장 오모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언론사를 수사기관에 고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공보관실 실무자 이름으로 낸 고발장에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신문에 게재해 법원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란

다”고 밝혔다.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JU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 로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 지방법원 A판사가 1,000만 원 받는 등 판사 세 명이 거액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었다.

법률신문 2006년 4월 24일

포털, ‘오보’는 가깝고 ‘정정보도’는 멀다?

이달 초 한 포털 사이트에 “강금실 절대 뽀으면 안 된다. 열우당이 나라 망치고 있는데 짝으면 서울이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글이 올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털 쪽에 즉각 삭제 요청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박정희가 군사 독재를 하면서 정치·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반역사성을 보였는데, 그 딸인 박근혜도 그렇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 역시 선관위의 요구로 삭제됐다.

포털에 정당이나 정치인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이처럼 삭제된다. 그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차례 계속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국회에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고쳐 ‘인터넷을 통한 보도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사이트도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 때도 포털은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포털은 언론일까?

아직까지는 ‘언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정답이다. 지난 2004년 한 통신사는 ‘영화배우 전지현이 소속 기획

사 사장과 결혼한다’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포털들은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받아 사이트에 올렸다. 이 기사는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삼시간에 퍼졌지만 결국 오보로 밝혀졌다. 전 씨는 이 통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 씨는 포털 쪽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없었다. 신문법은 포털을 인터넷 신문에서 제외시켰고,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신문법에서 차용하고 있다. 때문에 포털 뉴스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한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1차 뉴스를 전달 받은 뒤 편집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뉴스를 가치에 따라 배열·분류하는 편집 역시 언론의 중요한 기능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따져보더라도 포털은 언론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용 엔에이치엔(NHN) 미디어서비스유닛장은 “언론사가 언론

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게재 등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오보라 하더라도 포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많은 이들이 포털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규율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언론중재법의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언론사에서 문제가 있는 기사가 중재 신청 등을 통해 정정되더라도, 기사를 제공받은 포털에 대해서는 강제로 기사를 정정하도록 할 수 없어 허위 기사가 돌아다닐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삼승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법적인 장치도 마련해야겠지만, 포털들도 자체적으로 눈에 잘 띄는 공간에 정정보도 코너를 마련하는 등 오보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6년 4월 13일

위원회 소식

경기도론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에서 '언론중재 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석희태(경기중재부) 경기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와 조정근(경기중재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인사 60여명이 참석,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강화된 위상에 걸맞은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 시정권고제도가 갖는 위축효과에 대한 우려 의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결정시 '위법성조각사유' 요건의 면밀한 검토를 강조하는 의견 등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위원회 전자도서관 구축

위원회는 전자도서관(<http://lib.libportal.co.kr/pac/>)을 구축,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검색 및 대출 신청의 편의를 도모했다.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의 중앙에 있는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단행본 2,200여 권과 정기간행물 1,000여 권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위원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무처 직원 포상

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조준희 위원장은 사무처의 유공직원과 장기근속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포상자 명단〉

- 공적상 : 양재규(법무상담팀) 팀장, 황명자(부산사무소)
- 근속상
 - 20년 근속 : 오광건(조정심의본부) 본부장, 이진숙(대전사무소) 소장
 - 10년 근속 : 김일경(조사연구팀) 팀장, 임득상(전문위원), 안백수(심의팀) 차장
 최영훈(조정2팀) 차장, 조준원(기획혁신팀) 차장, 이수중(예산회계팀) 차장
 김주용(대구사무소) 소장, 임종우(예산회계팀), 김문성(조사연구팀)
 여운규(부산사무소) 소장, 박혜진(교육홍보팀), 최숙희(강원사무소)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 열려

지난 4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청구한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양재규(법무상담당팀) 변호사와 이주관(조정2팀) 변호사가 참석해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과 상관없이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만 따져 신속하게 정정보도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과 시정권고제도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논지를 폈다. 이해관계인의 문화관광부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양삼승(서울제3중재부) 변호사는 “언론사는 결코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특별한 공익적 제한도 기꺼이 수용하는 이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25일에 열린 헌법소원 2차 공개변론에서는 헌법소원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하여 관련법에 대한 위헌·합헌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마지막 평의를 열었으며, 현재관계자는 6월말 경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 체육대회 개최

지난 4월 28일, 사무처는 경기도 과천 관문 체육공원에서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열었다. 발아구와 신발 멀리보내기, 축구 등의 종목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직원들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대전 지역 간담회 개최

위원장은 지난 5월 19일과 26일, 대구지역 및 대전지역 언론사 대표를 초청,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설명하고 각 지역의 언론현황과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 강혜주(2006, 4월). 정부의 언론지원기구, 네덜란드 프레스 펀드.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4호, 174-178.
- 권오근(2006, 봄).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 관훈저널, 통권 제98호, 158-164.
- 권혁남(2006). 합의체 중재부의 효율적인 조정심리.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6년도 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문. 2006. 3. 30 - 3. 31.
- 김경환(2006, 봄).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중재, 통권 제98호, 62-78.
- 김덕모(2006). 제4대 지방선거보도와 그 개선방향.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6년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6. 5. 11.
- 김상겸(2006). 검찰, 경찰의 전문 영역 수사와 법원의 판결. 한국언론재단·한국언론법학회 주최 '전문영역의 언론보도와 법원의 판결' 주제논문. 2006. 4. 27.
- 김서중(2006). 인터넷 신문의 피해구제 보도 방법.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6년도 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문. 2006. 3. 30 - 3. 31.
- 김승수(2006, 5월). 언론 관련법 위헌소송 - 외국의 신문점유율 제한과 경영 규제.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5호, 27-31.
- 김영욱(2006). 언론윤리규범의 상충과 조정: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6년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6. 5. 11.
- 김재영·양선희(2006). 다매체 다채널 시대, 지상파 방송 규제의 재검점.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6년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6. 5. 11.
- 김재협(2006). 언론의 전문 영역 취재 보도와 법원의 판결 경향. 한국언론재단·한국언론법학회 주최 '전문영역의 언론보도와 법원의 판결' 주제논문. 2006. 4. 27.
- 김재홍(2006, 5월). 언론 관련법 위헌소송 - 입법 의원이 본 위헌 소송.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5호, 8-14.
- 류순열(2006, 봄). 취재현장의 메커니즘과 취재윤리(II). 언론중재, 통권 제98호, 41-45.
- 류한호(2006). 신문개혁 법제화의 성과 점검. 언론광장 주최 '신문개혁 법제화의 성과 점검' 발제문. 2006. 3. 16.
- 류한호(2006).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6년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6. 5. 11.
- 박재선(2006, 4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 명예훼손? 어떻게 쓰느냐가 좌우!.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4호, 44-49.
- 박재선(2006, 5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2 - 초상권 사용, 보도내용 진실해도 손해배상 가능.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5호, 190-193.
- 박정호(2006). 증거조사 운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6년도 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문. 2006. 3. 30 - 3. 31.
- 방정배·최준근(2006). 언론 내적 자유와 편성권의 제도적 보장 연구: 편성 규약의 방송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6년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6. 5. 11.
- 석희태(2006).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제논문. 2006. 4. 21.
- 성기문(2006, 봄). 중재부장 1년간의 단상. 언론중재, 통권 제98호, 120-121.
- 손봉숙(2006). 국민의 불 권리인 '보편적 접근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언론재단·손봉

- 숙 의원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국민 스포츠, 시장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세미나 발제논문. 2006. 3. 10.
- 송해룡(2006).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한국언론재단·손봉숙 의원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국민스포츠, 시장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세미나 발제논문. 2006. 3. 10.
- 신순철(2006, 봄). 언론의 무분별한 속보경쟁과 연예인의 인격권. 언론중재, 통권 제98호, 114-119.
- 안경숙(2006, 5월). 언론 관련법 위헌소송 - 합헌 주장과 위헌 주장 사이 쟁점 비교.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5호, 15-20.
- 양문석(2006). 선거 방송 심의의 쟁점과 방향. 한국방송학회 주최 '5. 31 동시지방선거와 선거방송' 토론회 발제문. 2006. 4. 27.
- 엄기열(2006, 봄). 비윤리적 취재·보도 유형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단상. 언론중재, 통권 제98호, 16-31.
- 윤길용(2006, 봄). 취재현장의 메커니즘과 취재윤리 (I). 언론중재, 통권 제98호, 32-40.
- 윤성옥(2006). 스타의 권리침해 대응방식으로서 전략적 소송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6년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6. 5. 11.
- 윤승모(2006, 봄). '폭로' 주장은 언론사 검증 뒤 기사화해야. 관훈저널, 통권 제98호, 170-174.
- 이상도(2006). 방송협찬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일고찰: 독일과 한국의 관련 법규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6년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6. 5. 11.
- 이승선(2006, 봄). 언론 자유 관점에서 본 취재윤리. 언론중재, 통권 제98호, 4-15.
- 이용성(2006). 신문법 위헌성 논란.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06. 4. 29.
- 이재국(2006, 5월). 언론 관련법 위헌소송 - 입법에서 헌법 소원까지... '도전과 응전의 10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5호, 21-26.
- 장행훈(2006, 5월). 장행훈의 JOURNALISM CRITIQUE 20 -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신문법' 판결.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5호, 40-45.
- 장호순(2006, 5월). 언론 관련법 위헌소송 - 언론중재법 관련 해외 사례.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5호, 32-35.
- 정윤경(2006). 방송 프로그램의 뉴미디어 유통과 저작권 문제.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 환경변화와 디지털 저작권' 학술세미나 발제문. 2006. 4. 21.
- 정일용(2006, 5월). 언론 관련법 위헌소송 - 기자협회장이 본 위헌 소송.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5호, 36-37.
- 조수정(2006). 사례로 본 손해배상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6년도 중재위원 워크숍' 발제문. 2006. 3. 30 - 3. 31.
- 조연하(2006). 디지털 미디어 시대 저작권 개념과 쟁점.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 환경변화와 디지털 저작권' 학술세미나 발제문. 2006. 4. 21.
- 지성우·최민재(2006).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2차 저작권 문제.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 환경변화와 디지털 저작권' 학술세미나 발제문. 2006. 4. 21.
- 최민희(2006, 5월). 언론 관련법 위헌소송 - 시민단체가 본 위헌 소송.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5호, 38-39.
- 한위수(2006, 봄). 2005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통권 제98호, 46-61. □

OnLine 중재상담실



합의하지 않은 부분을 교묘히 편집해서 방송

저는 서울시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정식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사건내용에 관하여 방송국 PD와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였고, 이후에 방송을 위한 정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정식 인터뷰 부분에 대하여만 방송에 내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에는 정식 인터뷰 전에 서로가 주장과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들이 몰래 녹음 및 촬영되어 정식 인터뷰한 내용과 교묘히 편집된 채 저의 의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이 제가 근무하는 구청 홈페이지에 방송내용을 비난하는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심지어는 저의 자녀들까지 비방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방송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얼굴은 나오지 않았으나,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방송에 나왔다면 전화를 걸어 '뭐 잘못된 것 있냐'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녀들이 방송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편집된 인터뷰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 더 견디

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우선 언론사가 사전 인터뷰 범위를 넘어 몰래 녹음과 촬영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인터뷰 내용이 언론사의 왜곡된 편집을 거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통해, 정정이나 반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거나 귀하의 반박 의견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송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귀하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인터뷰의 사전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 여부가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의하신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조정신청을 하려면 소정의 양식을 갖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 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방송

지난 2월 말쯤,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새벽시간대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3일 자 모 방송 9시 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시 제가 강도를 당하던 모습을 찍은 CCTV 녹화자료를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의 칼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분이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을지도 걱정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범인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화면에 나온 제 얼굴을 알아보고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귀하는 초상권 침해로 우리 위원회를 통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것은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나, 알 권리의 범위는 범죄사실 보도 자체에만 미칠 뿐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일로부터 6월 이내이며 방송의 경우 보도내용으로 녹취특과 방송테이프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뉴스 방송에 대해

지난 3월 14일 모 방송사가 방송한 뉴스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터뷰 당일 해당 기자가 분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뒤 정황도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송에서는 인터뷰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정보도가 아닌, 사실관계와 관련된 사람들 앞에서 기자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해당 방송사 뉴스에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사의 왜곡된 편집을 거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통해, 정정이나 반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거나 귀하의 반박 의견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는 데스크의 주관 아래 취재자료를 가감 및 정리할 수 있는 "편집"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보도를 취사선택함에 있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취재 대상자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보도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해당 기자 및 관련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며, 덧붙여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 또한 위헌이므로 현행법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당 사진만 게재한 일간신문

저희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보고 불공정 보도라고 생각되어 문의합니다. 5월 20일자 00신문 3면을 보면 5.31 지방선거 관련 사진 6장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중 5장이 한나라당 사진이고 나머지 1장은 무소속 후보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다른 정당 후보들도 많이 있고 이들도 열심히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정당만을 소개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언론사에 이를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문의하신 기사에 대해 모니터를 거친 후, 선거법 및 심의기준 등을 위반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97-3062~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시 행 : 2005. 7.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월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립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